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2020.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7. 29~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마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심의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통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회는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3.1조원, 총지출은 485.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서, 지난 재정운용 상황을 검토·분석하여 그 방향성과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8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생활 SOC사업 등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I. 결산 개요 / 1

1. 현 황 1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1

II. 주요 현안 분석 / 13

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13
2.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및 구상권 청구 비용징수
철저 필요 21

III. 개별 사업 분석 / 28

1.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독려 등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28
2.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실집행 실적 부진 33
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조속한 인력 채용
등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38
4.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험장비 구축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실험분석 장비의
조속한 도입 필요 43



5.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48
6.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의 면밀한 관리를 통한 지반침하 안전 확보 필요 ...	53
7.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수행단계에서의 연구과제 계획변경 재발 방지 등 사업 관리 철저 필요	57
8.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 성과 제고 필요 등 ...	61
9.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의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68
10.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의 연례적인 지원 실적 부진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	72
11.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의 내실화 방안 강구 필요 등	77
12. 환경지킴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83
13.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보조금 재재이월 문제 재발 방지 필요	90
14. 지역거점조성지원(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100
※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105

[고용노동부]

I. 결산 개요 / 109

1. 현 황	109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7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19



II. 주요 현안 분석 / 121

1. 2019년 고용장려금 주요 사업 결산 분석 121
 - 1-1. 집행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고용장려금 사업 제도 개선 등 필요 122
 - 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수요 조정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 ... 129
2.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필요 134

III. 개별 사업 분석 / 142

1.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참여율 및 고용유지율 개선 필요 등 142
2.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집행 개선 및 교부액 조정 고려 등 148
3. 한국잡월드 성과 기반 자체수입 추계 현실화 등 필요 154
4. K-Move 스쿨 취업률·평균연봉 등 해외 취업 성과 개선 필요 157
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사후관리 및 다양한 성과지표 측정 필요 160
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적정 인원 편성 및 참여 분야 다양성 개선 필요 등 ... 162
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집행 및 지원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68
8.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필요 사업장 발굴 등 집행개선 필요 172
9. 신규사업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집행 개선 노력 필요 등 174
10. 신기술·고속련 고급훈련의 집행실적 및 훈련분야 편중 개선 필요 177
11.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180
1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집행 개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83
13.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및 공사 지연 주의 등 186
14.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집행실적 개선 필요 193

※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196



[기상청]

I. 결산 개요 / 199

1. 현 황	199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3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5

II. 개별 사업 분석 / 206

1. 기상드론 도입 지연으로 인해 위험기상 관측 및 예보역량 강화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의 효과성 저하	206
2.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구름물리실험 챔버 구축 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문제	211
3. 안정적인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운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215
4. 장기에보의 정확도 향상 및 이상기후현상 분석예측 기술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21
5.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의 위약금 징수 철저 필요	225



환경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조 8,106억 1,400만원이며, 6조 9,556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7.2%인 6조 636억 8,600만원을 수납하고 8,704억 9,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14억 6,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00	800	800	3,049	3,039	10	0	99.7
환경개선특별회계	4,787,065	5,807,508	5,807,508	6,908,516	6,027,980	859,068	21,468	87.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500	500	500	2,383	1,762	621	0	73.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0	0	0	15,798	15,382	416	0	97.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806	1,806	1,806	25,899	15,523	10,376	0	59.9
합계	4,790,171	5,810,614	5,810,614	6,955,645	6,063,686	870,491	21,468	87.2

자료: 환경부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조 8,153억 3,900만원이며, 이 중 97.9%인 12조 5,459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1,377억 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16억 7,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866,326	4,639,666	4,706,590	4,695,416	7,377	3,797	99.8
환경개선특별회계	4,787,065	5,807,508	5,928,549	5,732,627	85,258	110,664	96.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7,806	67,806	67,806	65,995	0	1,811	97.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068,081	1,155,143	1,162,335	1,115,010	44,678	2,647	95.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767,691	949,769	950,059	936,908	391	12,760	98.6
합계	10,556,969	12,619,892	12,815,339	12,545,956	137,704	131,679	97.9

자료: 환경부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조 659억 1,500만원이며, 1조 3,073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3%인 1조 2,191억 3,200만원을 수납하고 877억 9,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억 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557,123	557,123	557,123	717,268	672,211	44,858	199	93.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2,510	252,510	252,510	291,823	269,927	21,835	61	92.5
금강수계관리기금	131,801	131,801	131,801	149,598	137,866	11,694	38	92.2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91,381	91,381	91,381	112,331	104,401	7,906	24	92.9
석면피해구제기금	33,100	33,100	33,100	36,313	34,727	1,506	80	95.6
합계	1,065,915	1,065,915	1,065,915	1,307,333	1,219,132	87,799	402	93.3

자료: 환경부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조 836억 1,500만원이며, 이 중 112.5%인 1조 2,191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85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7억 4,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557,123	557,123	570,762	672,211	4,222	2,529	117.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2,510	252,510	254,318	269,927	1,061	519	106.1
금강수계관리기금	131,801	131,801	133,259	137,866	1,279	4,481	103.5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91,381	91,381	92,029	104,401	1,836	3,120	113.4
석면피해구제기금	33,100	33,100	33,247	34,727	110	92	104.5
합계	1,065,915	1,065,915	1,083,615	1,219,132	8,508	10,741	112.5

자료: 환경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918억 9,200만원 (4.3%)이 증가한 7조 525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056억 7,200만원(14.7%)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166,855	4,790,171	5,810,614	6,063,686	253,072	896,831
기금	980,009	950,030	950,030	988,850	38,820	8,841
합계	6,146,864	5,740,201	6,760,644	7,052,536	291,892	905,672

자료: 환경부

2019회계연도 환경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350억 1,100만원(1.5%)이 감소한 8조 9,44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637억 5,000만원 (30.0%)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967,603	6,925,498	8,141,159	8,007,696	△133,463	2,040,093
기금	913,333	924,152	938,537	936,989	△1,548	23,656
합계	6,880,935	7,849,650	9,079,696	8,944,685	△135,011	2,063,750

자료: 환경부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환경부의 자산은 12조 1,182억 9,800만원, 부채는 671억 9,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2조 511억 700만원이다.

자산은 사회기반시설 5조 3,444억원, 일반유형자산 4조 2,846억 9,100만원, 유동자산 1조 3,181억 1,100만원, 투자자산 1조 1,172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025억 6,300만원(6.2%)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 투자자산 등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산 4,311억 1,300만원 증가, 댐, 하천, 상수도 증가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1,491억 8,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68억 100만원, 장기충당부채 72억 2,5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7억 8,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45억 500만원(26.7%) 감소하였다. 이는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감소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336억 2,8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2,118,298	11,415,735	702,563	6.2
Ⅰ. 유동자산	1,318,111	1,230,672	87,439	7.1
Ⅱ. 투자자산	1,117,257	686,144	431,113	62.8
Ⅲ. 일반유형자산	4,284,691	4,272,958	11,733	0.3
Ⅳ. 사회기반시설	5,344,400	5,195,213	149,187	2.9
Ⅴ. 무형자산	43,873	22,229	21,644	97.4
Ⅵ. 기타비유동자산	9,966	8,519	1,447	17.0
부 채	67,192	91,697	△24,505	△26.7
Ⅰ. 유동부채	56,801	54,331	2,470	4.5
Ⅱ. 장기차입부채	377	34,005	△33,628	△98.9
Ⅲ. 장기충당부채	7,225	572	6,653	1163.1
Ⅳ. 기타비유동부채	2,789	2,789	0	0.0
순 자 산	12,051,107	11,324,038	727,069	6.4
Ⅰ. 기본순자산	3,898,124	3,898,124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6,030,141	5,352,711	677,430	12.7
Ⅲ. 순자산 조정	2,122,842	2,073,203	49,639	2.4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조 5,436억 4,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7조 7,676억 3,700만원, 관리운영비 4,072억 2,700만원, 비배분비용 4,075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771억 8,700만원, 비배분수익 984억 6,000만원, 비교환수익 등 9,402억 7,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조 7,517억 4,100만원(26.0%) 증가한 8조 4,839억 1,9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 총원가 1조 7,084억 4,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26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물오염원 관리 프로그램(1조 8,194억 1,500만원)과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1조 7,455억 9,900만원), 맑은물 공급·이용 프로그램(9,184억 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639억 5,600만원과 경비 2,432억 7,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965억 2,500만원, 대손상각비 424억 3,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7,767,637	6,371,289	1,396,348	21.9
가. 프로그램 총원가	8,144,824	6,436,380	1,708,444	26.5
나. 프로그램 수익	377,187	65,091	312,096	479.5
II. 관리운영비	407,227	329,294	77,933	23.7
III. 비배분비용	407,515	377,456	30,059	8.0
IV. 비배분수익	98,460	345,861	△247,401	△71.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483,919	6,732,178	1,751,741	26.0
VI. 비교환수익 등	940,275	948,987	△8,712	△0.9
VII. 재정운영결과(V - VI)	7,543,644	5,783,191	1,760,453	30.4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19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1조 3,240억 3,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2조 511억 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270억 6,900만원(6.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 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1조 7,604억 5,3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가산 항목 중 조정항목은 전년 대비 4조 9,870억 2,200만원 감소하였으나, 기초순자산은 전년 대비 5조 8,441억 4,9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1조 6,303억 9,5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 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14조 4,338억 9,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6조 2,128억 2,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495억 900만원, 기타 순자산 증가 1억 6,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환경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1,324,038	5,479,889	5,844,149	106.6
II. 재정운영결과	7,543,644	5,783,191	1,760,453	30.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221,075	6,590,680	1,630,395	24.7
IV. 조정항목	49,638	5,036,660	△4,987,022	△99.0
V. 기말순자산(I-II+III+IV)	12,051,107	11,324,038	727,069	6.4

자료: 환경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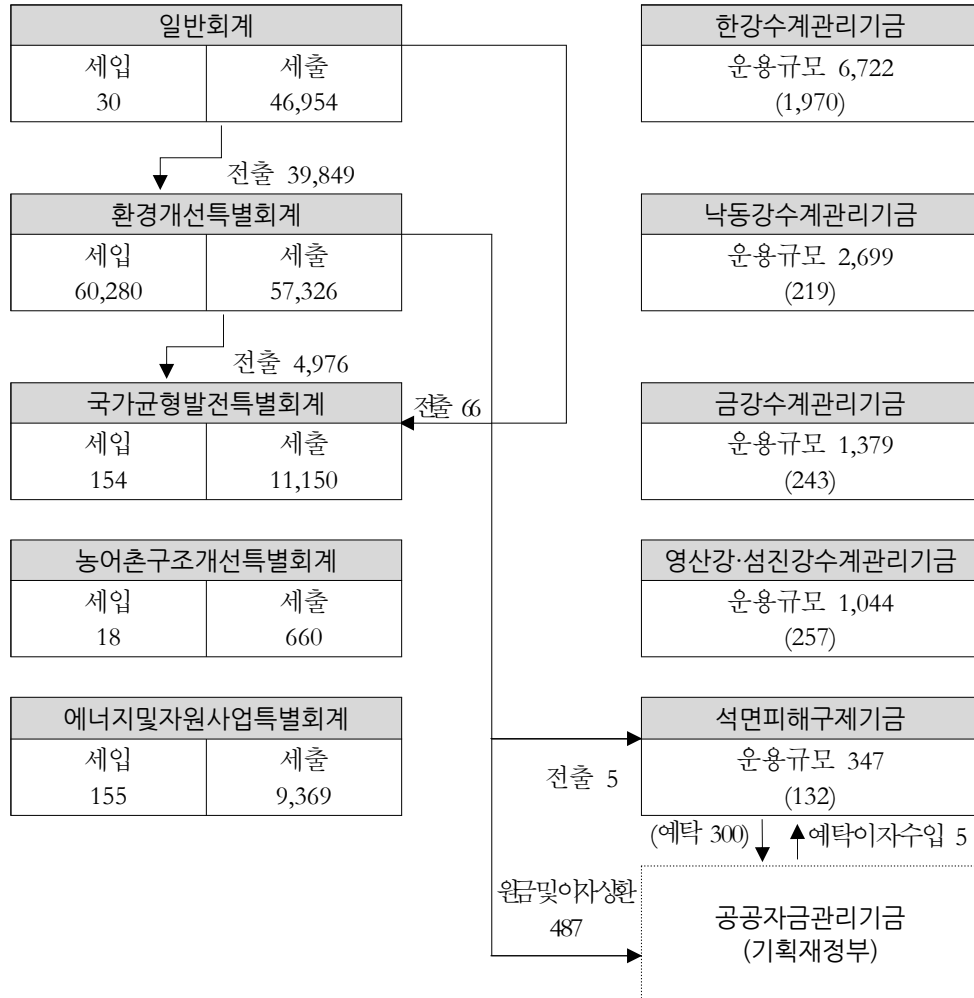
2019회계연도 환경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3조 9,84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66억원 전출되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4,97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87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5억원이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석면피해구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했던 300억원에 대한 예탁이자수입으로 5억원을 받았다.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1. 총계 결산 기준

2. 기금운용규모는 여유자금 운용 금액(괄호 안 표기)을 포함한 값임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글로벌탈환경기술개발사업(R&D), ②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사업, ③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 등이 있다.

글로벌탈환경기술개발사업(R&D)은 사업성과 미비, 사업단 운영 부실 등을 고려하여 17억원이 감액(511억원 → 494억원)되었고,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사업은 국고지원이 부적절하여 4억원 전액 감액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출연(자동차 타이어소음검사) 사업은 타이어 소음 성능표시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2억원이 감액(4억원 → 2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②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등이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기승용차, 충전기 물량 확대 등에 따라 995억원이 증액(4,573억원 → 5,568억원)되었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951억원이 증액(810억원 → 1,761억원)되었다.²⁾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는 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 있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투명성 확보, 연구용역을 통한 성과와 사업효과성 검토, 사업분야 확대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1)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3)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등이 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은 지원
단가 및 보조율 상향 등으로 7,020억원이 증액(2,574억원 → 9,594억원)되었다.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8.

환경부는 ① 노후경유차 관리 강화,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사업장 및 생활부문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② 물관리 통합 및 효율화, 노후 상·하수도 정비, 취약지역 물 복지 실현 등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③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등 **촉촉한 환경 안전망 구축**, ④ 지속적인 환경산업 육성·수출 지원 등을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를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을 위한 주요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과도한 이·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환경부는 집행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은 원인자의 업무방해, 공공처리시설 활용 주민 반대, 관련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월된 예산의 집행 및 불법폐기물 물량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대집행에 의한 처리 비용이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장의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집행이 부진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이·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유인 부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총량관리사업장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동사업의 집행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대기개선 추진대책¹⁾ 사업은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도시비산먼지저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중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이동오염원(도로 및 비도로)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19년도 예산현액 6,818억 800만원 중 6,495억 4,700만원(95.3%)을 집행하였고, 322억 6,1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기개선 추진대책	257,430	938,451	644	6,021	945,116	885,376	93.7	5,218	54,522
운행차배출가스저감	188,133	681,808	0	0	681,808	649,547	95.3	0	32,261
- 조기폐차	120,704	361,904	0	0	336,924	323,624	96.1	0	13,300
- 저감장치(DPF) 부착	22,212	140,732	0	0	199,759	190,526	95.4	0	9,232
- LPG엔진개조	839	839	0	0	518	518	100.0	0	0
- PM-NOx 동시 저감장치부착	18,500	18,500	0	0	13,712	13,697	99.9	0	15
-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50	103,950	0	0	87,835	80,609	91.8	0	7,227
- 건설기계저감 장치(DPF)부착	9,475	33,000	0	0	19,896	17,858	89.8	0	2,038
-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3,253	12,883	0	0	13,046	12,974	99.4	0	72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900	10,000	0	0	10,118	9,742	96.3	0	376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1

나. 분석의견

첫째,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주요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수요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집행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도로 이동오염원(경유차 등) 및 비도로 이동 오염원(건설기계 등)의 집중적인 감축을 목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저감장치(DPF) 부착, LPG 엔진개조,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19.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정(‘19.4)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규제²⁾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내역사업의 보급 물량을 크게 확대 추진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기존 45~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자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보조금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2019년 동 내역사업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추경예산 6,818억 800만원 중 6,495억 4,800만원이 지자체로 교부되었으나,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는 교부받은 예산 중 63.7%인 4,144억 8,100만원만을 실집행하였고, 858억 4,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01억 7,900만원은 불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가능 여부를 고려함과 동시에 내내역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예산을 확대 조정하여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서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각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기의 단속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2019회계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		지자체						
	추경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81,808	649,548	649,548	953	650,501	414,481	85,841	150,179	63.7
조기폐차	361,904	323,624	323,624	1	323,625	226,820	34,914	61,892	70.1
저감장치부착	140,732	190,526	190,526	119	190,645	128,171	17,887	44,587	67.2
LPG엔진개조	839	518	518	0	518	393	51	74	75.9
PM-NOx 동시 저감장치부착	18,500	13,697	13,697	269	13,966	8,422	799	4,745	60.3
건설기계저감 장치(DPF)부착	33,000	17,858	17,858	216	18,074	3,603	2,980	11,492	19.9
건설기계엔진교체	103,950	80,609	80,609	38	80,647	36,013	19,892	24,741	44.7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12,883	12,974	12,974	310	13,284	5,586	6,992	705	42.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0,000	9,742	9,742	0	9,742	5,473	2,326	1,943	56.2

자료: 환경부

특히, 2019년 결산 기준 추경예산의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한 결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전체 계획 물량 401,409대 중 268,326대(66.8%), 저감장치부착 사업은 총 95,080대 중 59,197대(62.3%)만 지원되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 사업은 10,504대 중 3,376대(32.1%), 저감장치부착 사업은 5,026대 중 616대(12.3%)가 지원되는 등 추경예산을 통해 확대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보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집행 실적(물량)]

(단위: 대, %)

구분	2019						
	계(A)	계획		전년도 이월	실적(B)	다음연도 이월	달성률 (B/A)
		본예산	추경				
조기폐차	401,409	150,129	250,000	1,280	268,326	22,807	66.8
저감장치부착	95,080	14,993	80,000	87	59,197	7,817	62.3
LPG엔진개조	487	482	0	5	170	33	34.9
PM-NOx 동시 저감장치부착	2,481	2,466	0	15	1,006	74	40.5
건설기계저감 장치(DPF)부착	5,026	1,895	3,105	26	616	310	12.3
건설기계 엔진교체	10,504	1,500	9,000	4	3,376	1,525	32.1
운행차행차역 시스템 구축	570	174	380	16	190	380	33.3
카메라 서버	13	0	13	0	0	13	0.0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5,000	950	4,050	0	2,675	970	53.5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19년 추경예산 편성 시 개별 지자체의 수요 파악 및 지방비 매칭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연도별 조기폐차 실적³⁾ 및 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 제작사의 공급가능물량 등⁴⁾을 고려하여 계획 물량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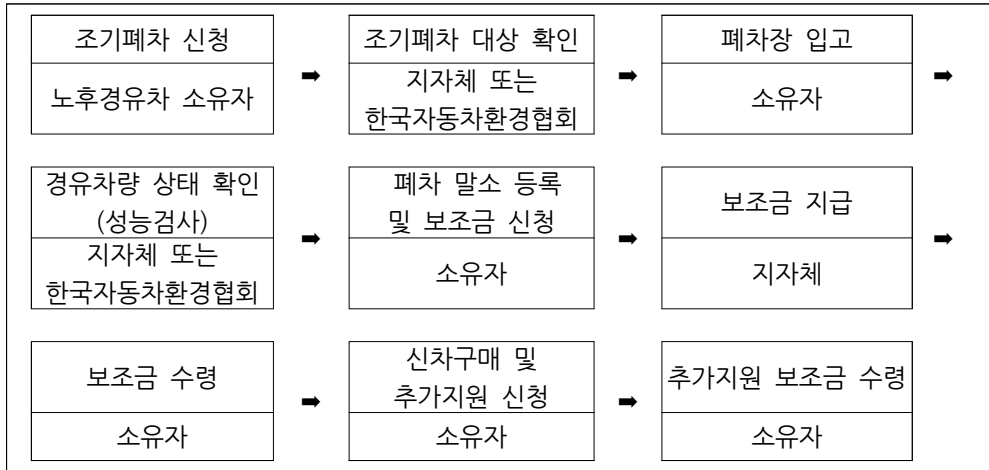
또한,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대상 경유차 현황과 공급 가능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수요를 전제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서, 사전에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사업에서 대규모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환경부는 '18년 수도권 지역(인천·경기)의 총 161개 폐차장에서 연간 폐차된 물량(405,275대)을 기준으로 '19년 전체(본예산 및 추경) 조기폐차 물량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4) 환경부는 첫째, 노후경유차 DPF 부착은 2018년 공급 물량(6,500대/월, 78,000대/연)과 제작사의 공급 생산량 증가 및 공업사 확대 등을 감안하여 10,000대/월(120,000대/연)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둘째, 건설기계 DPF의 경우, 6개 제작사의 공급 능력(560대/월, 6,700대/연)을 감안하여, 연내에 5,000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2018년 4개 사업소의 공급 능력(700대/월, 8,400대/연)을 감안하였고, 생산 및 공업사 확대를 통해 계획물량(10,500대/연)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예시)]



자료: 환경부

특히, 동 내역사업의 2020년 본예산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 지방비 미 확보 및 전년도 이월액의 우선 집행에 따라 '20년 5월 현재 전체 예산 6,027억 300만원 중 3,754억 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지자체의 예산현액 4,612억 4,300만원 중 35.1%인 1,617억 1,500만원만이 집행되어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		지자체						
	추경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02,703	375,402	375,402	85,841	461,243	161,715	미정	미정	35.1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수요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자체별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공해 조치 사업의 집행부진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국내 배출 미세먼지 기여도가 높은 건설기계⁵⁾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년 추경예산을 통해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비율을 60:40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존까지 10%였던 자부담 비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0%)하였으며, 지원 단가 또한 상향조정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50만원 증액된 1,650만원, 건설기계 DPF 부착은 1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건설기계 사업 보조율 변경 사항]

구분	국고보조율		지방비 비율		자부담 비율		단가 조정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건설기계 엔진교체	45%	60%	45%	40%	10%	0%	1,500만원	1,650만원
건설기계 DPF부착	45%	60%	45%	40%	10%	0%	1,000만원	1,100만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구체적으로,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의 경우, 장거리주행이나 고속주행 등 DPF 재생(연소 등) 과정에 필요한 차량 운행비율이 높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펌프, 믹서)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차량의 출력, 총중량 등 제원에 따라 대형과 중형 장치로 구분하여 부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PM(입자상 물질)의 저감 효율이 80% 이상을 만족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로 주행 비율이 낮은 지게차, 굴착기 등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는 저감장치 재생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엔진교체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5)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직접배출 및 2차 생성을 합한 종합적인 배출기여도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18.5%, 전국 단위에서는 15.6%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대상 대비(’18년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등록 현황 기준) ’20년 4월말 현재까지 누적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 대상 총 35,227대 중 9.2%인 3,238대만 저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대상 총 101,057대 중 8.6%인 8,677대가 엔진교체를 완료하는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 실적 현황]

(단위: 대, %)

구분	사업 대상(A) ¹⁾	지원 실적 (B)				지원 비율(B/A)
			~2018	2019	2020.4	
건설기계 DPF 부착	35,227	3,238	2,513	616	109	9.2
건설기계 엔진교체	101,057	8,677	4,042	3,376	1,259	8.6

주: 1) 사업 대상은 2018년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등록 현황 기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더해, 건설기계 DPF의 경우, 최근 3년간(2017~2019년) 백연 발생, 출력 저하 등 저감장치 고장으로 인한 수리 건수가 1,190건에 달하며, 저감장치 수리를 받은 건설기계는 총 441대로 확인되는 등 건설기계 DPF의 성능 모니터링 및 DPF 부착 건설기계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3년간(2017~2019) 건설기계 DPF 유형별 고장 수리 현황]

(단위: 건, %, 대)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합계	1,190(100.0)	128(79대)	374(196대)	688(309대)
OBD 경고등 점등	322(27.1)	41	116	165
백연 발생	471(39.6)	69	162	240
출력 저하	324(27.2)	12	71	241
재생 불량	26(2.2)	2	2	22
기타(누유, 냄새 등)	47(3.9)	4	23	20

주: A/S 연도별로 분류한 수치로 중복된 차량 제외 시 A/S 전체 대수는 441대임

자료: 환경부

한편, 2020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에 따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전국 대기관리권역 내 행정기관·공공기관이 일정 규모(10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할 때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⁶⁾

따라서 환경부는 건설기계 관리 강화 조치와 더불어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업계와 저감장치 및 엔진 제작사,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가. 현 황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¹⁾은 불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악취나 침출수 유출, 화재 등 2차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전부 또는 일부 이행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19년도 예산현액 547억 6,400만원 중 347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1억 4,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억 6,8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10,912	54,603	161	0	54,764	34,755	63.5	19,141	868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은 원인자의 업무방해, 공공처리시설 활용 주민 반대, 관련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으로 추경편성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월된 예산의 집행 및 불법폐기물 물량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70%)와 지자체(30%)가 비용을 분담²⁾하여 불법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후, 방치 행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433-301

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기별로 지자체의 행정대집행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한다.

특히, 최근 들어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 및 불법수출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18.11) 및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19.2)을 수립하고 2019년 1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을 연내에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³⁾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36억 9,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497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의 내내역사업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의 예산현액 380억 3,200만원 중 240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137억 3,1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집행률이 63.2%에 그쳤으며,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사업 또한 예산현액 107억 7,800만원 중 48억 5,100만원이 집행되어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회계연도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내내역사업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내내역사업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방치폐기물	5,854	32,017	161	38,032	24,048	63.2	13,731	253
불법투기폐기물	-	10,778	-	10,778	4,851	45.0	5,410	517
불법수출폐기물	-	896	-	896	871	97.2	-	25
합계	5,854	43,691	161	49,706	29,770	59.9	19,141	795

자료: 환경부

이에 따라, 2019년 12월말 기준 당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폐기물 총 120.3만톤 중 82.9만톤(68.9%)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불법폐기물의 각 유형별 처리량을 살펴보면, 방치폐기물은 85.9만톤 중 59.2만톤(68.9%), 불

2) 2015년도까지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50이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0:30으로 국고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3)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 말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법투기폐기물은 31만톤 중 21.2만톤(68.4%), 불법수출폐기물은 3.4만톤 중 2.5만톤(73.5%)이 처리되어 불법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 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재산정 또는 재발견된 불법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할 경우,⁴⁾ 발생량 대비 처리율은 57.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불법폐기물 유형별 처리 현황]

(단위: 만톤, %)

구 분		계	방치폐기물	불법투기	불법 수출
발생량 (전수조사 결과)		120.3	85.9	31	3.4
추가 발생량 (재산정 등)		24.2	10.9	13.3	-
총 발생량		144.5	96.8	44.3	3.4
2019	처리량	82.9	59.2	21.2	2.5
	(전수조사 대비)	(68.9)	(68.9)	(68.4)	(73.5)
	(총 발생량 대비)	(57.4)	(61.2)	(47.9)	(73.5)
2020.3	처리량	95.2	66.9	24.9	3.4
	(전수조사 대비)	(79.1)	(77.9)	(80.3)	(100.0)
	(총 발생량 대비)	(65.9)	(69.1)	(56.2)	(100.0)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관련 예산의 이·불용액 발생 등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첫째,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전기를 차단하는 등 물리적인 방해 행위를 하여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⁶⁾ 둘째, 불법폐기물 처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⁷⁾에는 향후 국비 환수조치를 취하기 위해

4) 환경부에 따르면, 최초 전수조사 시에는 부피 기준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산정되었으나 실제 처리 과정에서 성상과 비중 분석 등 전문적인 측정을 통해 무게 기준으로 재산정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더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 추진에 따른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 등에 따라 불법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2020년 3월말 기준, 불법수출폐기물이 전량 처리되는 등 전체 처리량이 95.2만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양의 불법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6) 경북 의성군과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발생 원인자의 업무 방해가 발생하여 불법폐기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불법행위 의심자 전부에게 처리·조치명령을 실시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 소송 등이 진행되어 처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또한, 2019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액의 2020년 6월 기준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91억 4,100만원의 이월액 중 99억 3,100만원(51.9%)이 집행되었고, 14억 2,200만원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이월액의 2020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2019	2020.6월		
	다음연도 이월액(A)	'19년 이월 집행액(B)	불용(예정)	집행률(B/A)
합계	19,141	9,931	1,422	51.9
소계 ¹⁾	15,278	8,005	1,422	52.4
강원도 영월군	1,400	1,400	0	100.0
경북 구미시	100	100	0	100.0
경북 문경시	1,796	0	0	0.0
경북 의성군	4,802	1,388	0	28.9
경북 성주군	133	133	0	100.0
경북 영천시	2,364	2,001	363	84.6
전남 영암군	531	531	0	100.0
전남 완도군	680	624	56	91.8
충남 천안시	22	22	0	100.0
경기도 화성시	1,615	975	0	60.4
경기도 이천시	684	434	250	63.5
경기도 의정부시	112	112	0	100.0
경기도 김포시	284	0	284	0.0
경기도 용인시	487	212	275	43.5
경기도 파주시	264	72	191	27.3
대구 달성군	4	1	3	25.0

주: 1)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정산 중인 한강유역환경청, 아산시, 포천시를 제외한 실적임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의 경우, 불법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추경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나, 원인자의 업무방해 또는 관련 행

7) 불법폐기물이 적치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불법폐기물이 발생하는 도중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 토지소유자별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집행부진으로 추경편성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월된 예산의 집행 및 불법폐기물 처리 물량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집행 비용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불법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대집행에 의한 처리 비용이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폐기물 근절대책」(‘18.11) 및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19.2) 수립을 통해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의 처리를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1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20.5월 시행)하였다.

특히,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원인자의 책임처리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강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 확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⁸⁾ 이로 인해 원인자의 처리 비중 또한 일정 부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⁹⁾

[「폐기물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강화	-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처리업자 등에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기대효과) 배출자와 처리업체 간 감시 체계 구축

8) 이에 더해, 환경부는 일일 상황보고 및 현안점검회의 등 지자체와의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였고, 처리업체와 위탁계약 추진 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하였으며, 불법폐기물 관련 소송업무를 지원하는 법률지원반 및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구성·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9) '19년 12월말 기준 불법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처리량 82.9만톤 중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에 의한 처리량이 41.9만톤(5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처리량은 32만톤(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주요내용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강화	• 업종(수집·운반/처분/재활용)별 유효기간이 끝날 때 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 • (기대효과) 적정 자격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	•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까지 확대 • (기대효과) 책임자를 통해 보다 신속한 불법폐기물 처리 유도
책임자 처벌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 불법 처리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책임자에게 부과 • (기대효과)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불법 처리에 대한 유인 감소

자료: 환경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원인자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 방치폐기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 및 2차 환경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처리한 후, 원인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후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징수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예산배정액 487억 5,000만원(83건) 중 147억 3,900만원(37건)이 구상권 청구되었으나, 2020년 6월 기준 실제로 환수 조치된 비용은 총 27억 9,700만원(3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의 구상권 청구 징수 결과]

(단위: 건, 백만원)

2019년 대집행		구상권 청구		비용징수 내역		비고
건수	금액 ¹⁾	건수	금액 ²⁾	건수	금액	
83	48,750	37	14,739	2	97	환수완료
				1	2,700	환수예정
				3	2,797	합계

주: 1. 2020년 6월 기준

1) 예산배정액 기준

2) 비용납부명령 조치 기준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의 추진절차 상 행정대집행에 의한 폐기물 처리 후 비용 징수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조치명령과 지방비 편성 및 폐기물 처리 계약체결 등 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대집행 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구상금 청구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징수 실적 등의 성과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파산 등 원인자가 처리능력이 없는 사례 및 불법폐기물 원인자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 등으로 인해 원인행위자로부터 구상금을 징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에 의해 처리되지 못하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징수가 미흡할 경우 업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불법행위의 재발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¹⁰⁾

따라서 환경부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불법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행정대집행에 의해 처리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0) 다만,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수립이나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법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독려 등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사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강화²⁾ 등에 따른 사업장의 방지사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9년 본예산을 통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되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 증가 등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추경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 환경부는 2019년도 예산현액 1,098억 3,500만원 중 1,088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자체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10억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기개선 추진대책	257,430	938,451	644	6,021	945,116	885,376	93.7	5,218	54,522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8,000	109,835	0	0	109,835	108,833	99.1	0	1,002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20.1.1.)으로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강화되었다(동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장의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집행이 부진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 내역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미세먼지 문제가 급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2019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19.4.)되어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 53,294개소 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의 비율(27.9%)을 반영하여 2022년까지 4년간 총 11,984개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9년의 경우에는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및 예산의 집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1,997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개소, 억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사업장	11,984	1,997	4,000	3,000	2,987
사업비	13,182	2,197	4,400	3,300	3,285

자료: 환경부

그러나 2019년 동 내역사업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1,098억 3,500만원 중 대부분인 1,088억 3,300만원이 지자체로 교부되었으나,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는 교부받은 예산 중 54.2%인 589억 3,600만원만을 실집행하였고, 433억 9,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5억 800만원은 불용하였다.

또한, 2019년 추경예산에 비해 2배 가량 증액된 2020년 본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현재 전체 예산 2,200억원 중 1,872억 5,500만원이 교부되

있으며, 예산현액 2,306억 4,600만원 중 46.9%인 1,080억 9,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실적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사업 관리가 부실할 경우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2020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실적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본예산	추경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9	8,000	109,835	108,833	0	108,833	58,936	43,391	6,508	54.2
2020.5	220,000	220,000	187,255	43,391	230,646	108,097	미정	미정	46.9

자료: 환경부

이에 더해, 방지시설 설치계획 대비 설치완료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물량 1,997개소 대비 약 65.4%인 1,307개소에서 신청하는 등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장의 수요가 부족하였으며, 신청한 사업장 중에서도 547개소(41.9%)에 대해서만 설치가 완료되고 나머지 760개소의 방지시설 설치가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계획 대비 완료 실적]

(단위: 개소, %)

지자체	2019					2020		
	설치계획	신청현황	설치완료	다음연도 이월	달성률	설치계획	신청현황	설치완료
서울	109	180	0	180	0.0	103	136	-
부산	60	58	58	0	100.0	119	229	-
대구	74	44	15	29	34.1	348	-	-
인천	154	189	119	70	63.0	308	174	-
광주	38	39	39	0	100.0	76	91	-
대전	20	4	0	4	0.0	37	42	-
울산	39	38	38	0	100.0	36	72	-
세종	24	13	12	1	92.3	9	-	-
경기	688	145	145	0	100.0	1,377	930	-
강원	44	53	0	53	0.0	89	117	-
충북	122	112	5	107	4.5	244	111	-
충남	109	10	2	8	20.0	218	124	-

(단위: 개소, %)

지자체	2019					2020		
	설치계획	신청현황	설치완료	다음연도 이월	달성률	설치계획	신청현황	설치완료
전북	77	46	4	42	8.7	155	141	-
전남	77	78	28	50	35.9	155	209	-
경북	170	166	31	135	18.7	341	173	-
경남	175	106	28	78	26.4	350	346	-
제주	17	26	23	3	88.5	34	31	-
합계	1,997	1,307	547	760	41.9	4,000	2,926	-

자료: 환경부

특히,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방지사설 설치 실적이 저조한 바, 이는 사업의 추진절차 상 방지사설 설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되어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으며,³⁾ 특히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19년 본예산에서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경험이 부족하였고, 사업공고 및 전문기관 협의 등 사전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설치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동 내역사업은 당초 본예산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사업장의 방지사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업대상의 방지사설 설치 수요 또는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못하면서 사업장 등 산업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시급히 편성된 추경예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환경부는 연도별로 실행가능한 수준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제시된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사업 공고 → 사업장의 신청 → 서류 검토, 현장 조사 → 사업 승인 통보 → 설치 계약 → 배출시설 인허가 및 선금 신청 → 방지사설 및 IoT 계측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현장 확인 → 잔금 지급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둘째,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고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 내역사업은 사업장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물질발생량에 따라 방지지설의 종류와 규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지지설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가 감염·전파될 우려가 있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방지지설 시공을 담당하는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방문을 꺼려함에 따라 방지지설 설치 지원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작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현장조사 절차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하여 설치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시간이 짧아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녹스버너 위주의 방지지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⁴⁾

하지만 환경부는 이미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녹스버너 위주로 방지지설 설치를 지원할 경우, 한정된 예산이 특정 사업 위주로 배분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방지지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키는 동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방지지설 설치 사업장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환경부에 따르면, 저녹스버너는 환경전문공사업 이외의 자가 설계 및 시공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 제작사에서 연간 8,750대 이상의 저녹스버너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¹⁾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굴뚝원격감시관제센터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301억 3,800만원 중 296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11,557	29,866	272	0	30,138	29,685	98.5	347	106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6,805	6,805	0	0	6,805	6,805	100.0	0	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1,219	19,528	0	0	19,528	19,449	99.6	0	79
IoT활동 소규모 사업장 관리기반 마련	3,500	3,500	272	0	3,772	3,400	90.1	347	25
일반경비	33	33	0	0	33	31	97.0	0	2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유인 부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총량관리사업장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동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4-301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토대로 마련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연도별·지역별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총량관리제도²⁾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총량관리제의 배출량 측정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³⁾ 중 일정용량 이상의 배출시설⁴⁾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부터 측정된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와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민간대행사업(한국환경공단)으로 지역별 관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시행하였던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 및 사업장총량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되고,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가 의무화된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조기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TMS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⁵⁾

2) 사업장총량관리제도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토대로 마련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분류된다. 사업장총량관리제는 2015년까지 1종(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과 2종(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부터 3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용량 이상의 배출시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 (소각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사업장폐기물), 1톤(생활폐기물) 이상인 시설 등
- (석유제품 제조시설)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시멘트 제조시설) 소성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전기로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고무제품 제조시설 등

5) 특히,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이 6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이 20%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2019년 동 내역사업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추경을 통해 증액된 총 195억 2,800만원 중 대부분인 194억 4,900만원이 지자체로 교부되었으나,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는 교부받은 예산 중 38억 1,400만원(19.6%)만을 실집행하였고, 44억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2억 1,500만원은 불용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본예산	추경	교부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합계	1,219	19,528	19,449	19,449	3,814	4,420	11,215	19.6
경기	309	4,159	4,159	4,159	784	0	3,375	18.9
경남	131	1,831	1,831	1,831	122	940	769	6.7
경북	95	1,985	1,985	1,985	96	1,563	326	4.8
광주	17	240	239	239	17	0	223	7.1
대구	28	552	552	552	28	0	524	5.1
대전	27	627	627	627	91	535	1	14.5
부산	122	885	806	806	380	0	426	47.1
세종	9	231	231	231	9	0	222	3.9
울산	121	1,356	1,356	1,356	116	0	1,240	8.6
인천	52	637	637	637	52	0	585	8.2
전남	113	2,273	2,273	2,273	568	0	1,705	25.0
전북	61	901	901	901	678	0	223	75.2
제주	14	14	14	14	14	0	0	100.0
충남	60	2,760	2,760	2,760	749	415	1,596	27.1
충북	59	1,077	1,077	1,077	110	967	0	10.2

자료: 환경부

이에 더해, 최근 3년간(2017~2019년)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대비 설치 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은 당초 계획물량 107개소 중 105개소(98.1%)에서 설치하였고, 2018년은 116개소 중 115개소(99.1%)가 설치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에도 본예산에서 계획한 113개소 중 112개소(99.1%)가 설치되는 등 추진 실적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 추경예산에서 증가된 계획물량 194개소 대비 21.6%인 42개소만이 설치하는 등 대상 사업장의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대비 실적 현황(2017~2019)]
(단위: 개소, %)

구분		사업장 현황		달성률
		계획	실적	
2017		107	105	98.1
2018		116	115	99.1
2019	본예산	113	112	99.1
	추경	194	42	21.6
	합계	307	154	50.2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보완을 거쳐 지원대상자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공사에 약 2~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원인행위가 있는 이월액에 비해 더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의 TMS 설치 기피 등 사업 수요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사업장의 TMS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나 동 법령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부착 의무화 기간 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이 실시간 공개되는 측정기기를 설치할 유인이 부족하였다.⁶⁾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3. 측정기기의 설치 시기

가.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및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제외 기준⁷⁾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20.3월 제정) 또한 미확정된 상황이 었기 때문에 측정기기의 설치를 최대한 미루려는 유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9년은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지 않고,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에 관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았던 시기로, 국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의 수요가 불명확하므로 면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⁸⁾ 사업자들의 측정기기 설치 유인 부족 및 측정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작용하면서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의 대규모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조기설치 유도라는 추경예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⁹⁾

따라서 환경부는 2020년 4월 확정된 대기관리권역 내의 총량관리사업장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동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로부터 도출되는 객관적인 측정값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7) 환경부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 이하인 배출구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8)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 편성 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예상 사업장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물량을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계획 물량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등 면밀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9) 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집행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2억원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¹⁾의 내역사업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19년 3월 2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17조의 개정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환경부는 예산현액 22억 7,600만원 중 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1억 3,7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50,889	77,842	3,179	0	81,021	66,255	81.8	10,662	4,104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0	2,276	0	0	2,276	139	6.1	0	2,137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련 행정절차 지연 및 채용절차 지연 등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환경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주어진 기능·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법」 제17조제2항²⁾ 및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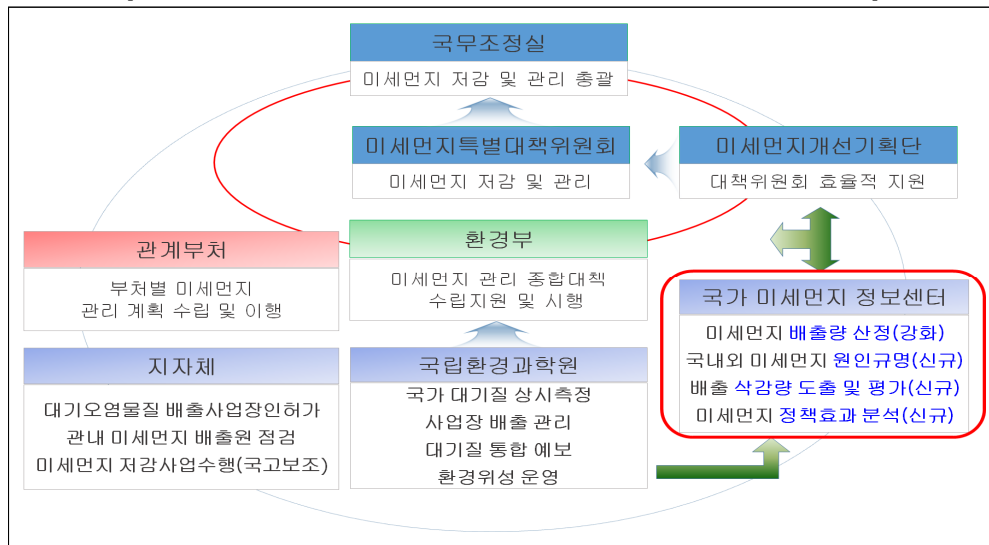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4-302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제1항3)에 의거하여 미세먼지 등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담당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및 정책영향 분석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내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역할]



자료: 환경부

당초 2018년 8월 제정된 「미세먼지법」 상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이었으나, 2019년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⁴⁾됨에 따라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운영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4.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 분석

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2019년도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청사 임차료 15억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고도화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원 30명에 대한 5개월분 인건비, 복리후생비, 고용 부담금 등 6억 800만원 및 일반수용비 1억 6,700만원 등 총 2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미세먼지법」 개정·시행 이후, 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 기능 및 조직 규모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9년 6월이 되어서야 구체적인 설립안이 도출되었으며, 미세먼지정보센터의 환경부 소속 기관 지정 및 인력 증원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⁵⁾이 2019년 8월말 이루어지는 등 센터의 운영 및 개소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22억 7,600만원 중 상용임금과 청사 임차료, 개소식 행사비 등에 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세부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추경예산			
		결산내역			세부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계	2,276	139	2,137	
	110-03 (상용임금)	489	11	478	○ 집행액: 11,489천원 - (급여) 6명, 11,074천원 - (초과근무수당) 2명, 415천원
	210-01 (일반수용비)	167	48	119	○ 개소행사: 11백만원 ○ 사무용품: 7백만원 ○ 채용심사(수당,용품): 3백만원 ○ 청사CI 등: 27백만원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대통령령 제30051호, 2019.8.27. 공포·시행).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추경예산			
		결산내역			세부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10-07 (임차료)	1,500	79	1,421	○ 집행액: 78,867천원 - (청사임차) 2회, 69,960천원 - (CAPS보안임차) 1회, 850천원 - (사무가구임차) 1회, 3,777천원 - (사무기기임차) 1회, 1,030천원 - (전산장비임차) 1회, 1,860천원 - (통신장비임차) 1회, 1,390천원
	210-12 (복리후생비)	10	-	10	○ 전문연구원 명절휴가비 등
	320-09 (고용부담금)	110	1	109	○ 전문연구원 4대보험 등

자료: 환경부

특히, 환경부는 직제 개정 및 추경예산 편성 이후, 10월부터 일부 인원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센터장 및 대기·환경 분야 전문연구원 등에 대한 채용공고가 11월 초부터 진행되는 등 채용절차가 지연되었으며, 당초 계획한 전문연구원 채용에 어려움이 따라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였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인력 채용 추진현황]

구분		모집인원	공고일	서류심사일	면접일	채용일
전문 연구원	1차	28	'19.11.5 (재공고 11.22)	'19.12.9	'19.12.19	'20.1.13(7명)
	2차	22	'20.1.31 (재공고 2.21)	'20.3.18	'20.4.7	'20.5.4(11명)
에디터		2	'19.11.5	'19.11.20	'19.11.27	'19.12.16(2명)
홍보전문위원		1	'19.11.5	'19.11.20	'19.11.27	'20.1.13(1명)
사무보조		3	'19.11.5	'19.11.20	'19.11.27	'19.12.16(2명) '20.1.13(1명)
전산관리자		3	'20.1.31	'20.2.21	'20.3.11	'20.4.6 (1명, 퇴사)

자료: 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 편성 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지원 및 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서울 지역의 청사를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청사의 위치가 오송으로 변경⁶⁾되면서 당초 편성된 5개월치 임차료 중 일부 예산만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이 모두 불용되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청사 임차 관련 추진현황]

일정	추진상황
'19. 8.27	센터 직제 공포
'19.10.30	일반직 인사(3명)
'19.11. 6	임시사무실 배치 및 이전
'19.11.18	연구직 인력재배치(10명)
'19.12.11	사무실 임차, 사무공간 조성 및 이전
'19.12.19	사무실 개소

자료: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인 산정 및 검증, 국내외 배출원별 미세먼지 원인 규명, 미세먼지 감축 효과 및 정책영향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지연 및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법령상 규정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긴급히 편성한 동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통합적·효율적인 관리 및 정책적 활용이라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환경부 등 세종시 내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전국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성이 탁월한 오송읍으로 입지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사업¹⁾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 국내 물산업의 발전과 물 관련 원천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을 위한 실증화시설인 실험분석실의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19년도 예산 현액 19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19,600	19,600	0	0	19,600	19,600	100.0	0	0

자료: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는 연구개발, 기술성능 확인,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화시설과 진흥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실험분석실²⁾은 물산업클러스터의 자립화와 시너지 효과 창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산업 관련 기초·응용·융합연구를 수행하고, 물 관련 전 분야의 시험·분석을 지원하며, 개발된 제품의 성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실험시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설립되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8-317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물산업클러스터 주요 시설 및 기능]

구 분	주요 시설	주요 기능	위 치
실증화 시 설	·실증플랜트 ·수처리설비성능시험동 ·종합관망시험동 ·실험분석실	- 정수·하수·폐수·재이용 실증시험 - 기업이 직접 TB를 제작·설치·운영 - 상·하수도 관망시험 - 물산업 기초·응용·융합 연구, 시험분석	대구광역시
진 흥 시 설	·워터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 마케팅·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자료: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실험분석실은 먹는 물 수질검사, 위생안전검사 등 시험분석업무 수행과 국제공인성적서 발급 등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신기술 인·검증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으로, 환경부는 당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물환경 관련 실험분석 및 물분야 소재·부품의 표준재료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험분석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물산업클러스터의 조성시기 및 조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9년 단년도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효율적인 실험분석 장비 도입을 위해 2단계로 분리하여 구매를 추진하였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 위생안전기준검사, 하폐수 수질오염도 검사 및 환경측정기기검사 분야 등 114종 258대를 도입하여 물기술 인·검증을 위한 수질검사 등 물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표준재료 시험 분야 59종 71대의 장비 구축을 통해 소재·부품의 물성 및 장기내구성 등에 대한 분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물산업클러스터 실험분석실 장비 도입 현황]

시험분야		시험항목	장비현황
총 계		663종	173종 329대
1단계		220종	114종 258대
구축 완료 (2019)	먹는물 수질검사	폐놀 등 73종	GC-MS 등 58종 185대
	바이러스검사	바이러스 1종	유전자증폭기 등 9종 16대
	원생동물검사	지아디아 등 2종	DIC 현미경 등 7종 8대
	수처리제검사	폴리아민 등 33종	이산화탄소정량장치 1종 1대
	위생안전기준검사	카드뮴 등 45종	수질자동분석장치 등 5종 5대
	하폐수 수질검사	BOD 등 56종	황분석기 등 13종 22대
	환경측정기기검사	용존산소 등 10종	직류전압발생장치 등 21종 21대
2단계		443종	59종 71대
구축 예정 (~2020)	표준재료시험	한국표준규격(KS) 173종	만능재료시험기 등 59종 71대
		단체표준규격 30종	
		국제표준규격(ISO) 371종	
		ASTM(미국) 30종	
		기타(JIS 등) 12종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당초 계획된 장비 도입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험분석 장비를 활용한 물환경 분야 실험분석 및 표준재료 시험 등 물산업클러스터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당초 2019년 예산 편성 시 환경부가 직접 수행하는 자산취득비(430-01목)로 편성되었으나, 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 예산을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로 전용하여 실험분석 장비 도입을 추진하였다.³⁾ 하지만 2019년 결산 결과 민간대행사업비로 교부된 예산 196억원 중 88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1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5,9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실행률이 45.1%로 장비 도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환경부에 따르면, 실험분석실에 도입될 장비들은 구체적인 사양이나 장비별 측정범위,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장비로서, 실험장비 구매 및 활용 경험이 많고 향후 실험분석을 직접 수행할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자산취득비(430-01목)를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으로 전용(기획재정부 승인, '19.1)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19회계연도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국기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19,600	19,600	19,600	0	19,600	8,836	10,105	659	45.1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험분석 장비의 사양 및 표준재료시험 분야 고도분석장비의 국제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분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4회 실시(19.1.25, 4.1, 6.21, 8.14)하고 계약심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융합연구소 실험분석장비 절차별 소요기간]

추진사항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上	下
- 시험검사기관 전문가 자문회의						
- 장비구매(1차) 발주요청						
- 장비구매(1차) 계약자선정						
- 장비구매(1차) 장비입고						
- 장비구매(2차) 발주요청						
- 장비구매(2차) 계약자선정						
- 장비구매(2차) 장비입고						

자료: 환경부

특히, 실험분석장비 구축을 위한 계약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1단계 실험장비 도입과 관련 비품 구매를 위한 계약이 2019년 6월과 8월에 발주되어 12월에 완료되었을 뿐, 2단계 표준재료시험 관련 장비들은 11월에 발주되어 연말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융합연구소 실험분석장비 발주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발주명	계약 방법	발주 시기	계약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먹는물 수질검사 등 114종 258대	일반 경쟁	'19.6	'19.9.18~'19.12.13	8,415	8,122	-
실험대 등 비품	나라장터 쇼핑몰	'19.8	'19.9.17~'19.12.13	611	596	-
열분석기 등 17종 24대	일반 경쟁	'19.11	'19.12.9~'20.4.7	912	0	732
염수분무시험기 등 11종 11대	일반 경쟁	'19.11	'19.12.20~'20.10.14	285	0	275
샤르피충격시험기 등 12종 12대	일반 경쟁	'19.11	'19.12.11~'20.11.20	1,720	0	1,618
디지털현미경 등 6종 6대	일반 경쟁	'19.11	'19.12.9~'20.4.7	271	0	239
NCLS, ESCR	일반 경쟁	'19.11	'19.12.23~'20.10.18	150	0	148
낙추충격시험기	일반 경쟁	'19.11	'19.12.23~'20.10.18	359	0	350
향온항습챔버 등 2종 3대	일반 경쟁	'19.11	'19.12.2~'20.3.1	109	0	93
UPLC-MS/MS 2대	일반 경쟁	'19.11	'19.12.19~'20.4.17	660	0	527
만능재료시험기 4대	일반 경쟁	'19.11	'19.12.30~'20.10.24	2,020	0	1,996
주사전자현미경	일반 경쟁	'19.11	'19.12.23~'20.6.20	266	0	212
엑스선회절분석기	일반 경쟁	'19.11	'19.12.23~'20.4.21	214	0	187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표준재료시험 기반구축	일반 경쟁	'19.12	'19.12.23~'20.12.21	3,778	0	3,728

자료: 환경부

동 사업에서 도입 추진 중인 실험분석 장비는 물환경 분야 실험분석 및 물 분야 표준재료 시험 등 물산업클러스터 실험분석실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로서, 장비도입 지연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당초 기대한 사업효과를 적시에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당초 계획된 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도입된 실험분석 장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¹⁾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향후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량이 일정하고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생활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의 용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9년 예산액 355억 3,9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전용된 3,8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355억 100만원 중 34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6,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하수처리수 재이용	35,539	35,539	0	△38	35,501	34,477	97.1	764	26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시 재이용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 하수재이용 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m³ 이상인 하수처리장으로 국고보조율은 30~70%이다.²⁾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8-305

동 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90.6%로 양호하였으나 2018년 67.7%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취소, 재원협의 지연, 설계사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해 예산현액 456억 8,600만원 중 243억 2,300만원만을 집행하고 212억 1,300만원은 이월하는 등 실집행률이 53.2%로 크게 하락하였다.

[2015~2019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보조사업자 및 민간대행자						
	예산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5	27,281	25,090	25,090	9,817	34,907	15,068	96.5	1,569	526
2016	22,353	22,353	22,353	19,822	42,175	25,790	61.1	16,205	180
2017	47,122	47,122	47,122	16,205	63,327	57,344	90.6	5,879	104
2018	46,154	46,154	46,154	5,879	52,033	35,244	67.7	13,213	3,576
2019	32,539	32,474	32,474	13,212	45,686	24,323	53.2	21,213	150

자료: 환경부

또한, 동 사업의 결과지표라 할 수 있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수 이용 시설이 2015년 625개소에서 2018년 671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연간 하수처리량 대비 재이용률은 2015년 14.7%에서 2018년 15.5%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르면, 2020년도까지 19.8억톤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8년도에 11.1억톤만을 재이용하여 2020년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³⁾

2)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중 공업용수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은 없다.

3) 아직까지 2019년도 하수도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2015~2018년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

(단위: 천㎥/년, %, 개소)

구분	연간 하수처리량	재이용량 (재이용률)	시설 수	장내 용수	장외용수			
					소계	하천유지 용수	공업용수	기타 ¹⁾
2015	7,005,179	1,027,456 (14.7)	625	531,385	496,071	369,164	53,484	56,939
2016	7,165,771	1,121,048 (15.6)	619	567,991	553,057	369,626	62,226	94,205
2017	7,016,545	1,113,233 (15.9)	660	564,760	548,472	429,841	63,550	55,081
2018	7,163,716	1,112,726 (15.5)	671	520,580	592,145	480,476	75,237	36,432

주: 1) 기타 장외용수는 농업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세척·살수용수, 청소화장실용수, 지하수충전 등을 합한 수치임

자료: 환경부, 「2018 하수도통계」

[단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

(단위: 천㎥/년, %)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12	2016	2020
공업용수	104,834	353,034	507,090
농업용수	50,052	84,811	106,388
유지용수	279,248	527,094	777,940
기타 도시용수	70,294	125,294	185,294
합계(장외)	504,428	1,090,233	1,576,712
장내 재이용량 ¹⁾	(401,541)	(401,541)	(401,541)
전체 재이용률 ²⁾	14.2	23.4	31.1
장외 재이용률 ³⁾	7.9	17.1	24.8

주: 1) 장내 재이용량은 변동 없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

2) 전체 재이용률 = (장내 + 장외재이용량)/총 하수처리량, 총 하수처리량은 2008년도 기준 (6,363,045㎥/년)으로 하여 향후 변동 없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

3) 장외 재이용률 = 장외 재이용량/총 하수처리량

자료: 환경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실무요령」에 따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중 공업용수 재이용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농업 및 하천유지용수 등 공익적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업용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18년까지 6개 사업이 추진되어 민간투자를 통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은 연간 약 6,471만톤으로 공공과 민간투자사업을 합한 연간 총 공업용수 재이용량 7,524만톤 중 8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에서 설정한 공업용수 재이용 목표(2020년까지 51개 사업에서 총 5억 709만톤 재이용)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⁴⁾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개소, 천m³/년, %)

단계 구분	물 재이용 기본계획 (2011~2020)	공업용수 재이용 실적 ¹⁾	공공	민간투자
사업 수	51	25	19	6
누적 공업용수 재이용 목표총량	507,090	75,237	10,531	64,706
재이용 실적 대비	-	(100.0)	(14.0)	(86.0)
목표총량 대비	(100.0)	(14.8)	(2.1)	(12.7)

주: 1) 공업용수 재이용 실적은 2018년 기준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공업용수 재이용 실적이 부진한 것은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 등 다른 장외용수 유형에 비해 충분한 수요처를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총 208개의 장외용수 재이용시설 중 하천유지용수 재이용시설이 113개로 약 5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35개 시설(16.8%)에서 재이용하고 있으나, 공업용수는 농업용수에 비해 재이용량이 많으나 25개 시설에서만 재이용하고 있어 타 유형에 비해 재이용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공업용수 민간투자사업의 재이용 실적(64,706천톤/년)은 공업용수 재이용 목표총량인 507,090천톤/년 대비 12.8%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친 실정이다.

[2018년 장외용수 재이용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천m³/년, %)

구분	시설 수(비중)	재이용량
장외용수 재이용시설(총계)	208(100.0)	592,145(100.0)
하천유지용수	113(54.3)	480,476(81.1)
농업용수	35(16.8)	12,213(2.1)
공업용수	25(12.0)	75,237(12.7)
기타 ¹⁾	35(16.8)	24,219(4.1)

주: 1. 하나의 시설에서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각각의 유형을 중복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음

1) 기타는 조경용수, 친수용수, 세척·살수용수, 청소화장실용수, 지하수충전 등을 합한 수치임
자료: 환경부

비록 환경부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18.7)을 통해 공업용수의 신규수요 발생 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기존 공업용수 사용처에서도 기존 공급량을 재이용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활용을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한정된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수요처 확보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법」, 「수도법」, 「수자원법」 등 하수처리수를 물 공급기능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의 면밀한 관리를 통한 지반침하 안전 확보 필요

가. 현 황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¹⁾은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및 싱크홀 등 하수도 관련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결함발생 가능성이 높은 20년 이상 경과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 조사비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 72억 9,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²⁾

[2019회계연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 지원	0	7,294	0	0	7,294	7,294	100.0	0	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하수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하수관은 상수관, 가스관, 송유관, 전력·통신선 등과 더불어 지하에 매설된 인프라 시설 중 하나로서, 하수관로가 노후화될 경우 관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상부의 토양이 결함부위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실되어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기며, 그 위로 차량 통행 등 큰 하중이 가해지면 지반침하가 발생한다.

실제로, 2014~2018년까지 발생한 지반침하 사례 1,143건 중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460건(4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50

2) 국고보조율은 20~50%이다.

[지반침하 사고 원인별 비중 현황(2014~2018)]

(단위: 건, %)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하수관 손상	460 (40.2)	21 (29.6)	66 (34.6)	90 (34.7)	143 (51.1)	140 (40.9)
상수관 손상	214 (18.7)	31 (43.7)	53 (27.7)	53 (20.5)	41 (14.6)	36 (10.5)
굴착공사부실	61 (5.3)	6 (8.5)	13 (6.8)	19 (7.3)	13 (4.6)	10 (2.9)
합 계	1,143	71	191	259	280	342

자료: 환경부

특히, 환경부 「하수도통계」(2018)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156,257km 중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결함 발생가능성이 높은 노후하수관로는 64,740km로 약 41.4%를 차지하고 있어 지반침하의 잠재원인인 노후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 비중 현황(2018년 기준)]

(단위: km, %)

구분	합계	20년 미만 하수관로		20년 이상 노후관로	
		구간길이	비율	구간길이	비율
전국	156,257	91,517	58.6	64,740	41.4
서울특별시	10,729	839	7.8	9,889	92.2
부산광역시	9,408	4,148	44.1	5,258	55.9
대구광역시	6,030	2,126	35.3	3,904	64.7
인천광역시	5,650	2,789	49.4	2,860	50.6
광주광역시	4,372	1,176	26.9	3,195	73.1
대전광역시	3,563	1,440	40.4	2,124	59.6
울산광역시	4,399	2,093	47.6	2,307	52.4
세종특별자치시	1,159	1,094	94.4	65	5.6
경기도	30,487	20,060	65.8	10,427	34.2
강원도	9,442	6,525	69.1	2,916	30.9
충청북도	7,091	4,521	63.8	2,570	36.2
충청남도	8,240	6,135	74.5	2,106	25.6
전라북도	9,184	5,895	64.2	3,289	35.8
전라남도	11,701	8,869	75.8	2,831	24.2
경상북도	15,307	11,137	72.8	4,169	27.2
경상남도	15,233	10,291	67.6	4,941	32.4
제주특별자치도	4,265	2,379	55.8	1,887	44.2

자료: 환경부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 3월 실시한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전국 161개 지자체의 39,798km 노후하수관로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870억원(국고 922억원)을 지원하여 정밀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2019년 정밀조사 추진을 희망한 26개 지자체에 대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72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추진계획(2019~2023)]

(단위: km, 개소, 억원)

연 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사물량	39,798	3,103	8,917	9,693	10,451	7,634
지자체	108	26	72	72	72	59
소요비용	2,870	224	643	698	754	551
국 고	922	73	221	220	246	162
지방비	1,948	151	422	478	508	389

자료: 환경부

그러나 2019년 결산 결과, 추경에 편성된 72억 9,400만원 중 51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1억 600만원(28.9%)은 차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와 용인시의 경우, 지방비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계약심사와 적격심사 등 정밀조사 수행에 필요한 각 단계별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가평군과 안성시, 양주시, 목포시 및 통영시는 적격심사 등 사업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계약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2019회계연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실행행 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시행주체 집행현황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3,196	1,090	34.1	2,106	
인천	1,083	400	36.9	683	지방비(추경) 확보 지연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가평군	155	0	0.0	155	적격심사 등 용역 계약절차 지연
안성시	130	100	76.9	30	적격심사 등 용역 계약절차 지연
양주시	844	469	55.6	375	적격심사 등 용역 계약절차 지연
용인시	728	0	0.0	728	지방비(추경) 확보 지연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목포시	115	50	43.5	65	적격심사 등 용역 계약절차 지연
통영시	141	71	50.4	70	적격심사 등 용역 계약절차 지연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은 실시 설계 또는 재원협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며, 지자체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집행 가능한 물량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지방비 확보 지연 및 적격심사를 비롯한 계약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노후하수관로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급히 편성된 동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연도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하수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자체별 노후관로 비율과 지반침하 등 관련 사고발생 현황, 경제적·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R&D) 사업¹⁾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유리병의 선별·회수 등 전처리, 재생원료화, 에너지화 등 순환 전 단계에 걸친 기술개발을 통해 자원순환성을 제고시키고, 국가적 환경문제로 대두된 폐플라스틱, 폐유리병의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단기에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등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19년 예산현액 7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R&D)	7,600	7,600	0	0	7,600	7,600	100.0	0	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사업 집행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기획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18년 발생한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 및 폐플라스틱 대란 문제 등 재활용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¹⁾(18.5)을 발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434-302

표하였으나, 페비닐·페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동 사업을 통해 페비닐·페플라스틱·폐유리병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당초 2019년도 예산을 통해 페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개발 2건, 페플라스틱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4건, 폐유리병 재활용 기술개발 1건, 페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개발 3건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해 상반기 착수를 전제로 9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의 연구과제 계획 대비 추진 현황]

구분	과제 추진계획 (2019년 예산 기준)	과제 추진현황 (2019년 결산 기준)
페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개발	2개 과제 × 640백만원 × 9개월 = 960백만원	2개 과제 × 640백만원 × 9개월 = 960백만원
페플라스틱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4개 과제 × 832백만원 × 9개월 = 2,496백만원	7개 과제 × 475.4백만원 × 9개월 = 960백만원
폐유리병 재활용 기술개발	1개 과제 × 1,280백만원 × 9개월 = 960백만원	1개 과제 × 1,280백만원 × 9개월 = 960백만원
페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개발	3개 과제 × 1,280백만원 × 9개월 = 2,880백만원	4개 과제 × 960백만원 × 9개월 = 2,880백만원
합계	총 10개 과제 7,600백만원	총 14개 과제 7,600백만원

자료: 환경부

그러나 환경부의 사전 기획연구 미흡, 선정기준 미달 및 실제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1차 공고에서는 총 7개 분야 8개 과제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3개 분야는 미선정되었으나, 이후 진행된 2차 공고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3개 분야 6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즉, 환경부는 총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총 14개 과제를 추진한 것으로, 이는 전반기에 미선정된 과제의 잔액 및 당초 편성된 9개월분의 예산과 8월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 간 차액 등을 활용하여 계획에 없던 신규과제를 추가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³⁾

2)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통해 '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과제별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분야 (내역사업)	과제명	예산
1차	공고 체결과제	8개 과제	4,581
1차	페플라ستيك 분리·선별 기술개발	페플라ستيك 물질 재활용을 인공지능결합 고속 자동화 선별공정 개발	370
	페플라ستيك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저급 페플라ستيك을 이용한 토목구조물 적용기술개발	670
		혼합 페플라ستيك alloy를 활용한 콘크리트 블록 개발	540
		페스티로폼을 재활용한 친환경 준불연 단열재 개발	326
		저급 페플라ستيك을 이용한 인공섬유 상용화 기술 개발	600
		PE계 페플라ستيك을 이용한 재생원료 상용화 기술개발	648
	페플라ستيك 에너지화 기술개발	불용성 양극전극을 활용한 저급 혼합 플라스틱류의 청정 고품질 SRF 제조 실증화 기술개발	690
	페유리병 재활용 기술개발	수학 파분쇄 모델 적용 페유리병 골재 제조 및 대량 활용기술 개발	737
2차	공고 체결과제	6개 과제	2,715
2차	페플라ستيك 분리·선별 기술개발	페비닐 재활용을 위한 파쇄-세척-건조-선별 및 Up-Cycling 시스템 개발	400
	페플라ستيك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생활계 복합 폐합성수지 기반 장수명(MTTF 6년이상) 목재 대체품 개발	300
		저급 페플라ستيك 재활용을 위한 저에너지 소비형 전처리 공정기술과 재활용 소재품질 고도화 시스템 구축	340
	페플라ستيك 에너지화 기술개발	저급 페비닐을 이용한 저염소 청정오일 생산기술개발	792
		저급 혼합 페플라ستيك을 이용한 이중유동층 방식의 열 분해가스화 기술 개발	373
		저급 혼합 페플라ستيك을 이용한 플라즈마 방식의 열분 해가스화 기술 개발	510

자료: 환경부

- 3) 다만, 환경부는 연구과제 추진 중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동 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시급한 페플라ستيك 재활용 확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과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2019년도 과제 추진 중에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저급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저에너지 소비형 전처리 공정기술과 재활용 소재품질 고도화 시스템 구축’ 과제(19년 예산 340백만원), ‘생활계 복합 폐합성수지 기반 장수명(MTTF 6년이상) 목재 대체품 개발’ 과제(19년 예산 300백만원) 등 2개 연구과제를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해당 과제들에 총 18억 4,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잔액으로 신규 추진한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총 연구비
저급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저에너지 소비형 전처리 공정기술과 재활용 소재품질 고도화 시스템 구축	’19.8 ~ ’21.12 (’19.8 ~ ’19.12)	340	453.6	940
생활계 복합 폐합성수지 기반 장수명(MTTF 6년이상) 목재 대체품 개발	’19.8 ~ ’21.12 (’19.8 ~ ’19.12)	300	453.6	900
합 계		680	907.2	1,840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를 추진한 사항이며, 당초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분야와 동일하므로 신규과제 추진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집행단계에서 변경되었다는 점은 당초 연구과제 추진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많은 수의 과제를 지원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동 사업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기획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수행단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¹⁾은 개발이 완료된 우수 환경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사업화자금·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최근 환경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자원순환·재활용분야의 혁신 기술·설비를 발굴하여 이를 국내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9년도 본예산 49억 3,000만원과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을 위해 반영된 추경예산 6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2억 3,000만원 중 111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4,930	11,230	0	0	11,230	11,193	99.7	27	10
사업화 기반 마련	4,830	4,830	0	0	4,830	4,830	100.0	0	0
에코 사이언스 파크 조성 기초조사 연구	100	100	0	0	100	63	63.0	27	10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0	6,300	0	0	6,300	6,300	100.0	0	0

자료: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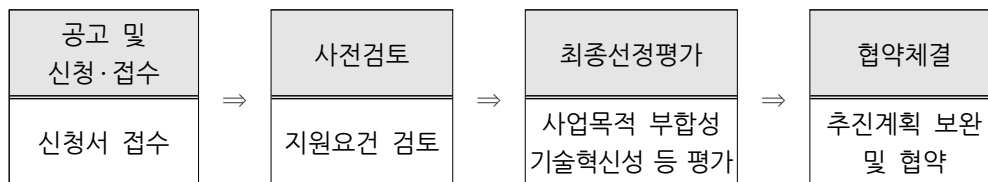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첫째, 환경부는 2019년 추경을 통해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설치의 조속한 완료 및 2020년 추진 중인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집진 설비 등 스마트 설비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실용화·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²⁾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19.8)에 근거하여 동 내역사업 예산을 한국환경공단에 교부한 후,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및 자원순환 분야의 실용화 사업을 공모하고, 기술검증을 포함한 두 차례의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이후,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의 실제 산업현장 적용에 필요한 설비제작비·설치비 등을 지원하며, 기술자문 회의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추진 절차]



자료: 환경부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사업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1차 공모(8.13~9.2)와 2차 공모(9.11~10.11) 및 각각의 공모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선정위원회의 선정평가 등을 거쳐 총 13개 업체를 선정·지원하였다.

2) 참고로, 환경부는 2020년부터 신규 내역사업을 통해 폐기물 선별기 등 재활용 설비, 자원화 설비, 악취저감 설비 등 자원순환 촉진 관련 기술·설비를 보유한 환경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업체에 8.5억원, 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1개 업체에 50.9억원 등 총 13개 업체에 59.4억원이 지원되었으며,³⁾ 추경예산이 8월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금과 잔금을 모두 연내에 집행하는 등 예산의 집행에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선정과제	정부지원금				
		합계	선금	집행일자	잔금	집행일자
1차	창성엔지니어링	600,000	420,000	'19. 9.30	180,000	'19.12.19
	(주)세라컴	249,000	174,300	'19. 9.30	74,700	'19.12.19
2차	동원중공업(주)	600,000	420,000	'19.11. 8	180,000	'19.12.19
	(주)숨	539,428	377,600	'19.11. 8	161,828	'19.12.19
	청정테크(주)	300,000	210,000	'19.11. 5	90,000	'19.12.19
	(주)에스엠에이씨케이	593,600	415,520	'19.11. 8	178,080	'19.12.19
	(주)삼도환경	175,380	122,766	'19.11. 5	52,614	'19.12.19
	해성엔지니어링(주)	600,000	420,000	'19.11.14	180,000	'19.12.19
	(주)그린쿨텍	16,950	11,865	'19.11. 6	5,085	'19.12.19
	(주)대자연 ¹⁾	600,000	420,000	'19.11. 7	180,000	-
	(유)대성바이오텍	599,274	419,492	'19.11. 5	179,782	'19.12.19
	(주)싸이몬	488,695	342,087	'19.11. 8	146,609	'19.12.19
	(주)드웰링	579,900	405,930	'19.11.11	173,970	'19.12.19
합계		5,942,227	4,159,559		1,782,668	

주: 1. 지원대상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하였음

1) 2020년 3월 협약 해약에 따라 잔금이 미집행되었음

자료: 환경부

그러나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추진절차 및 시기를 살펴보면, 사업 공고 후 설명회 개최와 사전검토, 선정 평가 등 기업과의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3) 해당 업체들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의 60%를 지원받고 나머지 40%는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였다.

4) 2019년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공고 이후 1·2차 지원대상 선정 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 기반이 열악하여 행정절차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기관의 대행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상담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 절차별 추진현황]

구분	주요 절차	세부내용	일정
공통	사업 위·수탁계약	-	'19.8.8.
	사업수행체계 마련	사업 운영지침 마련 등	~'19.8.30
1차	사업공고 및 홍보	사업공고 및 접수 마감	'19.8.13. ~ '19.9.2.
		사업설명회 개최	'19.8.21.
	지원대상 선정	전문가 후보단 구성	'19.9.16.
		사전검토	~'19.9.16.
		1차 선정평가(1차 지원과제 확정)	'19.9.17.(~'19.9.23.)
	지원대상 사업수행	협약 체결	'19.9.26. ~ '19.9.30.
		선금 지급	'19.9.30.
2차	사업공고	사업공고(2차) 및 접수 마감	'19.9.11. ~ '19.10.11.
	지원대상 선정	2차 선정평가(2차 지원과제 확정)	'19.10.22.(~'19.11.22.)
	지원대상 사업수행	협약 체결	'19.11.4. ~ '19.11.14.
		선금 지급(2차 과제)	'19.11.5.~14.
공통	지원대상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잔금 지급	~'19.12.20
	지원대상 사업 완료	사업비 정산	~'20.12.31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20.12.31

자료: 환경부

또한, 사업 공고를 비롯한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에 더해, 협약이 체결된 후 해당 기업이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활용하여 실용화·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경우, 전체 과제가 '20년 7월 이후로 이월되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한 추경예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제 선정절차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혁신설비 설치 지원 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용역비(210-14목)로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 계약 현황(2019~2020년)]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명	기간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집행액	계약방식
2019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19. 8. 8 ~ '20.12.31	한국환경공단	6,300	6,300	수의
2020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20. 2.13 ~ '21. 8.31.	한국환경공단	12,300	12,300	수의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⁵⁾ 및 동법 시행령 제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6. 환경산업체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17조6)에 근거하여 개발된 우수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용역비(210-14목)로 집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공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한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4. 우수 환경기술에 대한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정보·시설·자금 및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상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역할]

전문기관	기능 및 역할
한국환경공단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사업 전담인력 배치 - 위원회의 구성·운영 -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 -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 수행기관 만족도 조사 및 사업 성과 모니터링·분석·활용·보급·홍보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활동 - 기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환경부

특히, 동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촉진 등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화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탁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7)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위탁기관이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위탁계약의 이행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잔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용역비(210-14목)에 비해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¹⁾은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치가 어려운 환경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성장과 국내 우수 환경기술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자사업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환경산업 펀드 조성을 위한 본예산 130억원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추경예산에서 신설된 미세먼지 특화펀드 조성 예산 150억원 등 2019년도 예산현액 28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13,000	28,000	0	0	28,000	28,000	100.0	0	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취지를 고려하여 미세먼지 특화펀드가 실제 투자까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출자금을 통한 재정지원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는 국고와 민간투자를 합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²⁾로, 2년 이상 투자 및 5년 이상 존속 하에 투자·회수하여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8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³⁾

환경산업 투자펀드와 2019년 추경예산에서 신설된 미세먼지 특화펀드의 기본적인 펀드운용 방식은 동일하며, 매년 환경부가 모태펀드 관리기관인 (주)한국벤처투자에 펀드예산을 출자한 후, 투자 운용사를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설정하고, 민간 투자금 모집 등을 거쳐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⁴⁾

그러나 동 사업은 초기 2년간 운용사 선정 지연, 민간자본 유치와 투자조합 결성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 투자기업 확보 등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실제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17년에 추진된 1차 펀드는 12월이 되어서야 투자 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실제 투자가 2018년 2월에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20년 5월 현재 약정총액의 80.3%인 337억 2,100만원이 투자된 실정이다.

또한, 2018년 2차 펀드의 경우, 운용사 선정이 '18년 10월 12일 완료된 이후, 투자조합이 연내에 결성되지 못하고 2019년 4월말 투자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20년 5월 기준 1개 기업에 10억원이 투자되는데 그쳤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개소, %)

구 분		예산액	약정총액 (A)	최종결성일	투자기간	투자 기업 수	투자액 (B)	투자실적 (B/A)
환경산업	1호 펀드	20,000	42,000	2017.12.13	3년	10	33,721	80.3
	2호 펀드	13,000	22,000	2019. 4.30	4년	1	1,000	4.5
	3호 펀드	13,000	22,000	2020. 3. 2	4년	-	-	-
미세먼지	4호 펀드	15,000	21,500	2019.12.30	4년	-	-	-

주: 2020년 5월 기준

자료: 환경부

- 2) 모태펀드란 여러 투자자(출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펀드(母펀드)를 조성한 후, 다시 개별투자펀드(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 3) 현재 환경부는 2년 이상 투자, 5년 이상 존속 하에서 운용사 및 출자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투자·회수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 4) 환경부 「중기사업계획(19~23)」에 따르면, 환경산업 투자펀드의 정부출자비율을 60%로 유지하되, 미세먼지 특화펀드는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정부가 70%를 부담하고 민간에서 나머지 30%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된 3호 펀드와 대기분야 사업체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화펀드(4호 펀드)⁵⁾는 각각 2020년 3월과 2019년 12월말 투자조합이 결성되었으나, 현재까지 투자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미래환경산업 펀드별 투자 실적]

구분	운용사	투자대상	업종	투자일	투자금액
2017 (1호 펀드)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A사	하수슬러지 연료화	'18.2월	80억원
		B사	대기오염저감장치 생산	'18.3월	8억원
		C사	선박청소서비스	'18.8월	5억원
		D사	폐기물 소각 및 슬러지 건조처리업	'18.9월	50억원
		E사	생물 산업	'18.11월	50억원
		F사	의료진단보조 S/W 개발	'18.11월	14.2억원
		G사	생물 산업	'19.5월	30억원
		H사	수처리설비 제조업체	'19.7월	20억원
		I사	폐기물 재활용업	'19.12월	54억원
		J사	비금속원료 재생업	'19.12월	26억원
2018 (2호 펀드)	포스코기술투자, 코나인베스트먼트	K사	신재생에너지 서비스업	'19.11월	10억원
2019 (3호 펀드)	한화투자증권	-	-	-	-
2019 (4호 펀드)	이앤인베스트먼트	-	-	-	-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타 세부사업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및 1:1 상담 등을 통해 운용사와 우수 미세먼지 관련 설비·제품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모태펀드 관리기관인 (주)한국벤처투자에서 주재하는 정기 투자보고회 등을 활용하여 모태펀드 재무상황 및 타부처 펀드 투자운용 사례에 관한 모니터링 등 실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펀드 투자기간 내에 투자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 미세먼지 특화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 저감, 발생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의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우수기술을 보유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체이다.

그러나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시설과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1·2호 환경산업 투자펀드⁶⁾의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로 조성된 3호 펀드 및 미세먼지 특화펀드의 초기 투자실적 확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1:1 대면 상담 및 설명회 개최가 지연되거나, 중소·벤처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등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펀드 투자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⁷⁾

또한, 미세먼지 특화펀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외적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대기분야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기업의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미세먼지 특화펀드가 실제 투자까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출자금인 유망한 환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져 재정지출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의 투자 범위나 대상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기업과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 포함된다.

7) 환경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에서 논의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방안’ 중 환경펀드 적용 대책을 중심으로 모태펀드의 초기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 손실액의 우선 충당, 성과보수 추가 제공, 출자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의 연계적인 지원 실적 부진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

가. 현 황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¹⁾은 201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²⁾에 따라 중국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의 시설에 집진·탈질·탈황 등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과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100억원 중 13억 5,400만원은 한·중 미세먼지 사업 활성화와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 사업에 전용하였고, 나머지 86억 4,600만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사업비로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10,000	10,000	0	△1,354	8,646	8,646	100.0	0	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사업의 연계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및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방식 및 장애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국내 기업(기술)을 선정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4-306

2)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분야에서 대기오염수치 정보 공유와 대기오염 예·경보 모델 공동연구 등의 협력을 실시하고, 한·중 환경산업포럼 및 철강 등 분야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실증 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며, 동북아지역차원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 후, 현지 홍보 및 협상결과에 따라 한·중 기업간 계약이 체결될 경우, 평가를 통해 실제 사업 수행기관으로 확정하고 총 계약금의 20%(최대 40억원)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³⁾

그러나 2015년부터 신규 추진된 동 사업은 지원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시작년도인 2015년도에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 실적이 전무하여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한 이래로 연례적인 이·불용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70억 2,000만원 중 5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117억 3,500만원은 불용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산	배정액 (210-14목)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5	10,000	10,000	10,000	0	10,000	334	3.3	9,666	0
2016	10,000	10,000	10,000	9,666	19,666	10,045	51.1	9,621	0
2017	10,000	10,000	10,000	9,621	19,621	3,643	18.6	8,334	7,644
2018	10,000	10,000	10,000	8,334	18,334	4,288	23.4	8,374	5,672
2019	10,000	10,000	8,646 ¹⁾	8,374	17,020	5,285	31.1	0	11,735
2020.4	9,050	8,250	8,250	0	8,250	149	1.8	미정	미정

주: 1) 미세먼지 범국가적 대책수립 및 주변국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사업비로 전용한 13억 5,4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을 교부하였음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19년 1월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2월 한·중 환경장관 회담, 11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환경분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1월에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는 대기분야

3) 총 계약금의 80%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및 중국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2015년과 2016년 두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의 요청으로 2022년까지 사업이 연장되었다.

협력 최상위 계획인 ‘청천(晴天) 프로젝트’ 이행방안에 서명하는 등 한·중간 환경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내 사업대상 지역이 확대되었고, 현지 대기환경산업기술 박람회와 기술교류회 참여기업 및 상담실적이 각각 27개 및 147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사업 추진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지 기술교류회 개최 실적]

(단위: 개, 건수)

구분		계	2017	2018	2019
기술설명회 참가기업수	한국	46	7	12	27
	중국	386	53	57	276
상담실적		270	39	84	147

자료: 환경부

그러나 '19년 1월과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6개 국내 참여후보기업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과 실제로 체결된 계약은 총 5개사의 8개 프로젝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참여후보기업 및 참여기업 현황]

(단위: 개, 건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참여후보기업 수 ¹⁾	6	8	7	12	26
계약 건수	-	5	-	6	8
(참여기업 수) ²⁾	(-)	(5)	(-)	(6)	(5)

주: 1) 대기오염방지기술 보유하고 중국에서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기업을 평가를 통해 선정

2) 중국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지원받은 기업체

자료: 환경부

또한, 구체적인 기업별 지원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개 기업, 2018년 1개 기업 및 2019년 1개 기업의 계약금액은 100억원을 상회하나, 이를 제외한 기업들의 평균 계약체결액 규모가 작아 정부지원금 규모 또한 연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기업별 계약금액 및 지원 실적 현황]

구분	기업명	분야	계약 금액	정부 지원금	실제 환경설비 사업비
2016	포스코ICT	집진	28억원	5.6억원	5.6억원
	한모기술	집진	5억원	0.9억원	0.75억원
	블루버드환경	탈황, 집진	109억원	21.7억원	20.5억원
	KC코트렐	집진	131억원	25.8억원	25.8억원
	일신종합환경-제이텍	집진	192억원	38.4억원	37.4억원
2018	블루버드환경-한모기술	탈황, 탈질	136억원	27.2억원	24.9억원
	H.K.T 전기	집진	4억원	0.9억원	0.87억원
	현테크이엔지	VOCs	12억원	2.4억원	2.0억원
	KC코트렐	탈황	5억원	5억원	5.0억원
		탈질	10억원		
		탈질	11억원		
	상원기계	VOCs	6억원	1.2억원	1.2억원
	엔바이온	VOCs	7억원	1.4억원	1.4억원
2019	대한피엔씨	집진	4억원	0.7억원	0.7억원
	대양이엔아이	VOCs	181억원	36.1억원	36.1억원
	상원기계	VOCs	2억원	0.5억원	0.5억원
	KC코트렐	탈황	12억원	2.4억원	2.4억원
	KC코트렐	탈질	16억원	3.7억원	3.7억원
		탈황, 탈질	3억원		
	CK월드	집진	4억원	0.9억원	0.86억원
	KC코트렐	탈질	5억원	1억원	0.98억원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 참여기업을 선정하더라도 중국 기업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동 사업의 특성상 양국 관계의 변화, 중국 측의 의지 등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 사업 추진이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정부지원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였고, ② 제철소 등 고정형 설비와 DPF 등 이동형 설치 기업 등으로 참여기업 및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③ 국내 참여후보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참여후보기업 Pool을 없애고 중국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접수체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④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과제

종료 후 전체 프로젝트 계약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고, ⑤ 2019년부터 이·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회계연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출장이 불가능하고, 중국 측의 공장 가동 중단, 입국금지조치 등 현지 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기업과 중국 발주처 간 협상이 지연되거나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데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⁴⁾

따라서 환경부는 연례적인 지원 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방식 및 장애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환경부는 기존 지원 과제의 경우, 당초 2019년 종료예정이었던 과제의 사업 수행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였고, 중국 현지 현장점검을 2020년 4분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말 기준, 3개 프로젝트에 대해 15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약 38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성고가 일부 개선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기술교류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²⁾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담금 성격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한 후, 해당 개발사업자 등이 대체자연의 조성,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법 제50조³⁾에 근거하여 기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자연 생태계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9년도 예산현액 108억 6,000만원 중 100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8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생태계 훼손지 복원	10,260	10,260	600	0	10,860	10,057	92.6	775	28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2-304

2)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단서 생략)

나. 분석의견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한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과피와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 측면에서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이 3만 m² 이상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m² 이상인 사업, 광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등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 해당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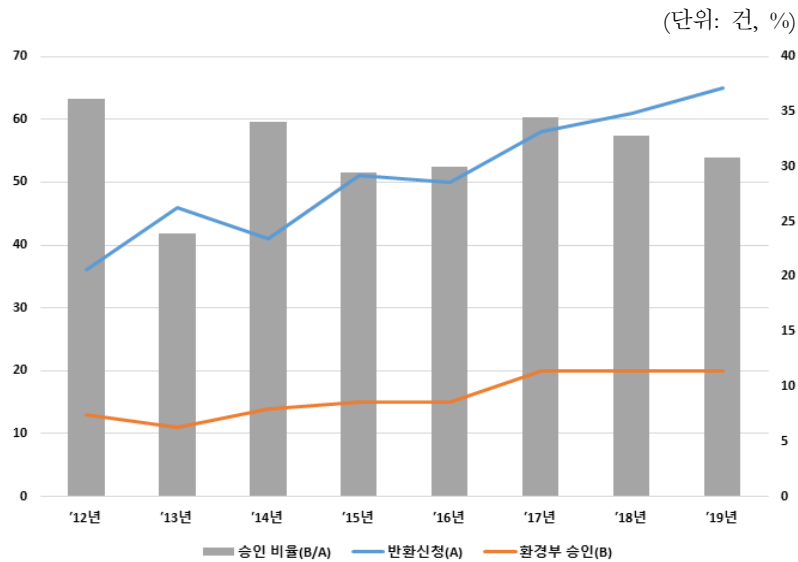
자료: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환경부는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자가 대체자연의 조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줌으로써 사업자 등⁴⁾이 자발적으로 생태계 복원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4)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 등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도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신청 건수가 2012년 36건에서 2019년 65건으로 증가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 사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협력금 반환 신청 대비 환경부의 반환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3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단 7건이 증가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17~2019년) 반환 신청 대비 승인 비율 또한 34.5%에서 30.8%로 감소하는 등 사업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 신청 대비 승인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반환신청(A)	36	46	41	51	50	58	61	65
환경부 승인(B)	13	11	14	15	15	20	20	20
승인 비율(B/A)	36.1	23.9	34.1	29.4	30.0	34.5	32.8	30.8

자료: 환경부

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 반환신청액 483억원 중 102억 6,000만원이 반환승인되었으며, 반환신청액 대비 승인비율이 2016년 19.9%에서 2018년 25.9%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21.2%로 다시 감소하는 등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어진 예산 하에서는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을 신청하는 사업자 등에게 협력금을 지원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 반환신청액 대비 승인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평 균
반환신청액(A)	33,700	36,200	35,700	39,600	41,700	48,300	39,200
반환승인액(B)	7,000	7,000	7,100	9,400	10,800	10,260	8,593
반환비율(B/A)	20.7	19.3	19.9	23.7	25.9	21.2	21.9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보전사업 시행을 유도하는 한편,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등 생태계 복원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근거하여 생태계의 훼손면적⁵⁾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방식]

- 부과요율: 훼손면적(㎡) 당 300원
- 산정방식: 훼손면적 × 300원 × 지역계수
- ※ 지역계수: 1~4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 녹지지역 2, 농림지역 3, 보전관리지역 3.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자료: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재정리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생태계 훼손면적이란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등이 발생한 지역의 면적을 의미한다.

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당 부과금액은 유사 부담금과 비교했을 때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⁶⁾ 부담금 중 유일하게 총 부과금액의 상한을 5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시키기 위한 유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개발 자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유도하기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목적 및 협력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요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법령상 규정된 부과금액 상한액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징수액의 약 40~60%를 시·도지사에게 교부하고 있다.⁷⁾ 비록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액을 교부받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교부금액의 사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법령상 규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6)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지역계수 최대값(4)을 곱하더라도 m²당 1,200원에 불과하나, 2019년 기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m²당 고시단가는 준보전산지 4,800원, 보전산지 6,2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은 9,600원 수준이다.

7)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⑤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 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사용용도]

-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확보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
 - 생태통로 설치사업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
 -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료: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따라서 환경부는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부금 사용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으며,⁸⁾ 교부금의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교부금 배분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현재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실적, 사용실적 등에 대해 지자체 공문, 별도의 엑셀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을 표기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연 2회)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 현 황

환경지킴이 사업¹⁾은 생태 우수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체험·관찰욕구 증대에 대응하여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훼손을 예방하며, 생태·경관 보전지역, 국립공원 및 5대강 주요수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 379억 9,700만원 중 37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8억 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환경지킴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환경지킴이	37,997	37,997	0	0	37,997	37,191	97.9	0	806
자연환경해설사	14,513	14,513	0	0	14,513	14,329	98.7	0	184
국립공원지킴이	16,593	16,593	0	0	16,593	16,593	100.0	0	0
주민감시요원	2,923	2,923	0	0	2,923	2,663	91.1	0	260
5대강지킴이	3,968	3,968	0	0	3,968	3,606	90.9	0	362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지킴이 사업은 ① 국립공원 및 생태관광지역 탐방객에게 생태탐방·체험·관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경보전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자연환경해설사, ②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불법행위 단속 등을 수행하는 국립공원지킴이, ③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단속하는 주민감시요원, ④ 5대강 수계의 주요 오염의심지역을 순찰·단속하고 정화활동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24

등을 실시하는 5대강 지킴이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부는 조직기능 및 특성이 유사한 국립공원지킴이 재난구조대와 국립공원공단 안전관리반을 통합 운영하는 등 국립공원 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80조,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조 등²⁾에 따라 국립공원지킴이 재난구조대와 국립공원공단 안전관리반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지킴이 재난구조대는 환경부 예산으로 편성한 후 국립공원공단에 출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 안전관리반은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에 따른 공단 예산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다.

두 조직은 2015년 국립공원구조대로 통합된 이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탐방로 위험지역 점검 및 모니터링, 탐방객 안전교육 및 통제를 통한 사고예방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악구조·구급 등 경력보유자, 응급구조 및 인명구조 등 구조 관련 교육이수 또는 자격소지자 등 자격요건 또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난구조대와 안전관리반 운영현황]

구분	재난구조대 (환경부)	안전관리반 (공단 출연사업)
사업기간	'08년 ~ 현재	'02년 ~ 현재
추진경위	입장료 폐지에 따른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안전관리인력 추가 확충 필요	설악산, 지리산 등 암·빙벽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
사업목적	급증하는 탐방객 안전관리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탐방환경 제공을 위한 국립공원 지킴이 도입	- 국립공원 안전관리업무 강화 - 탐방객 안전문화(교육) 확산

2) 「자연공원법」 제80조(탐방객 안전관리대책),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조(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구분	재난구조대 (환경부)	안전관리반 (공단 출연사업)
인원	113명	66명
예산	3,991백만원	2,496백만원
주요업무	• 암벽/릿지, 빙벽사고 등 전문 구조 활동(북한, 설악, 지리 등) • 탐방객 안전사고 시 구조 업무 • 낙석위험물 고정화작업 및 모니터링 업무 • 주요 위험지역 거점근무, 탐방객 안전교육 및 통제 등	
자격요건	• 산악구조/구급 등 특정분야의 경험 및 경력 보유자 •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 구조 관련 교육 이수 또는 자격소지자	
근무형태	• 주40시간 상시근로	
교육훈련	• 구조능력 수준별(기본-전문-강사) 교육 4회 102명 • 합동구조 및 훈련 363회 4,248명	

자료: 환경부

또한, 재난구조대와 안전관리반의 근무형태는 주5일, 1일 8시간 근무로 동일하고, 지형숙지, 구조장비 운용, 상황별 구조기술 습득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시 두 조직이 통합된 구조출동 체계(최소 4인 이상)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반이 배치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재난구조대 단독 또는 구조 역량을 갖춘 일반직원으로 구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재난구조대는 국립공원 안전관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조직의 기능·역할이 동일하며 조직구성원의 자격요건이나 특성 또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 안전관리반은 공단 출연사업으로 2002년에 시작되었고, 국립공원지킴이 재난구조대는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는 등 사업의 태생적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은 재난구조대와 안전관리반의 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바, 조직기능 및 특성이 유사한 국립공원지킴이 재난구조대와 국립공원공단 안전관리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탐방객 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

3) 현재 국립공원지킴이 재난구조대 관련 예산은 ‘환경지킴이’ 세부사업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에 편성된 ‘안전관리반’과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예산을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재난구조대 및 안전관리반 주요 실적]

(단위: 건, 회)

구조 및 지원	안전교육	점검 및 정비	탐방객 통제	홍보
1,393	24,368	21,552	9,409	962

주: 근무형태·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 재난구조대 및 안전관리반 실적 구분 곤란
자료: 환경부

둘째, 환경부는 채용 지연 등으로 인해 5대강 지킴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조건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지킴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5대강 지킴이 사업은 5대강 본류·지류 등 약 5,259km에 이르는 수계를 대상으로 불법 낚시·어로, 쓰레기 투기, 차량 세차 등 환경오염행위를 감시·계도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통한 정화활동을 수행하며, 하천변 불법경작지 및 불법시설물 등 수계 현황조사, 현장체험 등을 통해 지역주민 교육·홍보활동을 수행하는 환경지킴이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5대강 지킴이 세부 활동내용]

역할	세부 활동내역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 상수원보호구역 등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불법낚시행위 신고·계도 ○ 불법 어로행위(투망, 무허가 다슬기채취 등) 신고·계도 ○ 낚시꾼 쓰레기 투기행위 감시 및 방치쓰레기 수거·계도 ○ 하천에서의 차량 세차행위 신고·계도 등
정화활동	○ 평시 하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 장마 후 지자체의 하천변 쓰레기 수거 협조 등
수계 현황조사	○ 하천변 불법경작지 현황조사 ○ 불법시설물(낚시꾼 주거용 시설 등) 현황조사 ○ 방치쓰레기(하천변 농업폐자재 등) 현황조사 등
지역주민 교육·홍보	○ 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 현장체험 교육 (강의 역사, 수질 및 생태여건 등) 실시
상·하류간 이해증진	○ 상·하류 이해증진 및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상·하류가 같이 하는 생태탐사활동 참가 등
기타	○ 기타 해당 수계 보전을 위하여 유역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환경부

5대강 지킴이 사업은 '06년 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 후, '07년부터 정부 일자리창출 사업에 포함되어 5대강 수계로 확대되었으며, 유역주민의 수질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환경부의 수질오염사고 감시·예방체계와 연동된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07년 이후 매년 평균 167명 규모의 인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등 지킴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19년의 경우에도 한강유역청 24명, 낙동강유역청 25명, 금강유역청 44명, 영산강유역청 37명, 대구유역청 37명 등 총 167명의 인원을 모두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5대강 지킴이 채용 계획 및 실적]

(단위: 명)

구분	활동구간	2019년		2020년 계획	비 고
		계획	실적		
계		167	167	385	
한강청	팔당권역 남한강권역 북한강권역	24	24	35	
낙동강청	낙동강하류	25	25	76	
금강청	용담호권역 대청호권역 금강상류·하류	44	44	72	
영산강청	영산강권역 섬진강권역	37	37	38	
대구청	낙동강상류·중류 금호강권역	37	37	84	
원주청	남한강권역 북한강권역 동해안권역	-	-	50	'20년 신규
전북청	용담호권역 섬진강권역	-	-	30	'20년 신규

자료: 환경부

하지만 5대강 지킴이 사업의 분기별 인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건비 예산 29억 1,600만원 중 2억 600만원(7.1%)이 '19년 1분기에 집행되었으며, 특히 낙동강유역청과 영산강유역청 및 대구유역청의 경우, 1분기 집행률이 각각 4.4%, 2.2%, 0%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분기별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110-04목)	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916	2,828	206	828	891	903
한강	441	399	54	126	127	92
낙동강	431	431	19	132	133	147
금강	801	795	119	233	237	206
영산강	632	609	14	189	198	208
대구	611	594	0	148	196	250

자료: 환경부

이는 5대강 지킴이 채용절차가 대체적으로 1~2월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채용이 이루어진 3~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건비가 집행되는 측면도 있으며, 순찰 구간별로 근무자를 각각 채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근 거주민만이 지원하게 되는 5대강 지킴이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채용이 지연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참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4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0년부터는 동 사업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사업에 포함되면서 채용규모가 385명으로 크게 증원되었으나,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채용

4) 환경부는 2020년부터 크게 증원된 인력을 통해 기존에 하천 본류를 중심으로 하던 활동범위를 주요 지류·지천과 댐 주변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을 비롯한 지킴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특정 지역 내에 한정된 주민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모두 채용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5대강 지킴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조건을 완화하는 등 채용조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지연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재재이월이 발생한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시침수대응사업,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면단위하수처리시설 확충,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총 8개 세부사업(48개 내역사업)에서 지자체의 보조금 재재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재재이월이 발생한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에 지자체의 실집행 단계에서 발생한 차년도 이월액 675억 600만원 중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9년으로 재이월된 예산은 601억 700만원이며, 특히 재이월된 예산 중 358억 1,700만원은 2020년으로 재재이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¹⁾

[2019회계연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재재이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2018년 재이월액	2019년 재재이월액
	교부액	차년도 이월액		
하수처리장 확충	22,964	22,081	22,006	21,145
하수관로정비	32,162	28,793	26,278	8,183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7,749	7,213	6,123	4,300
도시침수대응	6,803	6,803	3,325	335
하수처리수 재이용	1,000	868	868	735
면단위하수처리시설	1,000	1,000	947	559
공공폐수처리시설	500	248	60	6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500	500	500	500
합계	72,678	67,506	60,107	35,817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2019년 재재이월액은 2017년에 발생한 이월액 중 2020년으로 재재이월된 예산을 의미한다.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의 사업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국고보조금 재재이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하수처리장의 신설·개량을 위한 공사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하는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²⁾을 살펴보면, 연례적인 실집행률 저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8년 3,423억 9,400만원에서 2019년 2,654억 8,800만원, 2020년 2,232억 1,500만원으로 동 사업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³⁾ 사업진도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내역을 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 기간단축 및 집행점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다.

[2017~2019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 ¹⁾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하수 처리장 확충	2017	248,693	248,693	186,850	435,543	277,905	147,929	9,709	63.8
	2018	336,187	337,387	147,929	485,316	227,352	249,798	8,166	46.8
	2019	260,481	260,331	249,798	510,129	358,636	147,730	3,763	70.3

주: 1) 2019년은 추경예산 기준

자료: 환경부

그러나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시의회의 문제제기로 인해 2017년 교부된 80억 9,200만원이 전액 재재이월된 포항시 사례,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 처리방식 및 설치 위치 변경 후 재설계 추진,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17년 교부액 34억 4,000만원 중 28억 1,900만원

2)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4

3)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의 최근 4년간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하수처리장 확충	253,701	342,394	265,488	223,215

이 재재이월된 고양시 사례 등 12개 지자체에서 총 211억 4,500만원이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2020년으로 재재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019회계연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재재이월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하수처리장 확충	경기 고양시	2017	3,440	0	3,440	12	3,428	0	0.3
		2018	0 (-)	3,428 (3,428)	3,428 (3,428)	0	3,428 (3,428)	0	0.0 (0.0)
		2019	0 (-)	3,428 (3,428)	3,428 (3,428)	609 (606)	2,819 (2,819)	0	17.8 (17.8)
	경기 구리시	2017	666	8,132	8,798	213	8,585	0	2.4
		2018	0 (-)	8,585 (666)	8,585 (666)	0 (0)	8,585 (666)	0	0.0 (0.0)
		2019	0 (-)	8,585 (666)	8,585 (666)	0 (-)	8,585 (666)	0	0.0 (0.0)
	경기 양주시	2017	500	0	500	0	500	0	0.0
		2018	0 (-)	500 (500)	500 (500)	0 (-)	500 (500)	0	0.0 (0.0)
		2019	0 (-)	500 (500)	500 (500)	135 (135)	365 (365)	0	27.0 (27.0)
	경기 양평군	2017	886	486	1,372	183	1,189	0	13.4
		2018	0 (-)	1,189 (886)	1,189 (886)	79 (-)	1,109 (886)	0	6.7
		2019	0 (-)	1,109 (886)	1,109 (886)	7 (-)	1,102 (886)	0	0.6 (0.0)
	경기 오산시	2017	500	0	500	0	500	0	0.0
		2018	0 (-)	500 (500)	500 (500)	0 (-)	500 (500)	0	0.0 (0.0)
		2019	0 (-)	500 (500)	500 (500)	0 (-)	500 (500)	0	0.0 (0.0)
	경기 용인시	2017	500	0	500	52	448	0	10.3
		2018	265 (-)	448 (448)	713 (448)	20 (20)	693 (428)	0	2.8 (4.5)
		2019	1,024 (-)	693 (428)	1,717 (428)	117 (117)	1,600 (311)	0	6.8 (27.3)
	경기 용인시	2017	500	0	500	377	123	0	75.3
		2018	0 (-)	123 (123)	123 (123)	0 (-)	123 (123)	0	0.0 (0.0)
		2019	0 (-)	123 (123)	123 (123)	0 (-)	123 (123)	0	0.0 (0.0)
	강원 인제군	2017	500	0	500	442	58	0	88.4
		2018	300 (-)	58 (58)	358 (58)	55 (55)	303 (3)	0	15.4 (94.8)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강원 춘천시	2019	0 (-)	303 (3)	303 (3)	0 (-)	303 (3)	0	0.0 (0.0)
		2017	1,364	0	1,364	0	1,364	0	0.0
		2018	0 (-)	1,364 (1,364)	1,364 (1,364)	0 (-)	1,364 (1,364)	0	0.0 (0.0)
	충북 제천시	2019	0 (-)	1,364 (1,364)	1,364 (1,364)	0 (-)	1,364 (1,364)	0	0.0 (0.0)
		2017	2,505	408	2,913	0	2,912	0	0.0
		2018	751 (-)	2,912 (2,505)	3,663 (2,505)	53 (-)	3,610 (2,505)	0	1.4 (0.0)
	충북 청주시	2019	0 (-)	3,610 (2,505)	3,610 (2,505)	49 (-)	3,561 (2,505)	0	1.4 (0.0)
		2017	3,011	8,433	11,444	0	11,444	0	0.0
		2018	0 (-)	11,444 (3,011)	11,444 (3,011)	0	11,444 (3,011)	0	0.0 (0.0)
	충남 당진시	2019	0 (-)	11,444 (3,011)	11,444 (3,011)	500 (-)	10,944 (3,011)	0	4.4 (0.0)
		2017	500	0	500	0	500	0	0.0
		2018	506 (-)	500 (500)	1,006 (500)	0 (-)	1,006 (500)	0	0.0 (0.0)
	경북 포항시	2019	0 (-)	1,006 (500)	1,006 (500)	0 (-)	1,006 (500)	0	0.0 (0.0)
		2017	8,092	500	8,592	0	8,592	0	0.0
		2018	0 (-)	8,592 (8,092)	8,592 (8,092)	0 (-)	8,592 (8,092)	0	0.0 (0.0)
		2019	0 (-)	8,592 (8,092)	8,592 (8,092)	0 (-)	8,592 (8,092)	0	0.0 (0.0)

주: ()의 숫자는 2017년 이월된 예산의 연도별 실집행액 및 실집행률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사업⁴⁾의 경우,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 내 예산내역 조정 및 집행점검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자체의 실집행률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부진하였던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의 비율이 64.9%에서 32.5%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1

5)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신설은 30~70%, 교체 및 개보수는 20~50%이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실집행 부진 지자체 현황 비교]

(단위: 개, %)

구 분	전년도 실집행 부진 지자체 수	당해연도 실집행률			실집행 부진 지자체 비율
		0% 초과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2018	37	5	19	13	64.9



2019	40	3	10	26	32.5
------	----	---	----	----	------

주: 2019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중 1개의 종료사업이 존재하여 지자체 수 합계에 차이가 발생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그러나 용역 입찰·계약절차 이행 및 채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재재이월이 발생한 지자체가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4개 지자체에서 2019년 기준 12개 지자체로 증가하였으며, 재재이월액 규모 또한 53억 2,700만원에서 81억 8,300만원으로 28억 5,600만원 증가(53.6%)하는 등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는 재재이월 문제가 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9회계연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재재이월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하수관로 정비	대전 대전시 (노후관로)	2017	1,500	0	1,500	124	1,376	0	8.2
		2018	500 (-)	1,376 (1,376)	1,876 (1,376)	196 (196)	1,680 (1,180)	0	10.4 (14.2)
		2019	726 (-)	1,680 (1,180)	2,406 (1,180)	449 (449)	1,956 (731)	0	18.7 (38.1)
	대전 대전시 (12공단)	2017	500	0	500	355	145	0	71.0
		2018	1,500 (-)	145 (145)	1,645 (145)	0 (-)	1,645 (145)	0	0.0 (0.0)
		2019	210 (-)	1,645 (145)	1,855 (145)	115 (115)	1,740 (30)	0	6.2 (79.3)
	경기 고양시	2017	1,000	0	1,000	464	536	0	46.4
		2018	0 (-)	536 (536)	536 (536)	135 (135)	401 (401)	0	25.2 (25.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경기 동두천시	2019	1,971 (-)	401 (401)	2,372 (401)	41 (41)	2,331 (360)	0	1.7 (10.2)
		2017	8,013	2,705	10,718	64	10,653	0	0.6
		2018	0 (-)	10,653 (8,013)	10,653 (8,013)	4,474 (1,834)	6,179 (6,179)	0	42.0 (22.9)
	경기 부천시	2019	0 (-)	6,179 (6,179)	6,179 (6,179)	3,392 (3,392)	2,787 (2,787)	0	54.9 (54.9)
		2017	2,000	0	2,000	85	1,915	0	4.2
		2018	787 (-)	1,915 (1,915)	2,702 (1,915)	75 (75)	2,627 (1,840)	0	2.8 (3.9)
	경기 포천시	2019	0 (-)	2,627 (1,840)	2,627 (1,840)	1,217 (1,217)	1,410 (623)	0	46.3 (66.1)
		2017	6,431	169	6,600	241	6,359	0	3.7
		2018	1,000 (-)	6,359 (6,359)	7,359 (6,359)	1,515 (1,515)	5,844 (4,844)	0	20.6 (23.8)
	충남 논산시	2019	129 (-)	5,844 (4,537)	5,973 (4,537)	4,537 (4,537)	1,436 (307)	0	76.0 (93.7)
		2017	5,600	96	5,696	594	5,102	0	10.4
		2018	0 (-)	5,102 (5,102)	5,102 (5,102)	0 (-)	5,102 (5,102)	0	0.0 (0.0)
	충남 당진시	2019	395 (-)	5,102 (5,102)	5,497 (5,102)	4,723 (4,723)	774 (379)	0	85.9 (92.6)
		2017	500	0	500	0	500	0	0.0
		2018	497 (-)	500 (500)	997 (500)	0 (-)	997 (500)	0	0.0 (0.0)
	충남 부여군	2019	112 (-)	997 (500)	1,109 (500)	5 (5)	1,104 (495)	0	0.5 (1.0)
		2017	1,000	0	1,000	90	910	0	9.0
		2018	462 (-)	910 (910)	1,372 (910)	0	1,372 (910)	0	0.0 (0.0)
	전북 완주군	2019	520 (-)	1,372 (910)	1,892 (910)	0	1,892 (910)	0	0.0 (0.0)
		2017	2,784	2,311	5,095	3,554	1,541	0	69.8
		2018	1,000 (-)	1,541 (1,541)	2,541 (1,541)	229 (229)	2,312 (1,312)	0	9.0 (14.9)
	전북 전주시	2019	429 (-)	2,312 (1,312)	2,741 (1,312)	507 (507)	2,234 (805)	0	18.5 (38.6)
		2017	1,000 (-)	0	1,000	0	1,000	0	0.0
		2018	1,500 (-)	1,000 (1,000)	2,500 (1,000)	176 (176)	2,324 (824)	0	7.0 (17.6)
		2019	1008 (-)	2,324 (824)	3,332 (824)	303 (303)	3,029 (522)	0	9.1 (36.8)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전남 완도군	2017	834	364	1,198	4	1,194	0	0.4
		2018	6 (-)	1,194 (834)	1,200 (834)	549 (189)	651 (645)	0	45.7 (22.7)
		2019	0 (-)	651 (645)	651 (645)	561 (561)	90 (84)	0	86.2 (87.0)
	경남 진주시	2017	1,000	0	1,000	438	562	0	43.8
		2018	0 (-)	562 (562)	562 (562)	0	562 (562)	0	0.0 (0.0)
		2019	3,952 (-)	562 (562)	4,514	412 (412)	4,102 (150)	0	9.1 (73.3)

주: (-)의 숫자는 2017년 이월된 예산의 연도별 실집행액 및 실집행률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또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⁶⁾ 중 총 8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변경과 설계 지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보상 관련 지역주민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43억 원의 재재이월이 발생하였다.

[2019회계연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재재이월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광주 광역시 (구소산정)	2017	1,763	176	1,939	84	1,855	0	4.4
		2018	216 (-)	1,855 (1,736)	2,071 (1,736)	0 (-)	2,071 (1,736)	0	0.0 (0.0)
		2019	0 (-)	2,071 (1,736)	2,071 (1,736)	625 (533)	1,446 (1,230)	0	30.2 (30.7)
	광주 광역시 (두산상정 외 3)	2017	1,845	220	2,065	97	1,968	0	4.7
		2018	738 (-)	1,968 (1,845)	2,706 (1,845)	834 (712)	1,871 (1,133)	0	30.8 (38.6)
		2019	0 (-)	1,871 (1,133)	1,871 (1,133)	710 (710)	1,161 (423)	0	37.9 (62.7)
	광주 광역시 (충효동 평촌)	2017	750	258	1,008	0	1,008	0	0.0
		2018	0 (-)	1,008 (750)	1,008 (750)	51 (-)	957 (750)	0	5.0 (0.0)
		2019	0 (-)	957 (750)	957 (750)	389 (182)	568 (568)	0	40.6 (24.3)

6)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경기 안성시 (평장)	2017	293	768	1,061	58	1,003	0	5.5
		2018	137 (-)	1,003 (293)	1,140 (293)	0 (-)	1,140 (293)	0	0.0 (0.0)
		2019	546 (-)	1,140 (293)	1,686 (293)	904 (195)	782 (98)	0	53.6 (66.6)
	경기 양평군 (양현)	2017	661	240	901	0	901	0	0.0
		2018	0 (-)	901 (661)	901 (661)	129 (-)	772 (661)	0	14.3 (0.0)
		2019	18 (-)	772 (661)	790 (661)	131 (20)	659 (641)	0	16.6 (3.0)
	강원 원주시 (구룡사)	2017	237	1,630	1,867	609	1,258	0	32.6
		2018	94 (-)	1,258 (237)	1,352 (237)	351 (-)	1,001 (237)	0	26.0 (0.0)
		2019	7 (-)	1,001 (237)	1,008 (237)	458 (-)	550 (237)	0	45.4 (0.0)
	강원 인제군 (어두원)	2017	156	0	156	122	34	0	78.4
		2018	428 (-)	34 (34)	462 (34)	1 (1)	461 (33)	0	0.2 (2.8)
		2019	0 (-)	461 (33)	461 (33)	0 (-)	461 (33)	0	0.0 (0.0)
	충북 진천군 (도하)	2017	595	126	721	75	647	0	10.4
		2018	0 (-)	647 (595)	647 (595)	115 (63)	532 (532)	0	17.7 (10.6)
		2019	167 (-)	532 (532)	699 (532)	98 (98)	601 (434)	0	14.0 (66.6)
	충남 부여군 (신안)	2017	608	278	886	22	864	0	2.5
		2018	406 (-)	864 (608)	1,270 (608)	0 (-)	1,270 (608)	0	0.0 (0.0)
		2019	0 (-)	1,270 (608)	1,270 (608)	0	1,270 (608)	0	0.0 (0.0)
	전남 장성군 (남면 지구)	2017	841	1,308	2,149	1,483	427	238	69.0
		2018	225 (-)	427 (427)	652 (427)	314 (314)	338 (113)	0	48.1 (73.5)
		2019	85 (-)	338 (113)	423 (113)	85 (85)	338 (28)	0	20.1 (75.2)

주: ()의 숫자는 2017년 이월된 예산의 연도별 실집행액 및 실집행률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⁷⁾는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재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재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보조금 중 일부는 2017년 교부된 이후 2020년까지 재재이월하여 집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재재이월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재재이월 단계 전에 개별 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재재이월액 규모가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316억 5,000만원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358억 1,7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에도 보조사업의 재재이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8) 다만,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는 공사나 제조 등 완료되기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연도별 재재이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재재이월액 ¹⁾	2019년 재재이월액 ²⁾
각 연도별 재재이월액	31,650	35,817
재재이월 발생 사업 수	9개	8개

주: 1)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9년으로 재재이월이 발생한 사업 및 예산 기준

2)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0년으로 재재이월이 발생한 사업 및 예산 기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환경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지자체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등), 지방비 부담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등 교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및 재재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환경부의 지역거점조성지원 사업¹⁾은 「산업입지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를 건설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보조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고보조비율은 100%이다.

동 사업은 본래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나 2018년 6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현액 397억 4,1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지역거점조성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거점조성지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39,741	39,741	0	0	39,741	39,741	100.0	0	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지자체 단위에 기 지급된 지역거점조성 지원 사업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단지 계획 축소 또는 변경 등을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지방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비용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기업 입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연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039-301

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68.7%, 57.3%, 44.7%로 매년 실집행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07억 5,400만원 중 30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5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히 2019년 본예산 편성 없이 2018년도에 지급되었던 국비가 이월된 사업까지 고려할 경우, 이월액 규모는 400억 1,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16~2019년 지역거점조성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보조사업자 및 민간대행자						
	예산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6	90,740	90,740	90,740	31,047	121,787	83,709	68.7	37,055	1,022
2017	92,594	92,594	92,594	37,055	129,649	74,324	57.3	53,160	2,165
2018	58,090	58,090	58,090	39,531	97,621	43,610	44.7	52,643	1,368
2019	39,741	39,741	39,741	21,013	60,754	30,217	49.7	30,526	11

자료: 환경부

2019년 환경부는 8개 시도의 2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도 건설비용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 경기도, 충북, 경북, 경남 등 실집행이 부진한 4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406억 4,800만원 중에서 129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평균 실집행률은 약 31.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회계연도 지역거점조성사업 지자체별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경기	2,847	2,847	2,847	2,847	2,319	5,166	787	4,379	0	15.2
강원	6,366	6,366	6,366	6,366	376	6,742	5,310	1,432	0	78.8
충북	12,869	12,869	12,869	12,869	9,478	22,347	5,996	16,347	4	26.8
충남	2,464	2,464	2,464	2,464	4,308	6,772	5,572	1,200	0	82.3
전북	3,400	3,400	3,400	3,400	398	3,798	3,609	189	0	95.0
전남	2,500	2,500	2,500	2,500	294	2,794	2,787	0	7	99.7
경북	5,795	5,795	5,795	5,795	2,510	8,305	4,391	3,914	0	52.9
경남	3,500	3,500	3,500	3,500	1,330	4,830	1,765	3,065	0	36.5
집행부진 지자체 소계	25,011	25,011	25,011	25,011	15,637	40,648	12,939	27,705	4	31.8
합계	39,741	39,741	39,741	39,741	21,013	60,754	30,217	30,526	11	49.7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지연·변경·취소, 행정절차 및 설계
용역 지연,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해당 지
자체의 실적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실집행 부진(70% 미만) 사유]

시·도	산업단지명	실집행률 (%)	집행부진 사유
경기	평택 드림테크	60.0	설계완료 후 '19년은 전액 보상비 집행 중으로 보상협의 등 기간소요
	연천 연천BIX(은통산단)	0.2	설계용역 착수 후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사업인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공사착공('20.4월) 후 집행 예정
충북	청주 오창테크노	3.9	산단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 미확보로 지연
	괴산 괴산첨단	22.6	입주업체 용수량 증가에 따른 사업내용(관경 및 배수량) 변경 검토 중
	음성 음성성본, 금왕테크노	31.0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협의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지연
	음성 맹동인곡	10.0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협의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지연
	청주 남청주현도일반산단	0.0	설계 중으로 공사 착공 후 본격 집행예정
	제천 제천제3	0.0	사업계획 조정예정으로 지방비 우선집행
	옥천 제2의료	38.2	시설공사 착공('19.4.) 후 정상추진후, 지방비 우선집행 중
충남	보령 보령웅천	67.3	공공측량성과심사 진행 중으로 '20.6월 사업 완료전망
전북	완주 완주테크노2	67.8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년 상반기 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추진 계획
경북	고령 고령월성	12.0	사업시행자 자금부족으로 부지조성 공사중단 중으로, 대표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협의 중
	경주 검단	22.2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등 공사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경남	창녕 창녕영남	36.5	실시설계 협의 지연으로 인해 '19.10 설계완료 및 '19.11월 공사착공으로 집행저조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에 따라 202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방이양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 바,²⁾ 향후 동 사업과 유사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바목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등에 따라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다.

한 목적의 예산 편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 지급된 국비와 이월액 등 관련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산업단지 계획의 축소 또는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2036년까지로 계획된 4대강 부채 상환기한 재검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V」 pp.43
2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 설비지원 연례적 집행 부진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V」 pp.49
3	국립공원공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방법 마련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V」 pp.53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V」 pp.58
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개별 사업 비목에 인건비 편성 지양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V」 pp.69
6	한국상하수도협회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연례적 불용 및 사고이월 지양을 위한 노력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V」 pp.71
7	R&D 부분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사업에 이용되는 기상청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의 활용 가능성 검토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V」 pp.75

고용노동부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63억 2,200만원이며, 2,427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6.6%인 1,615억 7,800만원을 수납하고 806억 6,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5억 4,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5,961	85,961	85,961	213,122	141,207	71,368	546	66.3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61	361	361	1,168	157	1,011	0	13.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0	0	0	28,500	20,214	8,285	0	70.9
합계	86,322	86,322	86,322	242,790	161,578	80,664	546	66.6

자료: 고용노동부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조 3,019억 5,000만원이며, 이 중 97.5%인 7조 1,170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64억 6,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965,760	6,993,037	7,094,127	6,911,808	3,199	179,120	97.4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76,865	110,203	110,203	110,193	0	10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7,620	97,620	97,620	95,072	2,209	339	97.4
합계	7,140,245	7,200,860	7,301,950	7,117,073	5,408	176,469	97.5

자료: 고용노동부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34조 4,916억 7,700만원이며, 50조 2,846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1%인 44조 8,150억 3,600만원을 수납하고 5조 2,361억 6,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334억 8,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17,065,909	17,065,909	17,065,909	25,109,686	23,508,841	1,541,659	59,186	93.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5,113,770	15,113,770	15,113,770	18,396,034	16,785,697	1,501,424	108,913	9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075,704	1,075,704	1,075,704	1,875,066	1,852,164	20,623	2,279	98.8
임금채권보장기금	876,900	876,900	876,900	3,271,782	1,112,448	2,103,041	56,293	34.0
근로복지진흥기금	359,394	359,394	359,394	1,632,116	1,555,886	69,421	6,809	95.3
합계	34,491,677	34,491,677	34,491,677	50,284,684	44,815,036	5,236,168	233,480	89.1

자료: 고용노동부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정 계획현액은 34조 4,982억 5,600만원이며, 이 중 83.0%인 28조 6,437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73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17,065,909	17,065,909	17,072,488	15,635,777	967	623,958	91.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5,113,770	15,113,770	15,113,770	10,657,638	0	5,998	7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075,704	1,075,704	1,075,704	1,182,164	0	699	109.9
임금채권보장기금	876,900	876,900	876,900	827,130	0	766	94.3
근로복지진흥기금	359,394	359,394	359,394	341,068	0	5,961	94.9
합계	34,491,677	34,491,677	34,498,256	28,643,777	967	637,382	83.0

자료: 고용노동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7,726억 4,400만원(16.7%)이 감소한 28조 8,05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1,129억 3,300만원(4.0%)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8,676	86,322	86,322	161,578	75,256	92,902
기금	27,623,746	34,491,677	34,491,677	28,643,777	△5,847,900	1,020,031
합계	27,692,422	34,577,999	34,577,999	28,805,355	△5,772,644	1,112,933

자료: 고용노동부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155억 2,600만원 (2.4%)이 감소한 28조 5,121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조 4,501억 7,900만원(18.5%)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606,478	6,984,463	7,045,078	6,961,312	△83,766	1,354,834
기금	18,455,503	19,731,840	22,182,608	21,550,848	△631,760	3,095,345
합계	24,061,981	26,716,303	29,227,686	28,512,160	△715,526	4,450,179

자료: 고용노동부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고용노동부의 자산은 38조 7,461억 8,000만원, 부채는 24조 4,994억 6,400만원으로 순자산은 14조 2,467억 1,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5조 6,845억 5,300만원, 투자자산 30조 935억 9,100만원, 일반유형자산 2조 8,895억 5,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4,220억 6,600만원 (3.8%) 증가하였다. 이는 단기투자증권 감소 등에 따른 유동자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투자증권 증가에 따른 투자자산 1조 9,546억 5,000만원 증가, 토지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631억 1,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750억 8,5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4조 2,747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조 915억 3,800만원(20.0%) 증가하였다. 이는 고용보험 법정적립금 및 산재보험 급여준비금 등 보험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4조 170억 4,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8,746,180	37,324,114	1,422,066	3.8
Ⅰ. 유동자산	5,684,553	6,293,991	△609,438	△9.7
Ⅱ. 투자자산	30,093,591	28,138,941	1,954,650	6.9
Ⅲ. 일반유형자산	2,889,554	2,826,436	63,118	2.2
Ⅳ. 무형자산	12,096	9,974	2,122	21.3
Ⅴ. 기타비유동자산	66,387	54,772	11,615	21.2
부 채	24,499,464	20,407,926	4,091,538	20.0
Ⅰ. 유동부채	175,085	108,841	66,244	60.9
Ⅱ. 장기차입부채	15,484	11,891	3,593	30.2
Ⅲ. 장기충당부채	34,183	29,524	4,659	15.8
Ⅳ. 기타비유동부채	24,274,712	20,257,671	4,017,041	19.8
순 자 산	14,246,717	16,916,188	△2,669,471	△15.8
Ⅰ. 기본순자산	1,643,105	1,643,105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9,295,486	13,499,899	△4,204,413	△31.1
Ⅲ. 순자산 조정	3,308,126	1,773,184	1,534,942	86.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1조 2,715억 1,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1조 291억 6,6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781억 3,800만원, 비배분비용 4,519억 2,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734억 9,500만원, 비배분수익 8,087억 4,8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0조 2,054억 7,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조 9,005억 2,100만원(18.4%) 증가한 31조 4,769억 8,800만원이며, 이는 사업비 및 법정적립금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4조 8,413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16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고용창출및훈련 프로그램(18조 7,653억 4,700만원)과 산재보험 프로그램(6조 3,186억 4,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961억 5,700만원과 경비 6,819억 8,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3,018억 800만원과 자산처분손실 42억 6,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6,167억 4,600만원과 이자수익 452억 8,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환수익 등은 사회보험수익 19조 482억 4,900만원, 부담금수익 9,726억 6,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0,755,672	25,914,372	4,841,300	18.7
가. 프로그램 총원가	31,029,166	26,073,332	4,955,834	19.0
나. 프로그램 수익	273,495	158,960	114,535	72.1
II. 관리운영비	1,078,138	1,077,646	492	0.0
III. 비배분비용	451,926	350,932	100,994	28.8
IV. 비배분수익	808,748	766,482	42,266	5.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1,476,988	26,576,467	4,900,521	18.4
VI. 비교환수익 등	20,205,473	18,986,644	1,218,829	6.4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1,271,515	7,589,823	3,681,692	48.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19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6조 9,161억 8,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4조 2,467억 1,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조 6,694억 7,100만원(15.8%)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1조 2,715억 1,5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조 5,349억 4,2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7조 671억 2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체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7조 2,287억 6,6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616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조 4,706억 4,9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642억 9,2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6,916,188	20,012,008	△3,095,820	△15.5
II. 재정운영결과	11,271,515	7,589,823	3,681,692	48.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067,102	5,744,514	1,322,588	23.0
IV. 조정항목	1,534,942	△1,250,512	2,785,454	222.7
V. 기말순자산(I-II+III+IV)	14,246,717	16,916,188	△2,669,471	△15.8

자료: 고용노동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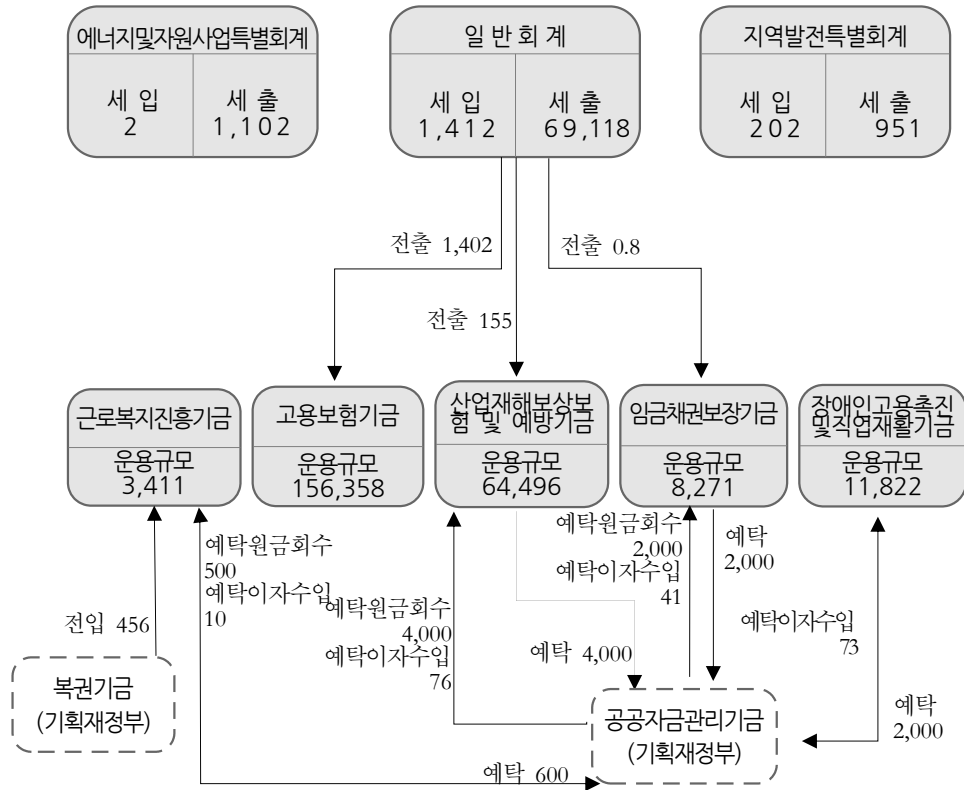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1,402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155억원 전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0.8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4,000억원, 예탁이자수입 76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000억원을 예탁하였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2,000억원, 예탁이자수입 41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000억원을 예탁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이자수입 73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000억원을 예탁하였다. 한편,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456억원을 전입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500억원, 예탁이자수입 10억원을 받았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등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지원인원을 축소함에 따라 각각 413억원이 감액(4,122억원→3,710억원), 438억원이 감액(2,019억원→1,582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②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등이 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32억원이 증액(95억원→127억원)되었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21억원이 증액(747억원→769억원)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②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등이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2020년도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3)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② 근로자건강보호 사업 등이 있다.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2,162억원이 증액(8,722억원 → 1조 885억원)되었다. 근로자건강보호 사업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지원을 위해 38억원이 증액(신규 내역사업)되었다.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8.

고용노동부는 ①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 강화 및 청년자산형성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② 고령화에 대응한 **신중년 전직 지원 강화** 및 재취업 유도, ③ 기업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해외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역량 제고, ④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저변확대**, ⑤ 신기술·고속련 고급훈련 및 선도인력 양성 과정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를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고용장려금 일부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낮은 지원수준,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원수준, 지원 범위 조정 및 제도간 정합성 등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정책 수요가 높아 신규 신청 접수 중단 및 조기 종료 등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저임금 청년들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정 지원수준 설정에 따른 정책수요 조정을 통해 사업이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조 877억원 적자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하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적정 수준으로 적립배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지출 규모 계획시 중장기적으로 사업 효과성 및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출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2019년 추경을 통해 목표 인원이 증가(+2,500명)하였으나 교부액 대비 실집행액은 91.4%를 기록하여 집행수준이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사업에 참여한 60개 자치단체 중 11곳의 실집행률이 70%를 하회하였다. 또한, 2019년 신규 내역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인원의 참여 분야가 사회서비스 등에 편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집행률을 개선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2019년 고용장려금 주요 사업 결산 분석

고용노동부는 신규 고용 창출 및 기존 고용 유지 등 경제 전체의 고용량 증대와 실업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고용노동부는 신규 근로자 고용(고용창출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고용안정장려금) 및 감원 방지(고용유지장려금) 목적의 고용장려금 제도를 중심으로 청년과 장년·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고용장려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기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체계]

종류	사업명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019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19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2019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사업 집행 결과,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및 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의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의 경우 높은 정책수요로 인해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신규 지원 중단(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추경 이후 신규 신청 재개(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연중 안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집행이 저조한 고용장려금 사업과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1-1. 집행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고용장려금 사업 제도 개선 등 필요

가. 현 황

고용창출장려금 사업¹⁾은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내역사업²⁾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2019년도 계획현액 1,707억 9,300만원 중 60.1%인 1,02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681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³⁾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2019년도 계획현액 1,584억 7,500만원의 71.9%인 1,138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45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⁴⁾은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 및 고령자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6-350의 내역사업

2)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내역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2개 사업이다. 고용창출장려금 내역사업의 지원유형은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② 고용촉진장려금, ③ 지역·성장 산업고용 지원, ④ 전문인력 고용지원, 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⑥ 장년고용 지원(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의 총 6가지이다.

3)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0

4)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7-350

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가 실시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2019년도 계획현액 1,202억 3,800만원 중 98.6%인 1,185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용장려금 주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당초	수정					
고용창출장려금	196,208	170,793	0	170,793	102,643	60.1	68,150
고용안정장려금	158,421	158,421	54	158,475	113,887	71.9	44,588
장년고용안정지원금	33,638	120,238	0	120,238	118,514	98.6	1,724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및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이 저조하므로 지원수준, 지원 범위 조정 및 제도간 정합성 등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지원유형)의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유형 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원유형의 집행률은 7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 예산 규모 기준 70.5%를 차지하는 내역사업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집행률은 62.2%에 불과하고, 다른 내역사업 중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5억원 규모의 내역조정을 함에 따라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4.5%이나,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은 81.5% 수준이다. ③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중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52억원 규모의 내역변경을 함에 따라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0%이나,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은 69.6% 수준이다.

[2019회계연도 고용장려금 주요 사업의 내역사업별(지원유형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당초	수정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34,746	39,046	0	0	39,046	38,492	98.6	55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17,626	13,326	0	0	13,326	5,448	40.9	7,878
국내복귀기업 지원	1,476	1,476	0	0	1,476	115	7.8	1,36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28,360	28,360	0	0	28,360	17,945	63.3	10,415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13,503	88,088	0	0	88,088	40,387	45.8	47,701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18,141	18,141	0	△2,500	15,641	14,776	94.5	859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10,950	10,950	0	0	10,950	9,912	90.5	1,038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17,671	17,671	54	2,500	20,225	19,712	97.5	5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111,659	111,659	0	0	111,659	69,487	62.2	42,173
장년고용안정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7,280	17,280	0	△5,248	12,032	12,032	100.0	0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4,536	24,721	0	0	24,721	23,284	94.2	1,43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 집행이 저조한 내역사업 중 일부는 최근 3년간 집행이 저조했고, 그 사유도 3년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지원유형 중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사업’은 2017년 제도개편으로 지원수준이 인하(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월 90→60만원)되면서 참여 유인이 저하되었다는 사유를 2017~2019년 불용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수준(월 60만원 한도 임금상승분의 80% 및 간접노동비 30만원 지원)보다 정규직 전환시 발생하는 간접노동비(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부담으로 사업주의 참여가 저조하여 당초계획 기준으로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5) 다만,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경우 2017년 60억원, 2018년 50억원, 2019년 25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계획변경하여 계획현액 기준 집행률은 2017년 67.8%에서 2018년 이후 95% 가까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일부 내역사업은 2017년 이후 제도개편 등에 따라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대규모기업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30만원)을 중단하였고, 지원수준(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에 비해 지원요건(육아휴직 등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 확인 후 지원금 지원)이 까다로워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7~2019년 집행 저조 고용장려금 주요 사업 집행률 및 집행률 저하 사유]

(단위: %)

사업명	2017	2018	2019	집행률 저하 사유
고용창출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30.7 (30.7)	34.9 (34.9)	40.9 (30.9)	2017년 이후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수준 하락, 신청유인 감소
국내복귀기업 지원	65.5 (65.5)	29.2 (29.2)	7.8 (7.8)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 등 조치 후 신규 채용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47.3 (47.3)	60.8 (60.8)	사업장의 신청 후 실제 지원까지 시차 발생 (최대 10개월) ¹⁾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08.6 (164.4)	68.1 (61.0)	45.8 (32.4)	취약계층 선별지원 강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대상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 중 청년층 수요 감소 등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67.8 (48.5)	94.9 (68.8)	94.5 (81.5)	지원 수준에 비해 정규직 전환시 발생하는 간접노동비 부담으로 사업주 참여 저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98.0 (108.7)	88.1 (77.9)	62.2 (62.2)	2018년 이후 대규모기업 지원 중단 및 지원 수준에 비해 지원 요건이 까다로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00.0 (235.7)	95.5 (95.5)	100.0 (69.6)	알바·단정자금 지원 확대에 동 지원금 지원대상 축소 (만55세 이상 근로자, 청소경비원 등)

주: 1)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동 사업에 따른 장려금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1.5개월, 승인 사업장의 평균 구인기간이 1.75개월로서, 사업장의 신청 후 실제 지원까지 평균 시차는 6.25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1. 괄호 안 수치는 당초 계획 대비 집행액의 비율임
2.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의 2017년 집행률은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행률임(국내복귀기업 포함 성장유망업종, 국내특화산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장려금 제도 간 지원 대상이 중복됨에 따라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지원 유형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을 이수한 인원의 비율이 55.9%에 달할 정도로 전체 지원 인원 중 청년층의 비중이 높았는데,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강화하면서, 2017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등에 따라 취약계층 중 청년층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는 사업주가 다수의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 간의 상호 조정 규정을 두고 있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⁶⁾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고용장려금 제도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⁷⁾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신규고용 청년근로자 증가 1인당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므로 타 장려금에 비해 지원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들은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타 고용장려금에 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고용창출장려금 각 지원유형은

6) 고용유지지원금(코드: 고용보험기금 1045-350)이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1/2~3/4)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증가근로자 또는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 360~1,200만원을 최대 1~3년간 지원하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신규고용 청년근로자 증가 1명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2019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 360~720만원	최대 2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 720~840만원	최대 1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연 480~1,20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1인당 연 120~480만원	최대 3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연 360~720만원	최대 2년
전문인력 고용지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	최대 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고용 청년근로자 증가 1명당 연 900만원	최대 3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유형 외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원금 상호 조정 규정을 적용받는 고용장려금 사업들은 그 사업의 주된 정책대상이 청년층이라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확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경우, 2018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⁸⁾을 도입하면서 제도 취지가 유사한 두 지원금 간 이중지원을 제한하고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도록 하였다.⁹⁾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도입으로 주 지원 대상인 만55세 이상 근로자 및 공동

8)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코드: 일반회계 1233-300)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④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2. (생략)

3.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주택 청소경비원 등의 지원이 축소되어 2018년 이후 집행이 저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일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2017년 개편에 따른 지원 수준 및 지원 범위 조정, 정책 대상의 지원 수요 하락, 제도 간 지원대상 중복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및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내역사업 중 일부 사업의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원인을 유형화¹⁰⁾하여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원수준, 지원범위 조정 및 제도간 정합성 등을 개선하며, 그럼에도 집행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고용장려금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¹¹⁾

10) ① 지원요건 또는 제도 참여에 따른 이행사항에 비해 낮은 지원수준, ② 제도 간 지원 대상 중복, ③ 근본적 정책 수요 부족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다만, 2017년 제도 개편의 배경이 고용장려금 사업간 지원수준이 상이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각 사업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요건은 유지하되 최대한 통일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통합·재설계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효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수준을 높이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수요 조정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

가. 현 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¹²⁾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사업주에게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2019년도 계획현액 8,897억 4,900만원 중 8,89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¹³⁾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일정 규모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하여 약정 기간 종료 시 적립금액 및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조 221억 3,200만원 중 1조 196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 8,100만원을 불용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타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나,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0조 단서에 따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2019회계연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용창출장려금	872,217	1,063,043	0	1,063,043	994,636	93.6	0	68,40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73,508	889,749	0	889,749	889,630	100.0	0	119
청년내일채움공제	997,132	997,132	25,000	1,022,132	1,019,633	99.8	18	2,481
(일반회계)	573,975	573,975	25,000	598,975	598,726	100.0	0	249
(고용보험기금)	423,157	423,157	0	423,157	420,907	99.5	18	2,232

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일반회계(청년 지원분), 고용보험기금(기업 지원분)에 각각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12)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6-350의 내역사업

13) 코드: 일반회계 1044-301, 고용보험기금 1061-350

나. 분석의견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높은 정책수요로 인하여 사업이 불안정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지원 수준 설정에 따른 정책수요 조정을 통해 사업이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추경으로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17년 저조한 집행 상황을 보였으나,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추경 및 2019년 집행 추세를 고려한 추경에도 불구하고 2018~2019년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7	0	4,500	0	0	4,500	1,425	31.7	0	3,075
2018	192,000	339,662	0	0	339,662	330,754	97.4	0	8,908
2019	673,508	889,749	0	0	889,749	889,630	100.0	0	119
2020.6	990,900	1,425,960	0	0	1,425,960	999,181	70.1	-	-

주: 2020년의 경우 6월 말 기준 집행실적임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집행률 변화는 동 제도가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2017년 추경으로 도입될 당시에는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주가 3명을 신규채용하면 1명에 대하여 연 667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8년 1월 1차 개편을 통해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고 지원 방식도 3명 이상 고용 시 비례지원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동년 3월 2차 개편을 통해 대상 업종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고 기업 규모도 중견기업으로 추가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1인당 연 9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같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승시키면서 동 사업의 2018년 집행률은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2017~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연도별 제도개편 사항]

구분	'17년 추경	1차 개편 (‘18.1.16.)	2차 개편 (‘18.3.15.)	3차 개편 (‘19.8.20.)
대상 업종	성장유망업종 본산업	성장유망업종 본산업 + 전후방산업	5인 이상 전 업종 (성장유망업종 등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 포함)	좌동
기업 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추가	좌동
지원 방식	3명 고용시 1명 지원	3명 이상 고용시 비례지원 (ex: 4인 고용시 1.33명)	·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모두 · 30~99인: 2인 고용시부터 모두 · 100인 이상: 3인 고용시부터 모두	· 30인 미만: 좌동 · 30~99인: 2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 100인 이상: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지원 금액	3년간 연 2,000만원 (1인당 667만원)	좌동	1인당 연 900만원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	좌동
한도	중소기업당 3명	기업당 90명 (2+1기준 30명)	좌동	기업당 30명
최소고용 유지기간	-	-	1개월	6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2019~2020년 동 사업은 높은 정책수요로 인하여 정책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5월경 신규 지원 목표인원(9.8만 명)을 달성하면서 5.11. 신규신청 접수를 중단하였고, 8.20. 3차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인원 및 지원 한도를 축소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서 다시 신규신청 접수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16. 이후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부터 지급하였다. 이에 2020년 1차 추경안 제출 직전(2020.2.28.) 본예산 9,909억원 중 47.8%(4,735억원)가 집행되는 등 예산이 급속도로 소진되면서 동년 1차 추경을 통해 예산규모를 증액하였다.

[2019~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운영 관련 특이사항]

시점	운영 관련 특이사항
2019.5.11.	· 신규 목표인원(9.8만명) 달성으로 신규 신청 접수 중단
2019.8.20.	· 추경 통한 추가 예산 확보(+1.2만명), 신규 신청 접수 재개 · 3차 제도개편 통해 지원 인원 및 지원 한도 축소 (30~99인: 2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 100인 이상: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2019.10.16.	· 10.16. 이후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2020년부터 지급
2020.2.28.	· 2.28. 기준 본예산 9,909억원 중 47.8%(4,735억원) 집행
2020.3.18.	·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4,351억원 증액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신규 도입된 2017년 저조한 집행 상황을 보였으나,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추경으로 3년형¹⁴⁾을 신설하였음에도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2019년에도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동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없고, 2~3년 근속시 청년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¹⁵⁾

[2017~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7	47,592	70,915	0	△2,314	68,601	31,434	45.8	0	37,167
2018	355,460	425,176	0	0	425,176	420,213	97.9	0	4,963
일반회계	184,820	216,400	0	0	216,400	215,828	99.7	0	572
고용보험기금	170,640	208,776	0	0	208,776	204,385	97.9	0	4,391
2019	997,132	997,132	0	25,000	1,022,132	1,019,633	99.5	18	2,481
일반회계	573,975	573,975	0	25,000	598,975	598,726	99.9	0	249
고용보험기금	423,157	423,157	0	0	423,157	420,907	99.5	18	2,232

주: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2017년까지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내에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함께 편성하다가 2018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분리 편성
자료: 고용노동부

14)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적립하여 3년 후 청년이 적립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15) 동 사업(2년형 기준) 참여시, 사업주는 5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 청년은 2년간 300만원 적립시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을 수령하므로 실질적으로 1,300만원(+이자)의 이득을 얻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에도 2018~2019년 지원 인원을 조기 달성하여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는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2018년의 경우 4.30. 목표인원(5만명)을 조기 달성하면서 접수를 중단하였고, 6.1.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서 6만명에 대하여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하였다. 2019년의 경우 6월 말과 8월 초 각각 3년형과 2년형의 목표 인원을 조기에 달성하여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였다.¹⁶⁾

[2018~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관련 특이사항]

시점	운영 관련 특이사항
2018.4.30.	· 목표인원(5만명) 달성으로 접수 중단
2018.6.1.	· 추경 통한 추가 예산 확보(+6만명), 신규 신청 접수 재개
2019.6.26.	· 3년형 신청 접수 마감
2019.8.9.	· 2년형 신청 접수 마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고용장려금 정책으로서 대국민 인지도가 높고, 지원 수준도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 사업은 2018년 이후 높은 정책수요로 인하여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다시 재개되는 등 일견 불안정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정부 정책이 연중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믿고 채용 및 구직을 진행하는 청년 및 사업주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이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저임금 청년들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대한 적정 지원수준 설정에 따른 정책수요 조정을 통해 사업이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6) 다만, 2019.7.1.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현 황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78조¹⁷⁾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수입은 보험료,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¹⁸⁾이고, 주요 지출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조 877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기금 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적자로 반전되면서 누적적립금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고, 2020년에도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초 계획	수정
총계	수입(A)	102,442	101,362	107,696	118,638	141,048	186,748
	지출(B)	88,672	94,607	115,778	139,515	154,986	219,349
	재정수지(A-B)	13,769	6,755	△8,082	△20,877	△13,939	△32,602
	누적적립금(C)	95,850	102,544	94,452	73,532	59,594	40,931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2016~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당초 계획 기준과 제3회 추경 확정 기준임

3. 총계에는 임금근로자 계정 외에 자영업자 계정의 수입·지출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7)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18)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기여금(피고용자분담금 + 고용주부담금)인데, 그 비중은 2019년 결산 기준 임금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경우 89.6%,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95.0% 수준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계정과 자영업자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되며, 각 계정은 다시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이하 ‘고안직능계정’)의 2개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된다.¹⁹⁾

2019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근로자 계정의 실업급여계정, 고안직능계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계정의 고안직능계정에서 7,142억원 적자, 실업급여계정에서 1조 3,802억원 적자가 각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기준 고안직능계정의 누적적립금은 3조 1,726억원이며, 실업급여계정의 누적적립금은 4조 1,374억원이다.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초	수정
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계정	수입(A)	31,995	29,795	31,193	33,752	38,869	53,569
		지출(B)	30,064	31,699	36,566	40,894	40,468	71,712
		재정수지(A-B)	1,931	△1,904	△5,374	△7,142	△1,600	△18,144
		누적적립금(C)	46,198	44,264	38,886	31,726	30,127	13,583
		적립금배율(C/B)	1.5	1.4	1.1	0.8	0.7	0.2
	실업급여 계정	수입(A)	70,340	71,476	76,407	84,756	102,034	133,034
		지출(B)	58,557	62,858	79,157	98,558	114,449	147,568
		재정수지(A-B)	11,783	8,618	△2,750	△13,802	△12,415	△14,534
		누적적립금(C)	49,371	57,957	55,201	41,374	28,959	26,841
		적립금배율(C/B)	0.8	0.9	0.7	0.4	0.3	0.2
자영 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계정	수입(A)	17	11	12	16	18	18
		지출(B)	13	12	13	20	14	14
		재정수지(A-B)	4	△1	△1	△4	4	4
		누적적립금(C)	74	73	73	69	73	73
		적립금배율(C/B)	5.7	6.1	5.6	3.5	5.2	5.3
	실업 급여 계정	수입(A)	91	79	85	115	127	127
		지출(B)	38	37	42	44	55	55
		재정수지(A-B)	52	42	43	71	72	72
		누적적립금(C)	207	249	292	363	434	434
		적립금배율(C/B)	5.4	6.7	7.0	8.3	7.9	7.8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2016~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당초 계획 기준과 제3회 추경 확정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19) 근로자계정의 실업급여계정에는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 사업과 산전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이 포함되며, 고안직능계정에는 신규고용촉진·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훈련·훈련장비 보강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포함된다.

나. 분석의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9년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4배로, 지속적으로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하는 등 고갈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적정 여유자금 규모를 검토하고 재정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1.5~2배이다.²⁰⁾

그러나 2019년도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4배로, 법정 적립배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7년까지 소폭 상승하던 적립배율은 2018년부터 하향 추세 전환 후 2019년에 크게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근로자계정 내 실업급여계정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배)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초	수정
수입(A)	70,340	71,476	76,407	84,756	102,034	133,034
지출(B)	58,557	62,858	79,157	98,558	114,449	147,568
재정수지(A-B)	11,783	8,618	△2,750	△13,802	△12,415	△14,534
누적적립금(C)	49,371	57,957	55,201	41,374	28,959	26,841
적립배율(C/B)	0.8	0.9	0.7	0.4	0.3	0.2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2016~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당초 계획 기준과 제3회 추경 확정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20)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실업급여 제정의 주된 지출 증가 원인은 실업급여 제정 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것이다.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114.8만명, 수급자 수는 144.4만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7.6%, 9.8% 증가하였다. 2020년 1사분기도 전년 대비 신청자 및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자 수]

(단위: 만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사분기
				1사분기		
신청자	95.8	94.4	106.7	114.8	37.6	43.7
수급자	120.1	119.7	131.5	144.4	67.8	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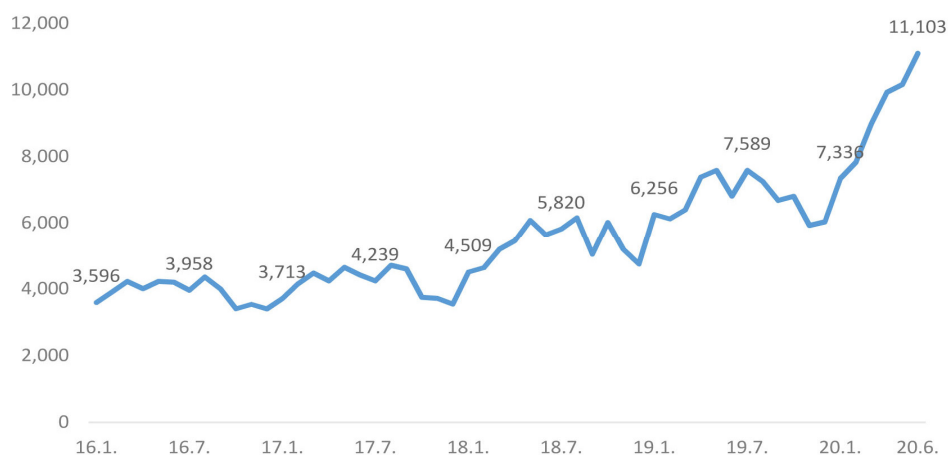
주: 2019.10.1.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및 고용보험통계

구직급여 신청 증가로 인해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10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 1월 이후 월평균 8.7%의 상승을 보이는 등 현재까지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이와 같은 지출 증가 추세는 2019.10.1.부터 「고용보험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연장(90~240일 → 120~270일)되고 지급액도 인상(평균 임금의 50 → 60%)됨에 따라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충당하고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하였다.

다만, 이를 반영하더라도 국회예산정책처(2019)²¹⁾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019년 이전 적립금배율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외 실물경기가 악화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회예산정책처(2019)의 추계 결과보다 지출이 증가하여 적립배율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2021~2025년 임금근로자 실업급여계정 재정전망]

(단위: 조원, 백)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A) ¹⁾	11.1	11.8	12.3	13.0	13.6
지출(B) ²⁾	11.5	12.0	12.3	12.4	12.9
재정수지(A-B)	△0.4	△0.2	0.1	0.6	0.7
누적적립금(C)	3.1	2.9	3.0	3.6	4.2
적립배율(C/B)	0.3	0.2	0.2	0.3	0.3

주: 1) 2019.10.1. 실업급여 보험료율 상승(1.3→1.6%) 및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 반영) 포함

2) 의무지출(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과 재량지출(기금운영비 포함) 모두 포함.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을,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사업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2019

실업급여 계정의 구직급여 등은 의무지출로, 향후 재정지출 소요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고용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구직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직급여 지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적정 여유자금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의 기금 고갈에 대비한 적정 여유자금 규모에 대해 검토하고, 재정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²⁾

21)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2019, p.166 참조

둘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출 규모 검토 등을 통해 동 계정의 적립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안직능계정의 수입은 고용주부담금으로, 실업급여 계정과 달리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²³⁾ 지출은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의무지출 성격의 사업이 편성된 실업급여 계정과 달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재량지출 성격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고안직능계정의 적립배율은 1~1.5배이다.

2019년 결산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는 7,142억원 적자로, 2017년 적자로 반전된 이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대상 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22)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2009년 0.8에서 2011년 0.4로 하락하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0.9%에서 1.1%로 상승시켰고, 2013년에는 1.1%에서 1.3%로 재차 상승시켰다. 이후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2017년 0.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2019년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상승시켰다.

2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고용보험료율]

규모	보험료율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	0.25%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0.45%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주	0.65%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주	0.85%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고안직능계정의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2019년 결산 기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외 1,026억원), 고용유지지원금(669억원), 고용안정장려금(1,139억원),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6,470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4,84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계정 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배)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초	수정
수입(A)	31,995	29,795	31,193	33,752	38,869	53,569
지출(B)	30,064	31,699	36,566	40,894	40,468	71,712
재정수지(A-B)	1,931	△1,904	△5,374	△7,142	△1,600	△18,144
누적적립금(C)	46,198	44,264	38,886	31,726	30,127	13,583
적립배율(C/B)	1.5	1.4	1.1	0.8	0.7	0.2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2016~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당초 계획 기준과 제3회 추경 확정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계획액(사업비)은 2017년 45억원에서 2020년 1조 4,26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계획액도 2017년 1,260억원에서 2020년 5,03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경우 신규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비)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액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¹⁾		
	계획액(수정)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획액(수정)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17	45	14	31.7	1,260	763	60.5
2018	3,397	3,307	97.4	2,088	2,044	97.9
2019	8,897	8,896	100.0	4,232	4,209	99.5
2020	14,260	-	-	5,033	-	-

주: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반회계(청년지원금), 고용보험기금(기업지원금) 내 각각 편성되는데, 해당 수치는 고용보험기금 계획액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2017년의 경우 기존 청년인턴제 잔여 사업비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비가 함께 편성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동 계정의 법정 적립배율 충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²⁵⁾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²⁶⁾ 등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규 가입자 증가로 인하여 사업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법정 적립배율 충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지출 규모 계획 시 중장기적으로 사업 효과성 및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출 규모를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상 고용보험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이관²⁷⁾하는 등 방안을 통해 동 계정의 적립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25)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지출효율화, 수입확충 등을 통해 2019~2023년 연도별 적립배율을 명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 기간 내에 법정 적립배율을 달성한다.

26) 2020년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당초계획 대비 2차추경 직후 기준으로 목표인원을 278,763명 확대하면서 4,653억원을 증액하였다.

27)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고용보험기금의 2개 사업(고용센터 인력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을 타 회계로 이관(20년 예산 기준 2,321억원)하여 고안·직능계정의 사업비의 규모를 축소할 바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참여율 및 고용유지율 개선 필요 등

가. 현 황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사업¹⁾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청년,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1단계)’,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3,907억 5,100만원 중 88.9%인 3,47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435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370,960	390,751	0.5	0	390,751	347,194	88.9	0	43,557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I 유형’과 청년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에 따라 각 단계별 참여수당 및 자부담 비율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저소득층은 취업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36-301

나. 분석의견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저소득층의 사업 참여율 개선 및 중단율 하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신규 도입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저소득층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매월 3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목적은 구직활동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2019년 저소득층 참여자 수는 10.4만명으로, 참여율(참여인원/목표인원)은 당초 목표(12.2만명) 대비 84.3%에 그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사업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참여 인원 및 참여율 모두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중인데, 2017년의 경우 참여인원은 13.0만명, 참여율은 95.5%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참여인원 10.4만명, 참여율은 86.2%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중단율(중단인원/참여인원)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중단율은 2019년 12.8%로 2017년의 중단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9년의 중단율은 2018년에 비해 2.5%p 하락하였으나, 중장년층의 중단율 또한 2018년에 비해 2019년 1%p 하락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구직활동 중 저소득층의 생계비 걱정을 덜어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형별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 분		목표인원 (A)	참여인원 (B)	중단인원 (C)	참여율 (B/A)	중단율 (C/B)
2017	합계	361,000	352,132	24,057	97.5	6.8
	저소득층	136,000	129,881	16,315	95.5	12.6
	청년층	190,000	198,697	6,934	104.6	3.5
	중장년층	35,000	23,554	808	67.3	3.4
2018	합계	311,000	308,290	24,364	99.1	7.9
	저소득층	121,000	104,253	15,983	86.2	15.3
	청년층	160,000	187,048	7,670	116.9	4.1
	중장년층	30,000	16,989	711	56.6	4.2
2019	합계	249,000	223,112	17,990	89.6	8.1
	저소득층	122,000	102,808	13,204	84.3	12.8
	청년층	103,000	104,511	4,281	101.5	4.1
	중장년층	24,000	15,793	505	65.8	3.2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전제로 본예산 산출 당시 폐지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동년 1차 추경을 통해 재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실제로 저소득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유인하고 참여 도중 생계곤란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²⁾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저소득층 참여율을 제고하고 중단율이 하락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및 중장년층의 고용유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통한 취업자의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전체 고용유지율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

2) 또한,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명문화되고, 그 지원수준(50만원×6개월)도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30만원×3개월)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당초 도입 취지처럼 생계비 부담을 덜어 참여 도중 생계 곤란으로 인한 사업 이탈을 방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는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50.1%에 머무는 등 여전히 고용유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체 고용유지율의 상승 추세는 참여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고용유지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의 고용유지율은 동기간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017~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형별 고용유지율]

(단위: 명, %)

구 분		참여자수	고용유지율		
			3개월	6개월	1년
2017	합계	352,132	76.3	62.3	48.1
	저소득층	129,881	76.3	62.3	47.1
	청년층	198,697	76.8	62.8	49.3
	중장년층	23,554	71.5	57.2	41.6
2018	합계	308,290	76.8	63.1	49.5
	저소득층	104,253	76.2	62.5	48.0
	청년층	187,048	77.3	63.7	50.5
	중장년층	16,989	72.3	57.1	40.3
2019	합계	223,112	75.5	61.8	50.1
	저소득층	102,808	75.5	61.9	46.4
	청년층	104,511	75.9	62.0	53.0
	중장년층	15,793	71.0	58.2	40.6

자료: 고용노동부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취업처의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과 중장년층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취업처가 알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예산 산출을 정교화함으로써 차년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위탁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연례적인 전용·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예산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참여자수당’, II유형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사업비’ 및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2019년 연례적으로 참여자수당으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전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각각 2017년 150억원, 2018년 397억원, 2019년 270억원이다. 위탁사업비가 연례적으로 부족한 원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취업인센티브의 경우 참여자 취업(초기상담 이후 15개월 이내 취업까지 인정) 이후 3개월 이상 연속시 지급³⁾하기 때문에 예산이 차년도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민간위탁기관 참여인원 증가 등으로 취업인센티브 초과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2017~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비 전용·조정 내역]

구분	전용·조정 규모	전용·조정 사유	전용·조정 내역
2017	150억원	예산편성 당시 위탁사업비 지급 위한 산출기준과 실지급률 간 차이 등으로 일반용역비 부족	참여자수당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17~'18년) 또는 조정('19년)
2018	397억원	'16~'17년 당초 예산편성 대비 취업성과 개선에 따른 취업인센티브 초과소요분을 18년 상반기에 집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부족 발생	
2019	270억원	'18년 민간위탁기관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 취업인센티브 초과소요분을 18년 상반기에 집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부족 발생	

주: 민간위탁기관 사업비가 '17~'18년의 경우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되었으나 '19년의 경우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면서 '17~'18년에는 전용을 통해, '19년에는 세목조정을 통해 참여자수당(320-01)을 민간위탁기관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 산출에 사용되는 취업률, 고용보험가입률, 3개월 고용유지율 등이 최근 5년간 급격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바, 예산 산출을 정교화함으로써 차년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사업비를 전용 또는 내역을 조정하여 지급할 필요 없이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즉, 초기상담 시점으로부터 최대 18개월 후 취업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다.

[2015~2019년 위탁사업비 산정에 사용되는 고용지표 현황]

(단위: %)

연도	취업률	고용보험가입률	3개월 고용유지율
2015	63.8	86.1	77.2
2016	66.2	87.9	77.0
2017	64.1	87.3	76.3
2018	61.5	88.3	76.8
2019	61.6	84.9	75.1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차년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위탁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연례적인 전용 및 내역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산출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¹⁾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223억 5,200만원 중 99.8%인 22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적기업 육성	22,352	22,352	0	0	22,352	22,298	99.8	0	54

자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그 내역사업으로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② 모태펀드 사업 등이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치단체를 통하여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모태펀드 사업은 정부의 초기자금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이 R&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37-301

2) 다만, 모태펀드 사업의 경우 2019년 예산액은 배정되어 있지 않고, 2018년 제5호 투자조합에 대하여 예산액을 75억원 배정·출자하였다.

나. 분석의견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집행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을 통해 집행을 개선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부액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기업을 공모·선정·심사한 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평가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2018~2019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³⁾ 집행률 현황을 유형화하면, ① 2년간 80% 후반에서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지자체(7곳), ② 2018년 대비 집행률이 크게 상승하여 2019년 80% 후반에서 90% 이상의 실집행률을 보이는 지자체(4곳), 그리고 ③ 2018년에 비해 집행률이 급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5곳)로 나눌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코드: 1037-312)에서 지출되며, 2019년 실집행률은 99.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방자치단체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p)

자치단체	2018년			2019년			실집행률 변화 (F-C)
	교부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C=B/A)	교부액 (D)	집행액 (E)	실집행률 (F=E/D)	
서울특별시	1,972	1,873	95.0	2,518	2,457	97.6	2.6
부산광역시	1,437	1,325	92.2	1,465	1,398	95.4	3.2
대구광역시	965	905	93.8	1,011	884	87.4	△6.4
인천광역시	1,335	1,180	88.4	1,080	965	89.4	1
광주광역시	1,565	1,244	79.5	1,396	1,365	97.8	18.3
대전광역시	794	532	67.0	1,114	887	79.6	12.6
울산광역시	800	592	74.0	713	704	98.7	24.7
세종특별자치시	169	164	97.0	202	164	81.2	△15.8
경기도	2,646	1,975	74.6	2,758	2,606	94.5	19.9
강원도	1,621	1,514	93.4	1,644	1,544	93.9	0.5
충청북도	852	811	95.2	767	751	97.9	2.7
충청남도	1,018	606	59.5	1,181	629	53.3	△6.2
전라북도	1,785	1,178	66.0	1,214	790	65.1	△0.9
전라남도	1,267	955	75.4	1,243	900	72.4	△3.0
경상북도	2,050	1,956	95.4	2,129	2,086	98.0	2.6
경상남도	1,004	851	84.8	845	771	91.2	6.4
계	21,280	17,661	83.0	21,280	18,901	88.8	5.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기 유형 중 ③ 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집행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8년 97.0%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2019년 81.2%로 15.8%p 하락하였고,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는 집행률이 2년 연속 집행률이 80%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집행률이 80%를 하회하는 4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3개 광역자치단체의 2019년 집행률은 2018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비해 2019년 실집행률이 크게 하락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집행률 하락 사유에 대하여 사업 신청기업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신청 기업의 사업 적정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개발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이 다수 탈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2018~2019년 지속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과다 산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감액 지급하여 연쇄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실집행률이 크게 상승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

도, 경상남도의 경우 참여기업수 증가 또는 1개 기업 당 평균 지원금액이 상승하여 실집행률이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는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을 통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실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교부액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장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투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이 중복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자펀드)은 총 5개 조합, 총 290억원 규모로 결성되어 있다. 이 중 제1호 투자조합은 2011~2015년 투자 및 2015~2019년 회수과정을 거쳐 2019년 3월 청산되었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는 투자 종료 및 회수 중이며, 제5호는 2022년 11월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의 60% 이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⁴⁾ 등 주목적 투자대상⁵⁾에 투자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4)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가운데 조직형태, 이윤배분 제안을 제외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여 지정(3년)·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요건 등을 갖춘 후에는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5) 주목적투자대상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①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대상 중 창업하여 투자금 회수 전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④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⑤ 기타 투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투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현황]

구분		제1호 (2011.6.22. 결성)	제2호 (2012.9.6. 결성)	제3호 (2013.11.27. 결성)	제4호 (2015.2.2. 결성)	제5호 (2018.11.7. 결성)
명칭		미래에셋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미래에셋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2호	포스텍 사회적 기업투자조합	CCVC 소셜벤처 투자조합	피씨씨 사회적기업 2호펀드
결성금액 (고용부/민간)		42억원 (25/17)	40억원 (25/15)	60억원 (25/35)	40억원 (25/15)	108억원 (75/33)
총투자/출자		40.5억원 / 42억원 (96.4%투자)	33.9억원 / 40억원 (84.8%투자)	59.6억원 / 60억원 (99.3%투자)	30억원 / 40억원 (75.0%투자)	39억원 / 108억원 (36.1%투자)
투 자 비 중	주목적	25.5억원	24억원	36억원	24억원	30억원
	투자대상	(62.9%)	(70.7%)	(60.4%)	(80.0%)	(76.9%)
	일반	15억원	9.9억원	23.6억원	6억원	9억원
중		중소기업 (37.0%)	(29.2%)	(39.6%)	(20.0%)	(23.1%)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일한 주목적 투자대상 업체에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A 업체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에서 각각 5억원이 투자되었고, B 업체의 경우 각각 2.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C 업체의 경우 각각 1억원이 투자되었다. D 업체의 경우 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각각 8억원, 12억원, 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E 업체의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서 각각 4억원 및 10억원이 투자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가 이미 끝난 제1호 ~ 제4호의 경우 전체 주목적 투자업체 중 25.0 ~ 66.7%가 중복업체이며, 2022년까지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 제5호의 경우 기 투자업체 3개소 중 1개소가 제4호에서 투자된 곳이다. 이를 주목적 투자업체에 대한 총투자액 중 중복업체에 대한 투자액 비율로 보면, 제1호~제4호의 경우 33.3~68.8%를 차지하고, 제5호의 경우 현재까지 33.3%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출자 주목적 투자업체 중 중복업체 현황]

기업명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A	5억원 (’14, ’15)	5억원 (’14, ’15)			
B	2.5억원 (’13)	2.5억원 (’13)			
C	1억원 (’13)	1억원 (’13)			
D		8억원 (’15)	12억원 (’14)	8억원 (’15)	
E				4억원 (’17)	10억원 (’19)
전체 주목적 투자업체 수(개소)	8	6	4	5	3
주목적 투자업체 중 중복업체 비율(%)	37.5	66.7	25.0	40.0	33.3
주목적 투자업체 총투자액 중 중복업체 투자액 비율(%)	33.3	68.8	33.3	50.0	33.3

주: 괄호 안 수치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 연도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각 투자조합이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지 공개되지 않으므로, 후에 설립된 투자조합이 앞에 설립된 투자조합에서 투자한 기업을 배제하고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만 제1호·제2호 투자조합은 운용사가 동일하여 2개 투자조합이 A, B, C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였고, 제3호~제5호 투자조합은 각각 수익률 제고를 위해 D 및 E 사회적기업에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조성 취지가 정부의 초기자금(Seed Money)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R&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수익률 제고를 위한 중복 투자 사례가 많아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으나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는 높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정책금융 제공 취지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투자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등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한국잡월드운영 사업¹⁾은 청소년 등에게 직업탐색 및 체험기회 제공, 직업지도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잡월드를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잡월드운영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211억 8,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잡월드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잡월드 운영	21,180	21,180	0	0	21,180	21,180	100.0	0	0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잡월드의 자체수입은 연례적으로 관람객 수와 광고수입을 과다 추정하여 산출되었으므로, 한국잡월드는 지속적으로 경영 개선에 매진하고, 성과에 기반하여 자체수입 추계를 현실화하며, 연중 자체수입 추정치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잡월드 운영사업은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액 중 자체수입을 차감한 나머지 지출액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받는 수지차보전사업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9-301

자체수입 추정치를 과다 산출함으로써 지출을 증대시킬 유인이 있으므로 예산 산출 시 자체수입 추정치를 성과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연중 자체수입 추정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잡월드의 예산액 대비 결산액 비율은 2015년 91.4%에서 2019년 78.8%로 하락 추세에 있다. 이는 자체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입장수입과 광고수입의 결손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수입과 광고수입의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2015~2019년 전체에 걸쳐 100%를 하회하고 있고, 특히 입장수입은 2015년 85.5%에서 2019년 77.5%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국잡월드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결산액	예산액 대비 비율	결산액	예산액 대비 비율	결산액	예산액 대비 비율	결산액	예산액 대비 비율	결산액	예산액 대비 비율
입장수입	66	85.5	69	89.3	63	78.7	61	76.6	58	77.5
광고수입	19	46.8	20	49.1	23	57.3	21	52.4	23	65.5
부대수입	23	178.4	13	101.9	16	121.2	17	132.2	15	84.9
이월수입	11	190.3	22	136.3	17	154.3	15	65.3	21	101.3
계	120	91.4	124	84.7	119	82.4	115	73.4	116	78.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입장수입의 결손은 예산 편성 당시 한국잡월드가 지속적으로 관람객 수를 과다하게 추계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5~2018년 간 예상 관람객 수 대비 실제 관람객 수의 비율은 90%를 하회하였고, 2019년에는 91.4%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 관람객 수는 2015년보다 약 7.7만명이 감소하는 등 실제 관람객 수 자체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기 하락분의 60%를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3학년을 주 관람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관 관람객 수 하락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5~2019년 한국잡월드 관람객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상 관람객 수(A)	838,000	838,000	808,000	790,000	700,000
실제 관람객 수(B)	717,154	752,100	689,693	666,968	639,686
청소년관	402,762	404,898	375,104	364,875	355,942
어린이관	287,647	316,431	291,328	281,456	267,341
관람	26,745	30,771	23,261	20,637	16,403
B/A	85.6	89.7	85.4	84.4	91.4

주: 청소년관 및 어린이관의 주요 관람 대상은 각각 초5~고3 및 만4세~초4임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는 2019년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자체수입 제고를 위해 미래직업 콘텐츠 연구용역과 가격정책 전략개발 컨설팅을 진행하여 2020년 경영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020년 5월 말부터 ‘경영개선 TF’를 발족하여 전사적 경영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잡월드의 자체수입 추정치 과다 산출 문제가 2015년 이후 심화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자체수입 추정치는 과거 수입 추이를 중심으로 산출하되, 위 자체 개선 방안이 실제 한국잡월드의 경영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관람객 수 증가 등 성과로 나타난 이후에 이를 근거로 자체수입 추정치 산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잡월드가 민간시설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²⁾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 노력 또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및 한국잡월드는 지속적으로 경영 개선에 매진하고, 관람객 수 증가 등 성과에 기반해 자체수입 추정치 추계를 현실화 하며, 연중 자체수입 추정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는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민간 직업체험시설(‘키자니아 서울’, ‘키즈엔키즈 직업체험관’, ‘아이지니어스’, ‘EBS 리틀소시움’ 등)과 기능 및 입지 면에서 경쟁 중에 있다.(2019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가. 현 황

해외취업지원 사업¹⁾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584억 200만원 중 98.6%인 576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해외취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외취업지원	56,002	58,402	0	0	58,402	57,601	98.6	0	801
KMove 스쿨	28,330	28,330	0	0	28,330	28,030	98.9	0	300

자료: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K-Move 스쿨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어학·직무 교육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교육시간에 따라 단기(200~600시간 미만), 장기(600시간 이상) 및 트랙Ⅱ(1,000시간 이상) 과정으로 나뉘고, 교육·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1인당 과정별로 각각 단기의 경우 최대 580만원, 장기의 경우 최대 800만원, 트랙Ⅱ의 경우 최대 1,350만원이 지원된다.

나. 분석의견

양질의 일자리 알선에 노력함으로써 취업률·평균연봉 등 해외 취업 성과 개선에 매진하고, 향후 해외 취업 청년이 귀국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취업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35-304

최근 K-Move 스쿨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취업자의 연수 및 취업실적 등을 보면, 취업성고가 일부 개선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률의 경우 단기 및 장기과정 모두 2015~2017년 상승하다가 2018년에는 다시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동기간 취업처의 평균연봉은 단기 과정의 경우 2,426만원으로 나타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장기 과정의 경우 2,900만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8년 신규로 도입된 트랙 II 과정의 경우 평균연봉은 세 과정 중 가장 높으나, 세 과정 중 가장 높은 중도탈락률과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 청년의 고용유지율, 취업 이후 귀국자 수 등 통계는 2019년부터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고용유지율, 귀국자 수 등 연도별 사업 종료 후 성과와 관련된 통계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²⁾

[K-Move 스쿨 취업률 및 평균연봉 추이]

(단위: 명, %, 만원)

연 도	구 분	참여인원	중도탈락	취업인원	취업률	평균연봉
2015	단기	2,491	133	1,675	67.2	2,426
	장기	654	55	435	66.5	2,943
2016	단기	991	39	716	72.3	2,209
	장기	2,338	202	1,579	67.5	3,026
2017	단기	658	17	494	75.1	2,144
	장기	2,852	204	2,028	71.1	2,975
2018	단기	637	38	416	65.3	2,196
	장기	2,647	263	1,720	65.0	2,920
	트랙 II	276	31	167	60.5	3,865
2019	단기	642	(진행중)			
	장기	2,639				
	트랙 II	296				

주: 1. 평균연봉은 청년의 취업 성공에 따른 초봉의 평균임

2. 2019년의 경우 현재 연수과정이 진행중이며, 최종 취업률 및 평균연봉은 2020년 말 산출 가능(20.7.21. 기준 연수 완료 인원 중 취업인원은 15.1%)

자료: 고용노동부

2) 다만, 2016.10. 발간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3년 취업자 중 57%, 2014년 취업자 중 48%가 국내에 복귀하였다고 한다. 또한, 귀국자 중 국내 취업 상태인 사람의 비율은 2013년 귀국자 52%, 2014년 귀국자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 평균연봉 등 2015~2018년 사업 성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전세계적으로 고용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어 국내취업과 달리 유무형의 취업장벽(비자정책, 국내취업 보호 등)이 강화되는 추세로 인해 사업 성과가 일부 저조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은 그 성격상 주요 취업국의 고용상황에 따라 취업 성과가 개선되거나 또는 악화될 수 있다. 다만, 동 사업에 따른 취업국이 일본·미국·싱가포르·호주 등 일부 국가에 집중³⁾된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국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취업국의 고용상황에 따라 동 사업의 전반적 취업 성과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알선에 노력함으로써 취업률·평균연봉 등 해외 취업 성과를 개선하고, 향후 해외 취업 청년이 귀국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취업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업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2018년의 경우 K-Move 스쿨을 통한 취업인원 중 38.6%가 일본, 21.5%가 미국, 9.9%가 싱가포르, 8.9%가 호주에 취업해 상기 4개 국가에 취업한 인원이 전체 취업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0%로 나타났다. 4개 국가 취업자가 전체 취업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6.6%, 2016년 78.4%, 2017년 81.8% 2018년 79.0%이다.

가. 현 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¹⁾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331억 8,600만원 중 99.1%인 1,319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158,186	158,186	-	△25,000	133,186	131,940	99.1	7	1,239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하며, 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²⁾ 방식으로, 1회 3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구직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소명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목표인원 80,000명 중 76,793명을 지원하였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63-301

2) 클린카드란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정상적·공식적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말한다.

나. 분석의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다양한 성과지표 측정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한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동 사업은 지원자 수를 성과지표³⁾로 하여 지원금 지급 기간 내 참여자들의 지원금 사용 관련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금 지급 종료 이후 참여자의 취업 소요기간, 취·창업률, 고용유지율 등 취업 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구직활동에 따른 직접적 비용 외에도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비 등 간접적 비용도 보조하는 등 폭넓은 사용을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종료 이후 취업 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⁴⁾으로 분류되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과평가 및 사업 효율화를 요구받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금 지급 기간 내에 어떠한 구직활동을 하는지, 지원금 지급 시점 이후 취업 소요기간, 취·창업률, 고용유지율, 고용형태, 임금수준, 지원금 수급 후 니트(NEET)⁵⁾가 되는 비율 등 취업 성과에 관한 기초 정보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다양한 성과지표 측정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운영에 환류함으로써 사업 운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동 사업은 현재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로서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를 관리하고 있다.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고용서비스’로 분류된다.

5) 니트(NEET): ‘교육(진학) 또는 훈련, 경제활동상태가 아닌 자’ 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가. 현 황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¹⁾은 퇴직 신중년(50~60대)의 은퇴 후 경력을 살릴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퇴직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숙련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258억 7,600만원 중 92.0%인 23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21,821	25,876	0	0	25,876	23,803	92.0	74	1,999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퇴직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시 소정의 참여수당 및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비영리기관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아동 학습지도, 독거노인 치매 예방,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시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336-30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비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사회공헌
대상	만 50세 이상 퇴직자	
참여기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	
목적 및 활동 내용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	자기만족·성취감을 위한 봉사적 성격의 활동 참여로, 개별 참여자의 경력에 따라 희망하는 재능나눔 활동 수행
근로자 지위	근로자 지위 O (근로계약서 체결)	근로자 지위 X
활동 기간	연평균 10개월	연 평균 360시간(약 6개월)
지원액	시간당 평균 10,400원	참여수당 시간당 2,000원 식비·교통비 일 9,000원
국고보조율	약 50%	약 80%
지원 목표 (’19)	3,000명	12,500명
활동 예시	드론자격증 보유한 신중년을 활용한 도시 안전 관리	지역 노인정에서 어르신 대상 한글 지도

주: 지원 목표 인원은 2019년 추경 기준 인원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추경 편성시 자치단체 수요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개선 등 동 사업의 집행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2019년 교부액 대비 실집행액은 91.4%로서, 추경을 통해 목표 인원을 2,500명 증가시켰음에도 집행 수준이 2018년에 비해 저조하다. 동년 실지원인원은 10,513명으로서, 추경에 따른 목표 인원(12,500명) 대비 집행률은 84.1%로 나타났다.

[2017~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	교부액(A)	교부 실집행액(B)	B/A
2017	6,000	7,948	7,254	6,400	88.2
2018	8,559	8,559	7,805	7,519	96.3
2019	13,790	16,884	14,251	13,032	91.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2019년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추경안이 동년 8월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수행기간이 3개월 이하로 짧아²⁾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응 지방비가 미확보된 지자체가 있어³⁾ 추경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2019년 1월 자치단체 신청인원(13,078명)을 고려하여 목표 인원 대비 25%에 해당하는 2,500명을 추경으로 확보하였는데, 자치단체 신청인원 중 일부가 1월 이후 개시된 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인원 수요가 변동했을 가능성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추경으로 확보한 인원이 일부 과다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추경 편성 이전에 자치단체 수요를 다시 파악하여 적정 인원을 추경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⁴⁾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추경 편성시 자치단체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물량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높이는 등 동 사업의 집행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추가 사업 공모에 1개월, 사업 선정 및 참여자 모집에 1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등 예산 확정부터 사업 착수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

3) 동 사업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서, 추경으로 지원 인원이 증가한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국비에 대응한 지자체 예산을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국회의 추경 예산 확정이 8월에 이루어지면서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한 지자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는 지방비 확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집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이전에 자치단체 대상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625명의 추가 수요를 확인하였고, 이에 본예산 기준 목표인원 2,500명의 20%에 해당하는 500명을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둘째, 실집행률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집행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실집행률은 91.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실집행률은 88.6%로 나타났으나, 자치단체별로 실집행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총 60개의 자치단체 중 실집행률이 90%를 하회하는 곳은 22곳이고, 특히 70% 미만인 곳은 11곳이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총 89개 자치단체 중 실집행률이 90%를 하회하는 곳은 36곳이고, 70% 미만인 곳은 13곳이다.⁵⁾

[2019년 자치단체별 실집행률 수준별 개소수]

(단위: 개소)

구분	계	90% 이상	70% 이상 90% 미만	70% 미만
신중년 사회공헌	60	38	11	1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89	53	23	1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의 사회공헌·봉사활동 수요 및 지역현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활동 인원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선정한 운영기관이 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사업을 관리·운영하는바 자치단체별 집행역량 및 자치단체 선정 운영기관의 관리·운영 역량에 따라 실집행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집행실적이 낮은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실적이 양호한 자치단체 및 그 운영기관의 사업 계획 설정 및 운영 노하우 등에 기초하여 모범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자치단체의 집행률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5) 다만, 실집행률이 70%를 하회하는 자치단체의 구성은 사회공헌 사업과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공헌 사업의 경우 11개 자치단체 모두 시·도인데 비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13개 자치단체 중 군 단위 자치단체가 7곳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참여 분야의 다양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신설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참여 현황을 분야⁶⁾별로 구분해 보면, 사회서비스(25.5%), 경영전략(23.6%), 교육연구(19.9%), 행정지원(10.6%), 기타(7.8%)의 5개 분야에 참여하는 인원의 비중이 총 참여 인원의 8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정 분야로 편중되는 현상은 기존 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2017~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 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일부 순위 변동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교육연구, 문화예술, 행정지원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개 분야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전체 참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7% 안팎으로 나타났다.

[2017~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분야별 참여비율 순위]

(단위: %)

구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사회공헌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1위	사회서비스 (25.5)	사회서비스 (34.9)	사회서비스 (28.9)	사회서비스 (30.8)
2위	경영전략 (23.6)	교육연구 (18.7)	문화예술 (21.5)	교육연구 (20.6)
3위	교육연구 (19.9)	문화예술 (18.0)	교육연구 (20.1)	문화예술 (20.4)
4위	행정지원 (10.6)	행정지원 (7.9)	행정지원 (9.1)	행정지원 (8.2)
5위	기타 (7.8)	상담멘토링 (7.5)	상담멘토링 (7.6)	기타 (7.6)
소계	87.4	87.2	87.0	87.5
총계	100	100	100	100

주: 괄호 안은 전체 인원 대비 분야별 참여 인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참여자의 지원 분야를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및 기타의 총 13개 분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들의 사회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도입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법률법무 등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참여 분야의 다양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¹⁾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및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375억원 중 17.4%인 65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9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7,500	37,500	0	0	37,500	6,524	17.4	0	30,97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²⁾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7월 「저출산대책」의 핵심 추진과제이자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발표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³⁾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339-301

2)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전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나. 분석의견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실적을 개선하는 한편, 비임금 근로자에 비해 지원 실적이 저조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서, 2019년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동 사업의 목표 지원인원은 25,000명⁴⁾이었으나, 지원인원은 17.4%인 4,353명에 불과하다. 2019년 집행 저조 원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낮은 대국민 인지도를 제시하고, 2020년에는 출생신고시 관련 제도 안내, 보건소 및 산후조리원 등 출산 관련 시설에서의 홍보를 강화하여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20년 4월까지의 집행 실적은 2020년 본예산 472억 800만원 대비 12.9%인 6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집행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2019~2020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원인원	204	652	1,503	2,509	3,466	4,353	1,076	2,011	3,109	4,113
지원금액	112	480	1,971	3,711	5,142	6,524	1,595	2,980	4,607	6,100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지원대상별로는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의 지원 대상 인원 대비 실질 지원 인원이 타 지원대상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연간 지원 대상 인원(48,790명) 중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가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요건 확인 후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와 함께 출산여성 본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즉, 출산일부터 90일 휴무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50만원씩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개념이며, 최초 지급 시점이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전 회차분까지 모두 지급된다.

4) 2019년 예산 편성 당시 고용노동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장안 연구」(2018) 결과와 분만자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연간 지원대상을 48,790명으로 추계하였고,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25,000명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36,774명,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657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수급요건 미충족자가 1,359명이다. 동 사업이 2019.7.부터 시행된바, 고용노동부는 연간 지원 대상 인원 중 목표 지원인원을 비임금근로자 18,850명,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5,450명,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자를 700명으로 설정하였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추계]

2019년 분만여성 추계 312,757명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고용보험법 적용			
		미가입자	가입자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초단시간, 농림어업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출산전·후 퇴사자 ¹⁾	180일 자격 미충족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제도적 사각지대		급여 사각지대			
우선지원		우선지원 (지원+가입조치)		우선지원	
← 36,774명 →		← 10,657명 →		← 1,359명 →	
← 2019년 추계 48,790명(연간 인원) →					

주: 1)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출산전·후 퇴사자는 4.5만명(이 중 퇴사 후 출산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2.13만명으로 추정)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 2019.7.

그런데, 2019년 실지원 인원은 총 4,353명으로서 목표 지원 인원의 17.4%에 불과하다. 또한, 실지원인원 중에서도 비임금 근로자가 4,200명,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70명,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자가 83명인 것으로 나타나 2019년 목표 지원 인원 대비 실지원인원의 비율은 비임금근로자가 22.3%로 11.9%를 차지한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자 및 1.3%를 차지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원대상별 집행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간 지원 인원(A)	2019년 실지원인원(B)	B/A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	18,850	4,200	22.3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5,450	70	1.3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자	700	83	11.9
계	25,000	4,353	17.4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2019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자가 사업 설계 당시 예상보다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사업의 집행 실적을 개선하고, 특히 비임금 근로자에 비해 지원 실적이 저조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자 등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사업¹⁾은 기업이 일·가정양립환경구축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투자액의 일부를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장려금(용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사업의 2019년도 계획현액 210억 6,000만원 중 56.2%인 118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2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용장려금(용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고용장려금 (용자)	28,188	28,188	0	28,188	18,686	66.3	0	9,502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21,060	21,060	0	21,060	11,843	56.2	0	9,217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²⁾한 기업에게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1~2%의 이율로 용자를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이 때, 사업주는 용자 승인 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회차별·연도별 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7-351의 내역사업

2)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2019년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장 1개소당 용자 규모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용자가 필요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집행을 개선하고,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규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2019년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사업은 목표 지원 사업장 수 대비 용자 사업장 수가 하락하는 추세인 데 비해 사업장 1개소당 용자 규모는 상승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2017년 58개소에 대하여 평균 4.7억원을 지원한 데 비해 2019년에는 9개소에 대하여 평균 13.2억원을 지원한바, 2019년 지원 개소 수는 2017년의 15.5%에 불과하나 1개소당 평균 용자 규모는 2017년의 2.8배에 달한다.

[2017~2019년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실적]

(단위: 개소수,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사업장 수(A)	64	58	33	22	45	9
용자 규모(B)	295	271	191	191	211	118
사업장 1개소당 용자 규모(B/A)	4.6	4.7	5.8	8.7	4.7	13.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용자 지원 사업장 수의 감소는 경제 전반적인 설비투자 건수 감소로 인한 것이고, 사업장 1개소당 용자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 2020년 총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용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만, 2017~2019년 지속적으로 목표 사업장 수가 집행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사업장 1개소당 용자 규모는 예산 산출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용자가 필요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는 등을 통해 다수 사업장이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규모를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¹⁾은 고용위기지역²⁾에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경우 임금의 1/2~2/3을 1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의 2019년도 계획현액 80억 5,300만원 중 81.2%인 65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8,053	8,053	0	0	8,053	6,536	81.2	0	1,517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서 집행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홍보 강화 등 집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향후 지역 고용 상황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에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수급을 위해 사업 이전·신설·증설을 신고하고 실제 조업을 개시한 현황을 보면, 2019년 8개 지역에서 사업의 이전·신설·증설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385개소이나 실제로 조업을 개시한 사업장은 298개소로 신고 사업장 대비 77.4% 수준이다. 또한, 이들의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56-353

2)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2018년 4월 군산,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8년 5월 전남 영암군과 목포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고용계획인원은 6,325명이었으나, 실제 고용인원은 계획인원의 59.4%인 3,760명이다. 특히, 사업장 1개소당 계획 인원이 가장 작은 군산을 제외한 7개 고용위기지역 모두 계획 대비 고용이 적었으며, 고용 계획 인원 대비 미고용 인원 수 비율은 16.5%(영암) ~ 56.9%(고성군)에 달한다.

[2019년 고용위기지역 사업 이전·신설·증설 및 고용 계획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군산	통영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	고성군	목포	영암	계
이전·신설·계획 신고 사업장 수	131	17	31	74	2	14	21	95	385
고용 계획 인원	631	171	744	2,211	10	422	185	1,951	6,325
사업장 1개소당 계획 인원(A)	4.8	10.1	24.0	29.9	5.0	30.1	8.8	20.5	16.4
조업 개시 사업장 수	101	12	25	55	2	8	18	77	298
실제 고용 인원	612	80	416	1,139	6	104	83	1,320	3,760
사업장 1개소당 실고용 인원(B)	6.1	6.7	16.6	20.7	3.0	13.0	4.6	17.1	12.6
계획 대비 미고용 인원 수 (C=A-B)	△1.2	3.4	7.4	9.2	2.0	17.1	4.2	3.4	3.8
계획 대비 미고용 인원 비율 (D=C/A)	△25.8	33.7	30.7	30.7	40.0	56.9	47.7	16.5	23.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기침체 및 더딘 고용회복으로 당초 계획인원보다 고용인원이 줄어 지원인원이 감소했고,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등 지원금 부지급 사업장이 다수 발생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4월부터 9월말까지 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126개소였으나 실제로 조업개시를 신고한 사업장은 당초 신고사업주 대비 54.0% 수준이고, 조업개시 신고사업장의 실제고용인원은 고용계획인원의 4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 당시 지역 고용회복이 더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 조업시작 사업장 중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사업장 수

는 총 298개 사업장 중 9.1%(27개 사업장)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³⁾에서 과거 평택과 통영 지역의 지원금 집행 사례에서도 지원금 지급 초기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으며, 고용 계획에 따라 실제로 고용이 발생하더라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계획안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홍보 강화 등 집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향후 지역 고용 상황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노위]」, 2018

가. 현 황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¹⁾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2019년도 계획현액 4,868억 4,700만원 중 99.6%인 4,844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 3,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414,661	486,847	0	0	486,847	484,417	99.6	0	2,030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지원 유형으로는 일반훈련, 고급훈련, 일학습병행훈련, 지역산업맞춤형훈련,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 체계적 현장훈련지원 및 중소기업 직업훈련지원이 있는데, 이 중 고급훈련 지원유형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²⁾ 5 수준 이상의 ‘고숙련훈련’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종 또는 법령 등에 의해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활용·제품생산 등에 필요한 ‘신기술훈련’³⁾을 제공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배 이내에서 지원한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62-350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총 8단계의 수준체계에 따라 지식기술, 역량, 경력 등을 평정하여 제시한다. NCS 5 수준은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3)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무인이동체, 실감형콘텐츠(VR·AR) 등 영역에 대한 훈련을 예시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신기술·고속련 훈련인 고급훈련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집행이 부진한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고속련·신기술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집행실적을 개선하고, 훈련과정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이후 매년 집행성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2018년 26,860명의 훈련 지원을 목표로 42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고, 2019년 33,333명의 훈련 지원을 목표로 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952명에 대하여 12억원을 지원하는 데에 그쳐 예산 기준 집행률은 24.0%, 인원 기준 집행률은 9.1%에 그쳤다.⁴⁾

[2018~2019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고급훈련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예산액			인원		
	예산	집행액	집행률	계획인원	지원인원	집행률
2018	4,297	0	0.0	26,860	0	0.0
2019	5,000	1,202	24.0	33,333	2,952	9.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19년 진행된 고급훈련도 고속련훈련 및 회계·경영기획 등 경영관리 사무와 관련된 훈련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고급훈련 참여자 중 고속련훈련 수료자는 총 2,509명으로, 신기술훈련 수료자 443명의 5.7배에 달한다. 또한, 전체 참여인원 중 회계 분류 수료인원이 58.7%, 경영기획 분류 수료인원이 11.1%, 부동산관리 수료인원이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훈련참여시 업무공백, 훈련 후 이직 우려, 높은 훈련수준(NCS 6수준 이상), 경직적 운영(기업 훈련수요 연 2회 심사) 등으로 참여 성과가 저조하였다고 밝히고, 2019년 9월 훈련수준 현실화(고속련분야는 NCS 6→5수준, 신기술분야는 훈련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및 운영방식 유연화(기업 훈련수요 수시 심사) 등 제도개선을 단행함으로써 동년 1~8월 훈련인원(24명) 대비 9~12월 훈련 인원(중도탈락자 포함)은 3,515명으로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2019년 고급훈련 분류별 훈련 수료인원 및 훈련과정 내용]

(단위: 명, %)

순위	분류	수료인원 (비율)	훈련과정 내용
1	회계	1,734 (58.7)	(894명 수료)스마트경영 고급 회계처리 실무능력 향상과정 등 (428명 수료)더존프로그램을 활용한 법인세 실무 전문가 과정 등 (412명 수료)재무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세무조사 대응과정 등
2	생산관리	350 (11.9)	시뮬레이션 공정설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과정 등
3	경영기획	328 (11.1)	(278명 수료)인사관리 레벨업, HR마스터 양성 과정 등 (50명 수료)중소기업 리더를 위한 경영시뮬레이션 등
4	부동산관리	140 (4.7)	건물 안전관리 책임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5	전자제품 고객지원	91 (3.1)	3D Modelling Master 과정
1~5위 소계		2,643 (89.5)	-
총계		2,952 (100)	-

주: 분류는 NCS 소분류 기준이고, 괄호 안 수치는 전체 수료인원 대비 분류별 수료인원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목적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맞춰 일정한 숙련을 지닌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숙련도를 향상시키거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을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운영 일반과 관련된 과정 외에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고숙련 기술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훈련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숙련 훈련의 경우에도 회계·세무 외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고숙련 기술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집행실적을 개선하고, 고숙련 훈련과정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¹⁾은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하여 전직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4,776억 6,500만원 중 89.8%인 4,288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88억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597,623	711,661	97	0	711,758	646,988	90.9	40	64,730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376,043	477,665	0	0	477,665	428,857	89.8	0	48,808

자료: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내에는 일반실업자 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및 2017년 도입되어 신기술·고숙련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을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사업은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에 대해 신기술·고숙련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훈련기간은 3개월~10개월로, NCS 5수준 이상의 고급수준 훈련을 포함하여야 하며, 훈련생에게는 최대 월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63-350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사업의 집행을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훈련 과정별 취업률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7년 신규 도입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집행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에는 추경을 통해 각각 50억원 및 43억원 가량을 증액하였으나, 집행액은 당초 계획 규모보다 적은 수준에 불과하여 집행이 부진하였다. 2019년에는 추경을 통한 계획규모 증액은 없었으나, 집행률이 63.3% 수준으로 여전히 집행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2017~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당초	수정			
2017년	9,960	14,940	14,940	6,108	40.9
2018년	15,435	19,755	19,755	10,999	55.7
2019년	21,928	21,928	21,928	13,879	63.3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선정된 훈련과정 중 일부의 취업률 성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다. 2017년 및 2018년 선정된 총 79개(2017년 36개, 2018년 43개)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의 훈련 성과를 보면, 전체 수료율²⁾은 90.0%이나 취업률은 65.7%를 보이고 있다. 특히, 훈련과정의 수료율은 2018년에 90.6%로 2017년도 89.3%에 비해 상승했음에도 취업률은 2017년도 67.0%에서 2018년도 64.5%로 하락하였다.

2) 수료율 = 수료인원 / (훈련실시인원 - 조기취업인원)으로 산정한다. 수료인원은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한 자를, 조기취업인원은 훈련과정에 80% 미만 출석 후 취업한 자를 의미한다.

[2017~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 훈련 과정별 성과]

(단위: 개, %)

연도	과정수	수료율	취업률
전체	79	90.0	65.7
2017년도	36	89.3	67.0
2018년도	43	90.6	64.5

자료: 고용노동부

훈련 과정별 취업률을 구간별로 분해해서 보면, 2017~2018년 취업률이 60% 미만인 과정의 개수는 26개로서 전체 훈련과정(79개)의 32.9%에 달한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취업률이 60% 미만인 과정의 개수는 9개였으나 2018년의 경우 그 수가 17개로 증가하여 2018년 훈련과정(43개)의 3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바, 훈련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정이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취업률이 60% 미만인 과정 중에서도 50% 이상인 과정이 9개 과정 중 6개에 달했으나, 2018년의 경우 취업률이 60% 미만인 과정 17개 중 50% 이상인 과정은 6개이고 40~50%인 과정이 7개로 나타난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는 과정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17~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 훈련 과정별 취업률 현황]

(단위: 개, %)

연도	90% 이상	80 ~ 90%	70 ~ 80%	60 ~ 70%	50 ~ 60%	40 ~ 50%	30 ~ 40%	30% 미만	계
2017	1 (2.8)	6 (16.7)	8 (22.2)	12 (33.3)	6 (16.7)	2 (5.6)	1 (2.8)	0 (0.0)	36 (100.0)
2018	4 (9.3)	8 (18.6)	6 (14.0)	8 (18.6)	6 (14.0)	7 (16.3)	3 (7.0)	1 (2.3)	43 (100.0)

주: 괄호 안 수치는 전체 훈련 과정 수 대비 취업률 구간별 과정 수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집행을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훈련 과정을 내실화 하는 등 훈련 과정별 취업률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¹⁾은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들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2019년도 계획현액 1,920억 9,400만원 중 80.9%인 1,55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365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당초	수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92,094	192,094	0	0	192,094	155,500	80.9	36,594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26,896	26,896	0	0	26,896	15,154	56.3	11,742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지원	27,000	27,000	0	0	27,000	20,224	74.9	6,776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심사 강화 및 지출구조 효율화 기조를 고려하여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 저조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64-350

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지원사업은 2017~2019년 중 2018년을 제외하고는 타 내역사업에 비해 저조한 집행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2017년 37.0%에서 2019년 56.3%로 상승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의 집행률은 2017년 67.2%에서 2018년 86.5%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 74.9%로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2017~2019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집행저조 내역사업의 집행률]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지원	37.0	52.5	56.3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67.2	86.5	74.9

주: 상기 집행률은 계획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임. 계획현액 기준 집행률은 각각 다음과 같음.

·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지원(%): ('17) 65.9 → ('18) 100.0 → ('19) 56.3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7) 83.7 → ('18) 100.0 → ('19) 74.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2019년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2019년도 지출구조 개편방안²⁾에 따라 사업계획 심사를 강화하면서 훈련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아울러, 기존 공동훈련센터 중 3개소의 사업이 종료되어 당초 계획보다 예산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³⁾

그러나, 상기 사유는 2017년 및 2018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집행 저조 사유로 2016년도 말 감사원 지적⁴⁾으로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2018년에는 취업률 등 성과에 따라 훈련과정을 승인하고 운영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출구조를 효율화하여 집행이 저조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 심사 강화 및 지출구조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2019년의 집행실적 저조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원(취업률 80%시 100% 지원), 고속권 훈련분야 장비비 우선지원 등

3) 고용노동부는 2020년에는 역량있는 신규 공동센터 발굴, 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수시과정 운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 제공을 강화하고,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4) 감사원은 2016년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훈련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된 비용만을 지원하고, 단순 시설 개보수 등 간접 연관 비용은 지원을 자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시설·장비 활용도, 훈련과정과의 연계성, 기존 지원된 훈련 인프라와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 지원하였고, 훈련역량이 미흡한 공동훈련센터가 심사에서 탈락하여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사유 또한 사업계획 심사 강화 및 지출구조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지원 사업은 과거보다 강화된 사업계획 심사 및 지출구조 효율화로 인해 2019년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사업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심사를 강화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면서 집행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2019년 양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도 사전에 예상가능했던 사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계획 심사 강화 및 지출구조 효율화 기조를 고려하여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⁵⁾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공동훈련센터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집행이 저조한 내역사업의 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5)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지원은 249억 중 227억이 집행 예정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경우에도 200억 중 175억원이 집행 예정이며, 각 사업의 잔여 예산도 신규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신기술 분야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2020년에는 전액 집행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 현 황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¹⁾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의 2019년도 계획 현액 1,690억 3,400만원 중 96.7%인 1,63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7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직장어린이집 지원	162,730	162,730	6,304	0	169,034	163,493	96.7	810	4,731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49,829	49,829	0	△826	49,003	48,974	99.9	0	29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치	28,000	28,000	6,304	826	35,130	34,153	97.2	810	167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치 시범 사업의 공사 지연 및 연례적 이월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¹⁾이 진행 중인 본 사업에서 공사 지연 및 이월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1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신규 도입되었다. 2018년 고용노동부가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3개소 설치를 시작했고, 2019년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연금을 받아 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2018년 시범사업 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계획하였으나, 자치단체 수요 저조,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시범사업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접설치 3개소 및 본사업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설치 10개소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현재 공급된 3개소의 경우 2018년에 설치 종료를 목표하였으나, 부지매입을 통한 신축 방식으로 진행된 2개소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2020년 3월에 개원하였다.²⁾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사업 당초 계획 및 실제 집행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당초 계획	3	10	10	13	14	50
실제 설치	1	0	2	(9)	(1)	3

주: 당초 계획과 달리 2021년 13 → 9개, 2022년 14 → 1개를 설치할 계획임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 집행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집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 이월 사업비의 일부를 불용시키면서 불용액수를 포함한 추가소요분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확보한 후 2020년으로 이월하였다.

2018년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63억 400만원을 2019년으로 이월하였다. 2019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63억 400만원 중 61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총 1억 6,700만원을 불용시키면서, 2019.12.26.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비 6억원을 포함하여 총 8억 2,600만원을 증액한 후 2020년으로 8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다.

2)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시설전환 방식으로 진행된 1개소는 2018년 12월에 개원하였다.

[2018~2019년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치 시범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계획 현액	집행	이월	불용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	이월	불용
420-01	기본조사 설계비	251	11	223	17	223	223	223	0	0
420-03	공사비	5,978	151	5,529	298	5,529	6,129	5,378	587	164
420-04	감리비	98	0	96	2	96	202	96	106	0
420-05	시설부대비	21	8	0	13	0	0	0	0	0
430-01	자산취득비	1,378	827	456	95	456	576	456	117	3
합계		7,726	997	6,304	425	6,304	7,130	6,153	810	16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공모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이 부진했고, 2019년에는 시흥시 거점형 공공어린이집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내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공사 종료 시점을 연장(2019.11.16.→2020.1.15.)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9.12.26.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20년으로 전액 이월하였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이 2018년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었음에도 집행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사업이 추진된 2018~2019년 기간 중 신속히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2019년에 이월된 예산에 대하여 전액 집행이 가능했을 수 있다. 그 외, 단년도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월을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집행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말~2022년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하여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지연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작성하고 집행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고, 사전 사업설계를 내실화함으로써 단가 변경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은 「영유아보육법」³⁾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과 임의설치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 시 시설전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의 60~90%를 3~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5,00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⁵⁾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재교구비 사용액을 지원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5)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의미하며, 대규모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별표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C	500명 이하
광업	B	300명 이하
건설업	F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주: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개요]

지원사항	지원한도		비고
시설전환비	대규모 기업	3억원(공동 6억원)	소요금액의 60% 한도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4억원 공동형: 10~20억원	소요금액의 90%, 한도
교재교구비	5천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교체: 3년마다 3천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률은 101.3%를 기록하였으나, 지원 사업장은 목표(135개소) 대비 68.1%인 92개소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 시설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

구분	예산			사업장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목표사업장	지원사업장	달성률
2017	43,432	35,847	82.5	131	118	90.1
2018	44,758	32,629	72.9	135	89	65.9
2019	44,758	45,322	101.3	135	92	68.1

자료: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장 개수(92개소)는 전년과 유사함에도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이유는 2019.1.1.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관련 예규가 개정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이 완화되면서 실지원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단체에 참여하는 기업 규모 및 기업의 수에 따라 공동형, 컨소시엄형, 산단형 등⁶⁾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것을 ‘공동형’으로 통합하면서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비율을 60%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사업주단체에 참여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에 따라 지원한도에 차등을 두었다.

6) ‘공동형’은 사업주단체에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을 합쳐 2곳 이상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형’은 사업주단체에 우선지원대상기업만 2곳 이상 참여하는 경우, ‘산단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사업주단체에 7개소 이상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주단체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 변경사항]

2018년			⇒	2019년		
구분	지원사항	한도		구분	지원사항	한도
단독	전환비	4억원	⇒	단독	전환비 건립비 매입비	4억원
공동형	전환비	8억원		공동형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10억원
컨소시엄형	전환비 건립비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	20억원
산업단지형	매입비	20억원				

주: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는 소요비용의 90%를, 시설매입비는 소요비용의 40% 한도로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 제도개편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어린이집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은 2018년 대비 35.8% 증가한 7억 3,200만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제도개편의 대상이 아닌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7~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계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계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계
사업장수 (A)	78	40	118	50	39	89	43	49	92
지원 금액(B)	16,367	19,480	35,847	11,617	21,012	32,629	9,458	35,864	45,322
평균 지원금액 (B/A)	210	487	304	232	539	367	220	732	49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도개편을 수행한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확정 이후 예규를 개정하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지원 내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사전 사업설계를 내실화함으로써 지원 내용 변경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9년 본예산 산출 당시 총 135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3억 3,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산규모를 산출한 것을 고려할 때, 지원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등 노력을 통해 지원 사업장 수 측면에서도 지원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¹⁾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하여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2019년도 계획현액 13억 4,900만원 중 92.9%인 12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349	1,349	0	0	1,349	1,253	92.9	0	96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장애인 현황, 취업지원 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된 자치단체(수행기관)는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장애인 동료지원가를 선발한다. ① 1단계로, 동료지원가는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에 대한 동료상담·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시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 참가를 독려한다. ② 2단계로, 공단 등에서는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 내 사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한다. ③ 3단계로, 동료지원가는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직장활동을 독려한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6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체계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활동주체	동료지원가	공단, 장애인복지관 등	동료지원가
지원사항	동료지원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사업체로 취업 알선	사후관리를 통한 장애인의 직장활동 독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자치단체별 동료지원가의 업무역량 및 수행기관의 지원 역량을 개선하거나 또는 역량있는 동료지원가·지원기관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집행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19년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배정인원은 9,600명이었으나, 각 자치단체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실제 배정된 인원은 6,563명으로 축소되었으며, 2019년 실제 사업 참가자 수는 3,451명에 불과하여 실제 배정인원의 52.6%밖에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동 사업에 따른 동료지원활동 후 공단으로의 취업연계에 성공한 건수는 총 237건으로, 참가자 수 3,451명의 6.9%에 불과하다.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성과]

(단위: 명, 건, %)

구분	계획상 배정인원	실제 배정인원(A)	참가자수 (B)	B/A	취업연계 성공건수(C)	C/B
사업 성과	9,600	6,563	3,451	52.6	237	6.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자치단체별로도 배정인원 대비 참가인원의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배정인원 대비 참가자 수가 40%에도 못 미치는 데 비해,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배정인원 대비 참가자 수가 70%를 상회한다.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자치단체	동료지원 인원수	계획상 배정인원	실제 배정인원(A)	참가자수(B)	B/A
서울특별시	19	1,200	960	348	36.3
부산광역시	13	1,440	871	430	49.4
대구광역시	9	1,440	372	243	65.3
인천광역시	6	480	480	232	48.3
울산광역시	7	384	384	280	72.9
경기도	21	1,200	1,200	461	38.4
충청북도	4	192	192	80	41.7
경상북도	4	240	240	158	65.8
경상남도	20	960	960	627	65.3
전라북도	10	960	480	344	71.7
전라남도	5	960	280	139	49.6
제주특별자치도	2	144	144	109	75.7
계	120	9,600	6,563	3,451	52.6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동료지원가의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데, 동료지원가 목표 인원은 200명이었으나 실지원인원은 1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 운영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원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수행기관의 참여 부진, 현장에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부족, 자치단체별 동료지원가의 업무역량 및 수행기관의 지원 역량 차이 등을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참여 목표 인원을 10,000명으로, 동료지원가 목표 인원은 500명을 설정하고,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수당 신설(1회당 3,000원) 및 내부 직무지도원 선임시 수당(1일 25,000원) 등을 편성하는 등 제도개편을 통해 집행 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선 방안이 수당 편성 등에 치중하는 데 비해, 자치단체별 동료지원가의 업무역량 및 수행기관의 지원 역량 차이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일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에도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별 동료지원가의 업무역량 및 수행기관의 지원 역량을 개선하거나 또는 역량있는 동료지원가·기관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당 지급 외에도 다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집행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근로복지기금의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사업 동시 운영의 문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V」 pp.81
2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고용보험기금과 산재기금 신용보증에 따른 기금 손실 증가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V」 pp.87



기상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20억 3,600만원이며, 226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6.7%인 83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143억 7,0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처리는 없다.

[2019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036	22,036	22,036	22,695	8,325	14,370	0	36.7

자료: 기상청

2019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018억 7,000만원이며, 이 중 95.2%인 3,827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84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7억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88,191	390,531	401,870	382,748	8,419	10,703	95.2

자료: 기상청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기상청의 자산은 8,315억 6,000만원, 부채는 280억 3,900만원으로 순자산은 8,035억 2,1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24억 6,200만원, 일반유형자산 7,603억 1,200만원, 무형자산 456억 8,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90억 4,700만원(7.6%) 증가하였다. 이는 소속기관 청사 신축 및 과학관 완공 등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 540억 5,700만원 증가, 장기 임차 보증금(국유) 유동성 대체 등으로 유동자산 57억 4,4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95억 7,600만원, 장기차입부채 177억 6,000만원, 장기충당부채 7억 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1억 5,700만원(26.6%) 감소하였다. 이는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사업 완료 등 금융리스부채 93억 8,000만원 감소, 퇴직급여충당부채 7억 3,2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831,560	772,513	59,047	7.6
Ⅰ. 유동자산	22,462	16,718	5,744	34.4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760,312	706,255	54,057	7.7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45,682	42,379	3,303	7.8
Ⅵ. 기타비유동자산	3,104	7,160	△4,056	△56.6
부 채	28,039	38,196	△10,157	△26.6
Ⅰ. 유동부채	9,576	20,972	△11,396	△54.3
Ⅱ. 장기차입부채	17,760	15,788	1,972	12.5
Ⅲ. 장기충당부채	703	1,435	△732	△51.0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803,521	715,561	69,204	9.4
Ⅰ. 기초순자산	734,317	715,561	18,756	2.6
Ⅱ. 재정운영결과	368,208	387,079	△18,871	△4.9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411,424	397,611	13,813	3.5
Ⅳ. 조정항목	25,987	8,224	17,763	216.0
Ⅴ. 기말순자산	803,521	734,317	69,204	9.4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682억 8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2,679억 1,600만원, 관리운영비 1,277억 1,000만원, 비배분비용 5억 5,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배분수익 279억 7,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88억 7,100만원(4.9%) 감소한 3,682억 800만원이며, 이는 천리안 2A호 위성 개발사업 종료 등 세출예산 지출소요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 순원가가 75억 8,800만원 감소 및 전기오류수정이익 증가 등에 따라 비배분수익이 153억 5,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기상관측프로그램(809억 4,600만원)과 기상연구프로그램(747억 9,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40억 2,100만원과 경비 436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5억 5,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267,916	275,504	△7,588	△2.8
II. 관리운영비	127,710	123,615	4,095	3.3
III. 비배분비용	551	579	△28	△4.8
IV. 비배분수익	27,970	12,619	15,351	121.6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68,208	387,079	△18,871	△4.9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68,208	387,079	△18,871	△4.9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19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7,343억 1,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035억 2,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692억 400만원(9.4%)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유형자산이익 재평가로 인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202억 4,2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88억 1,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259억 8,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기상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734,317	715,561	18,756	2.6
II. 재정운영결과	368,208	387,079	△18,871	△4.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11,424	397,611	13,813	3.5
IV. 조정항목	25,987	8,224	17,763	216.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803,521	734,317	69,204	9.4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19년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 ②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개발(R&D) 사업 등이 있다.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연구개발사업(R&D)은 기관 고유기능 집중 및 기관쇄신을 위해 연구활동비 및 인건비 등 6억 6,100만원이 감액(80억 6,700만원 → 74억 600만원)되었고,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개발(R&D) 사업은 천리안 2A호 발사 지연에 따라 탑재체 보험료 등 4,700만원이 감액(83억 7,400만원 → 83억 2,7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세입)위약금, ② 기상산업활성화, ③ 기상청 청사시설관리 ④ (국유기금)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신축 사업 등이 있다.

세입 중 위약금은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에 따른 2017년 미수납 지체상금 143억 1,700만원이 증액(4억 7,000만원 → 147억 8,700만원)되었고,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전을 위한 이전비 29억 800만원이 증액(104억 6,900만원 → 133억 7,700만원)되었으며, 기상청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정읍기상기후인재개발체험관 실시설계비와 서해안기상기후센터 실시설계비 등 2억 9,700만원이 증액(191억 6,800만원 → 194억 6,500만원)되었고,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축 사업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비 20억원이 증액(74억 6,600만원 → 94억 6,600만원)되었다.²⁾

1)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2)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운영 사업, ②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 등이 있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운영사업은 기상재해,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기상지원을 위해 위험기상 현장대응용 기상센서 탑재형 드론을 도입 운영하기 위해 5억 4,000만원이 증액(122억 900만원 → 127억 4,900만원)되었으며,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은 수자원확보, 가뭄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인공강우 기술 실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공강우 공동국제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18억원이 증액(158억 7,700만원 → 176억 7,700만원)되었다³⁾.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8.

기상청은 ① 입체관측망 확충 등 관측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②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을 위한 대국민 기상서비스 강화, ③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진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확대, ④ 차별화된 기상 콘텐츠 개발 및 기상과학관 등 성공 추진 등 기상과학 및 기상지식 보급을 2019년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기상청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위험기상에 대한 조기 관측 및 예보 강화, 기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목적으로 기상관측용 드론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드론제작업체의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해 기상드론의 도입이 지체되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기대한 사업 효과를 적시에 거두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상드론 도입 및 드론을 활용한 기상관측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기상청은 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양한 기상조건 및 구름씨 관련 사전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름물리실험 챔버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계약 유찰 및 각종 추진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었으므로, 향후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구름물리챔버 구축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기상드론 도입 지연으로 인해 위험기상 관측 및 예보역량 강화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성 저하

가. 현 황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¹⁾은 지상·고층 기상관측 장비의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하고 기상예측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기상청은 2019년도 예산현액 133억 3,200만원 중 129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12,209	12,749	669	3 △89	13,332	12,943	97.1	242	147
위험기상 현장대응용 드론 도입 및 운영	0	540	0	0	540	298	55.2	242	0

자료: 기상청

특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태풍·집중호우·대설 등 위험기상에 대한 조기 관측 및 예보를 강화하고 기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9대의 기상관측용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2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231-301

나. 분석의견

기상드론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와 사업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상청은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상드론 도입 및 드론을 활용한 기상관측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동 사업을 통해 지상 및 고층의 기상변화 관측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표면으로부터 약 70~80km까지의 고층기상관측을 위해 레윈존데, 연직바람관측장비, 라디오미터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장비로는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대기 하층부(지표면~2.5km)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위험기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²⁾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관측용 복합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도입하여 대기 하층에서 발생하는 기온·습도·기압 등의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관측공백지역을 최소화하고, 위험기상이 기상재난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었다.³⁾

[주요 고층 기상관측장비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기상드론	- 대기 하층(지상~2.5km) 집중관측 - 관측공백지역 보완 -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미세먼지 관측, 영상촬영 - 안개, 해무, 국지풍 등 국지위험기상에 대한 목적관측 - 기상재해,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현장 기상지원 가능	- 방수에 취약(생활방수 수준) - 고도 150m 이상은 비행승인 허가 필요 - 1회 운영시간 약 30분으로 제한 - 조종인력확보 필요(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 및 자격증 획득 필요)
라디오존데	- 고고도(지상~30km) 관측가능 -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관측	- 일 2회 비양, 1회성(소모성) - 정확한 연직관측이 불가

2) 기상청이 보유한 레윈존데는 소모성 장비로 하루에 2회 비양이 가능하고, 연직바람 관측장비 및 기상레이더는 지표면의 영향으로 대기 하층(1km 내외) 관측품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한계가 있다.

3) 기상드론은 공중에 띄울 때마다 헬륨가스가 소진되는 레윈존데, 도입단가가 높고 고정된 장소에서만 측정 가능한 연직바람 관측장비 등에 비해 관측공백지역인 대기 하층부 관측을 보완할 수 있고,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 또는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분	장점	단점
연직바람 관측장비	- 10분 간격으로 연직대기(지상~10km) 의 풍향·풍속 시계열 자료 확보	- 대기 하층(1km 내외) 관측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음(지표면 영향) - 풍향, 풍속만 관측 - 고가의 장비(약 4억원)이며, 관측 위치가 고정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기상드론 도입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 9월 조달청 발주, 사전공고 및 구매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0월 30일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 29일까지 장비 도입을 완료하고자 하였다.

[재난현장 대응용 드론 도입 계획 및 도입 현황]

과정	소요기간	계획	추진
계획수립	-	2019년 7월	2019.07.30.
장비심의	17일	2019년 8월	2019.08.12.~08.28.
일상감사	2일	2019년 8월	2019.08.29.~08.30.
조달발주(계약요청)	-	2019년 9월	2019.09.02.
사전공고	8일	2019년 9월	2019.09.04.~09.11.
조달청 구매협의	2일	2019년 9월	2019.09.19.~09.20.
입찰공고(긴급공고)	19일	2019년 9월	2019.09.23.~10.11.
계약체결	-	2019년 10월	2019.10.30.
장비도입	61일	2019년 12월	2019.12.29.(납품기한)

자료: 기상청

당초 기상청은 기상드론의 무게를 12kg 미만으로 도입을 추진하였고, 드론제작 업체에서 드론 무게를 11.5kg으로 제안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억 9,5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2억 9,700만원을 2019년 11월 선급금으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계약업체의 기상드론 제작 후 납품을 위한 성능테스트 중 기상드론의 무게 및 비행시간이 계약상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납품이 지연되었고, 이에 기상청은 선급금 보증보험의 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5월 12일까지 계약업체가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재난현장 대응용 드론 도입 계획 및 도입 현황]

기상청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 제안서	계약서(계약문서)	계약상대자 측정 무게
12kg 미만	11.5kg	12kg 미만	12.54kg

주: 기상드론 무게는 배터리 및 모든 임무장비를 장착한 후의 무게를 의미함
자료: 기상청

하지만 기상드론을 최종 납품하기 위한 시험운영 과정 중 무게 규격은 충족하였으나, 계약상 1회당 30분으로 제시된 비행시간에 대한 규격을 통과하지 못하여 2020년 7월 현재까지 기상드론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계약업체와의 계약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인 실정이다.

아직까지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기상선진국에서 기상관측용 드론을 연구용이 아닌 현업에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위험기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하였다.

그러나 기상드론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기대한 사업효과를 적시에 거두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상청은 기상드론의 현업 운영을 위해 2019년 10월 무인비행장치(기상드론) 운영 계획 및 「기상관측 무인비행장치(기상드론)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기상드론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청 및 과학원 근무자 중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체 예산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드론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 현황]

구분	전문교육수료 인원	자격증 취득 인원
2019년	17명	15명
2020년(예정)	3명	5명

주: 드론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약 3주간 이론교육, 모의비행, 실기비행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자료: 기상청

하지만 장비도입이 지연되고 향후 사업의 추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기상드론 도입 과정에 행정력과 일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드론 도입 및 드론을 활용한 기상관측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달청 및 계약업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긴급히 편성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¹⁾은 융합(관측, 분석, 모델, 예측, 응용 등)과 다학제(기상학, 기후학, 해양학 등)적인 접근이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미래사회 기상이슈 대응기술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9년 본예산은 158억 7,7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술선진국과의 인공강우 국제공동연구 추진, 인공강우 공동연구 등 인프라 구축, 인공강우용 대형 기상항공기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등을 위해 18억원이 증액된 17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상청은 예산현액 176억 7,700만원 중 162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9,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1,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연구(R&D)	15,877	17,677			17,677	16,266	92.0	1,195	216
관측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2,623	4,423			4,423	3,184	72.0	1,195	44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구름물리챔버 구축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4133-301

2019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상청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내 기상환경에 최적화된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강우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공강우 국제공동실험 R&D사업 예산 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이에 더해, 기상청은 구름 내부와 유사한 조건을 지상에서 만들어 다양한 기상 조건 및 구름씨 관련 사전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름물리실험 챔버 건설을 계획하고, 2019년 추경예산에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과 실시설계비 2억원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다.

[구름물리실험 챔버 구축 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용
목적	- 기온, 압력, 습도를 조절하여 항공기 인공강우 실험 수행에 앞서 지상에서 다양한 기상조건 및 구름씨에 대한 사전 실험이 가능한 구름물리 실험챔버 설계 및 구축
사업기간 및 장소	- 2019~2022년, 국립기상과학원(제주도 서귀포시) 연구실험동 부지 내 완공 추진
총 사업비	- 6,604백만원 (공사비 5,000백만원, 관측장비 구축 1,500백만원, 시설 부대경비 104백만원 등)
실험챔버 주요구성	- 구름챔버: · 0℃ 이상의 기온에서 따뜻한 구름생성 및 성장 실험 · 0℃ 이하의 기온에서 차가운 구름생성 및 성장 실험 - 에어로졸챔버: 인위적 구름씨를 생성하여 구름챔버로 공급하는 장치 - 풍동기: 연소탄 지상실험용 고속(100m/s) 바람 생성 장치 - 관측장비: 공기내의 구름응결핵 및 빙정핵 개수 등 특성 관측장비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당초 2019년 12월에 구름물리실험 챔버의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조달 공고 및 자체공고가 지속적으로 유찰되는 등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 구름물리실험 챔버 설계 추진계획을 수립(19.8.6)하고, 제안요청서 검토, 사전규격공

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입찰 공고('19.10.18~11.1) 및 2차 공고('19.11.1~11.8)를 하였으나 모두 무응찰로 인해 유찰되었다.

이후 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은 재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자격 등 입찰 조건을 조정한 후 2차에 걸쳐 자체 공고를 추진하였으나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이 되었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독 입찰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19.12.20)와 추가 협상('19.12.24)을 진행한 후, 12월 31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기상청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후, 2020년 1월 착수보고회 및 설계계획을 검토하고, 2월 일본 구름챔버 현장방문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독일 챔버 전문가 초청, 국제 구름물리챔버 워크샵 등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일정이 취소 또는 지연됨에 따라 2020년 6월말이 되어서야 설계 및 검사·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름물리실험 챔버 설계 추진현황]

구 분	과 정	계획일정	추진일정	소요기간
구름물리실험 챔버 설계	계획 수립	2019년 8월	2019년 8월	1개월
	계약추진	2019년 8월	2019년 9월~12월	4개월
	기본설계, 실시설계	2019년 9월~12월	2020년 1월~6월	6개월
	설계완료(최종보고회)	2019년 12월	2020년 6월말	

자료: 기상청

이에 더해, 구름물리실험 챔버는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실험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된 것은 기존에 관련 챔버 구축을 경험해본 업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0년 본예산에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관측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사업에 포함된 공사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31억 4,500만원의 예산은 구름물리실험 챔버의 1차년도 공사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6개월가량 지연됨으로 인해 구름물리실험 챔버 구축 관련 예산의 집행 및 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²⁾

[2020년 본예산 구름물리실험 챔버 공사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세부내역
합계	3,145	구름물리실험 챔버 구축비
공사비(구름물리실험 챔버 건설)	3,093	- (공사비) $6,185 \times 50\% = 3,093$ 백만원 (1차년도 공사비, 공사착공)
감리비	44	- (감리비) $6,185 \times 1.41\% \times 50\% = 44$ 백만원
시설부대비	8	- (시설부대비) $6,185 \times 0.25\% \times 50\% = 8$ 백만원

자료: 기상청

이와 같이, 계약 유찰이나 각종 추진절차의 지연 등 구름물리실험 챔버 구축 사업의 지체로 인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된 추경예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구름물리챔버 구축 공사비 등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구름물리챔버 구축에 소요될 공사비와 감리비 등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기상청은 2020년 7월 중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8월 중으로 구름물리실험 챔버 구축 공사를 발주한 후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2년 2월 중 챔버 완공을 목표로 향후 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 현 황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¹⁾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 제6조²⁾ 등에 따라 고밀도·고품질의 지진관측장비 설치·운영,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 168억 9,000만원에서 기상정보 통보료 및 문자서비스 공공요금을 위해 타 사업으로 이용한 1억 4,4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67억 4,600만원 중 15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억 8,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16,890	16,890	0	△144	16,746	15,458	92.3	602	686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 검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검정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진관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238-301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은 동 사업을 통해 지진계 신설 및 노후지진계 교체, 노후 지진해일관측 장비 교체 등 지진관측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당초 2020년까지 전국 314개소(유관기관 50개소 포함)에 지진관측망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이월 조기에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진관측망 구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3
확충	계획	19	24	20	25	30	20	0
	실적	19	5	6	54	54	0	0
	누계	196	200 ²⁾	206	260	314	314	314
교체	노후관측소 ¹⁾	54	43	35	36	23	4	10
	계획	15	31	25	20	14	4	10
	실적	11	20	19	16	23	4	10 ³⁾

주: 1) 노후관측소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한 지진관측소를 의미함

2) 2015년 울릉도 해저지진계(1개소)가 철거됨에 따라 누계에 차이 발생

3) 2020년도 10개소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완료될 예정임

자료: 기상청

또한, 기상청은 동 사업을 통해 공중음파관측소 및 지진해일관측소 신설, 지진계 예비품 구매, 현장대응용 이동식 지진계 구매,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진관측법」 제11조³⁾에 따른 지진, 지진해일, 화산관측장비의 검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정장비 7대, 검정기준기 16대, 정밀측정기 14대 등 총 37대의 검정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②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진관측장비 검정장비별 구축 현황]

검정장비 유형	검정장비별 구축 현황			검정항목
	적용 대상	구축 현황	수량	
검정장비	가속도지진센서, 속도지진센서	수평검정테이블	1	민감도, 주파수응답, 선형성
		진동테스트시스템	1	
		스텝교정테이블	1	
		경사계	1	
		수직/수평 가진시스템	3	
검정 기준기	가속도지진센서, 속도지진센서	지표형광대역속도계	2	민감도, 주파수응답, 선형성
		단주기지표형속도계	2	
		지표형가속도계	4	
		시추공광대역지진계	2	
		시추공가속도지진계	2	
	지진기록계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	4	지진관측자료 저장 및 파형 확인
정밀 측정기	지진기록계	주파수분석기	1	전압 안정도 등
		함수발생기	2	
		주파수카운터	1	
		멀티미터	1	
		클램프테스터	1	
		표본기	1	
		직류전압발생기	1	
		전원공급장치	1	
		오실로스코프	1	시각오차
		GPS수신기	1	
		원자시계 (이동형원자시계 포함)	3	

자료: 기상청

비록 동 법에서는 기상청으로 하여금 지진관측장비의 정기적인 검정을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관측장비 검정 대상이나 검정대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2019년 11월 26일 「지진관측법」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련되었다.⁴⁾

4) 이에 따라, 개정된 「지진관측법」의 시행일(20.11.27) 이후부터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에서 지진관측장비 검정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상청이 도입한 지진관측장비 검정장비는 천안 소재 국가지진계검정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의 대행업무 계약 체결을 통해 검정기준과 검정절차서를 마련하고, 기상청 도입 지진관측장비를 대상으로 시범검정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상청 도입 지진관측장비 성능확인 등을 위한 대행업무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협약명	기관	협약기간	협약방법	예산액	계약액
2019	국가표준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운영 대행업무 사업	한국기상 산업기술원	2019.1.1. ~ 2019.12.31.	대행 업무	97	97
2020	국가표준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운영 대행업무 사업	한국기상 산업기술원	2020.1.1. ~ 2020.12.31.	대행 업무	309	309

주: 2020년 계약사항의 경우, 개정된 「지진관측법」의 시행일자(20.11.27)에 맞춰 민간대행 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임

자료: 기상청

뿐만 아니라, 지진관측장비 검정대상 및 유효기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관측장비 검정절차와 검정기준, 검정수수료 등 지진관측장비의 안정적인 검정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적인 하위법령 및 제도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검정(verification)이란 공적 기관이 특정 장비로부터 도출된 측정값 등이 기준값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진관측장비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감도나 응답 범위, 선형성, 센서의 반응도, GPS 시각정보의 오차 등 보다 구체적인 검정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진관측장비 검정기준은 장비의 기본적인 제원을 다루고 있는 성능·규격 기준과 동일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검정이 가능한 항목을 기준으로 현실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 장비만을 대상으로 시범검정을 실시하는 등 관측장비 검정 관련 제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지진관측장비의 검정기준은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 제시된 장비별·항목별 검정기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⁵⁾ 및 동법 시행령 제4조⁶⁾에 따른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별표 1부터 4⁷⁾에 제시된 성능·규격 기준과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지진관측장비 중 광대역 속도지진계와 단주기 속도지진계,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 장치의 경우, 「지진관측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검정기준은 각각 10개, 12개, 15개 항목이나, 이는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에 제시된 항목과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상황이며, 특히 가속도지진계는 검정기준과 성능·규격 기준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진관측장비 검정기준 및 성능·규격 기준(예시)]

구분	관측 장비 검정기준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성능·규격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가속도지진계	성분	성분
	주파수 영역	주파수 영역
	동적범위	동적범위
	측정범위(Full Scale)	측정범위(Full Scale)
	출력전압 선형비	출력전압 선형비
	성분간 감도오차	성분간 감도오차
	감쇠율	감쇠율
	검증(Calibration)	검증(Calibration)
	센서 신호출력	센서 신호출력
	출력방식	출력방식
	외장	외장

자료: 기상청

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④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7)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별표 1부터 4는 각각 광대역 속도지진계, 단주기 속도지진계, 가속도지진계,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 검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합리적인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의 수립을 바탕으로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검정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진관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⁸⁾

8) 기상청에 따르면, 개정된 「지진관측법」의 시행(20.11.27)에 대응하여 지진관측장비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확한 기상 및 기후예측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기후예측 정보와 장기예측자료를 생산·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상청은 2019년 예산현액 19억 9,600만원 중 17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	1,996	1,996	0	±13	1,996	1,753	87.8	212	31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에 대응하여 장기예보 전망 및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분석·예측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한파,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고, 이상기후의 강도 또한 높아짐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 등 체계적인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장기전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기상청은 동 사업을 통해 1개월 및 3개월 장기예보와 계절별 기후전망 등 장기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331-302

「기상법 시행령」 제8조2)에서는 예보대상기간이 11일 이상인 예보를 장기예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주별, 월별, 계절별로 기온 및 강수량에 대한 평균 상태를 평년(平年)과 비교하여 3분위 확률예보로 생산 및 발표하고 있다.

[장기예보 유형별 특성]

종류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	기후전망
발표일	매주 목요일	매월 23일	2·5·8·11·12월 23일
예보형태	3분위 확률예보		
예보내용	1개월 간 매 주차별 평균 기온 및 평균 강수량	3개월 간 월별 평균기온 및 평균 강수량	엘니뇨/라니냐 전망, 기온 및 강수량 ※ 발표월, 예보기간 - 2월 : 여름철 - 5월 : 가을철 - 8월 : 겨울철 - 11월 : 봄철 - 12월 : 다음해 연전망
예보지역	전국평균·12개 지역		전국평균

자료: 기상청

우리나라의 장기예보 정확도는 세계기상기구(WMO)가 권고하는 확률예보 평가 방법인 ROC(Relative Operating Characteristics)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³⁾ 우리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3) ROC 측정방법은 확률예보 구간별로 오탐지율(FAR, False Alarm Rate)과 적중률(HR, Hit Rate)을 각각 X, Y 좌표계에 점으로 표현한 후, 이를 연결한 곡선 아래의 면적을 계산하여 예측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ROC 측정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도출되는데, 일반적으로 0.5 이상인 경우 예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1 값에 가까울수록 예측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라의 최근 5년간('15.1~'19.12) 장기예보 정확도를 살펴보면, 1개월 전망은 기온 0.57, 강수량 0.54이며, 3개월 전망은 기온과 강수량 모두 0.60으로 나타나 예보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장기예보 정확도]

ROC값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	
	기온	강수량	기온	강수량
2015.1.~2019.12.	0.57	0.54	0.60	0.60

주: 확률예보 정확도 평가는 사례수가 많아야 통계적 신뢰성이 있으므로, 확률장기예보 시행 이후의 누적 기간에 대해서 정확도(ROC값)를 산출하였음

자료: 기상청

다만,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며, 예보 자체가 지닌 특성상 단기예보 또는 중기예보에 비해 정확도가 더 낮은 수밖에 없는 장기예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기상청이 발표하고 있는 장기예보는 평균 상태에 대한 전망이므로, 기록적인 폭염이나 가뭄 등 예외적·기록적인 기상현상이나 이상기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장기예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등 이상기후현상은 전세계에 걸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상청의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에 연평균 9.4일이었던 폭염 일수는 최근 10년간 15.5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을 세우는 등 우리나라에 미치는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⁴⁾

하지만 기상청의 사업 중 장기예보 및 이상기후 예보와 관련된 사업은 동 사업이 유일하며, 중기제정계획을 살펴보다더라도 2023년까지 매년 약 20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⁵⁾

4) 2019년은 연평균 기온이 13.5℃로 평년 수준(12.5℃)보다 높았고, 2016년(13.6℃)에 이어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해로 기록되었다. 또한, 기상관측 이래 시간당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링링(LINGLING)과 미탁(MITAG) 등 총 7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상청은 장기예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점차 심화되고 있는 극단적인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감시·분석 및 예측 기술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⁶⁾

5)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의 중기재정계획(2019~2023)]

(단위: 백만원)

구분	'19	'20	'21	'22	'23
예산액	1,996	1,996	1,996	1,996	1,996

6) 기상청은 '17년부터 에너지, 농업, 보건 분야의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상기후 감시·전망정보를 제공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대응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고,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발굴하고 수요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5월부터 장기예보에 이상기후 전망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등 이상기후 장기예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기상청은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등 23건의 위약금¹⁾에 대하여 총 147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5,400만원을 수납처리하였으며, 143억 1,7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2019회계연도 위약금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위약금	14,787	14,787	14,787	14,571	254	14,317	0	1.7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체상금	14,317	14,317	14,317	14,317	0	14,317	0	0.0

자료: 기상청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 지체상금 177억 2,107만원 중 34억 432만원은 대금지급 시 상계처리를 통해 수납처리하였으나, 잔여금액 143억 1,7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018년 4월 계약상대자의 소송 제기로 인해 2020년 7월 현재 지체상금 부과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 분석의견

장기간 동안 도입이 지연되었던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의 지체상금의 수납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추진계획」(2011년)에 따라 2013년 항공기 도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11월 도입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계약대상자가 기상청과의 사전협의 없이 항공기와 탑재 기상장비를 일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57-572

방적으로 국내로 반입(15.10.29)하는 등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미국으로 반송하였고, 항공기 개조회사 추가 섭외 및 재개조 추진(16.1.27), 미연방항공청(FAA) 비행인증시험 절차 진행(16.12.10) 등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이후 2017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국내 이송 후 국토교통부 감항검사 및 항공기 등록이 완료되고, 2017년 말 항공기 인수검사 완료 및 초도비행 실시 후 2018년 1월에 첫 관측비행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²⁾와 동법 시행령 제74조³⁾에 따라 지체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9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급하였다. 하지만 2018년 4월 계약대상자가 지체상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기상청은 2019년 3월 미수납 지체상금에 대한 징수를 위한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지체상금 관련 소송의 핵심쟁점은 제안서에 따른 기상장비 도입업체의 과업수행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①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인가한 공인부품을 사용하였는지, ② 항공기 개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부가형식증명(STC)을 기상장비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획득하였는지의 여부가 문제시되고 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체상금 관련 진행상황]

(단위: 백만원)

총 지체상금	잔금 상계처리 금액	최종 지체상금 (고지서 발급 금액)
17,721	3,404	14,317
• 총 지체상금: 계약금액에 지체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 청구 - (지체상금) 총 제조부기금액(\$14,499,269)×지체율(0.15%)×지체일수(733)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과 같은법 시행령(제74조) ○ 지체상금 관련 소송 진행 경과 - 계약상대자가 법원에 소장 제출('18.4.9) - 소송수행자 지정 및 TF 구성·운영('18.5.9)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 화우] 선임 계약('18.6.14) ※ 착수금: 30백만원, 성공보수: 착수금×승소비율 - 법무부장관(서울고검) 소송대리인 위임장 수령('18.7.3) - 서울중앙지법 1차 변론기일('18.8.31) 통지('18.7.16) - 답변서 작성('18.8.24) 및 1차 변론('18.12.12) - 2차 변론('19.3.13) - 고등검찰청 반소제기 승인 지휘('19.3.18) 결정에 따라 반소 제기 ※ 나머지 지체상금(약 143억원) 수납을 위한 반소 제기 추진('19.3.21) - 3차 변론('19.4.17), 4차 변론('19.7.17), 5차 변론('19.10.23), 6차 변론('19.12.11), 7차 변론('20.4.22), 8차 변론('20.5.27) - 1심 선고기일('20.8.19)		

자료: 기상청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은 태풍이나 호우, 대설 등 계절별 위험 기상을 관측하고, 에어로졸, 대기질 등 대기 중 환경기상을 감시하며,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기후변화 감시, 인공증우·증설 등 기상조절실험 기술 향상 및 예보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기상항공기 도입 지연은, 단기적으로는 항공기 도입 및 관리비용 등 예산집행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기상 감시, 대기에 관한 입체적 관측을 통한 관측공백지역 최소화 등을 통한 장기적 편익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상장비 도입업체들은 대체로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며,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⁵⁾ 지체상금의 이행여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상

5) 2018년 4월 9일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업체의 소송 제기 후 현재까지 1심 재판의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항소심 및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등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청은 기상항공기 지체상금 수납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환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청은 2019년 10월부터 대형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추가적인 기상항공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⁶⁾ 기존의 기상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약업체 검증·선정을 비롯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6)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추진된 ‘인공강우용 대형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에서는 항공기의 운항개념 설계 및 후보기종과 탑재장비의 규격 조사·분석, 대형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수행 방식에 연동되는 규격서 작성, 임무에 적합한 항공기 기종선정을 위한 계약방법 및 평가방안 작성, 대형 기상항공기 도입·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타당성 검토, 기상항공기 활용 확대 방안 제시, 대형 기상항공기 도입효과 및 경제성 평가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욱 사업평가심의관
신 은 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 태 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 석 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 동 훈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정 성 영 예산분석관
김 윤 수 예산분석관

지원 | 이 지 은 행정실무원
최 해 인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0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302-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